

2021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통합정산조직
설립 및 구매자 등록제 시행방안 연구**



생활정치연구회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

제출문

서울특별시의회 생활정치연구회 귀하

이 보고서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통합정산조직 설립 및 구매자 등록제 시행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12.

- 연구기관 : (재) 한국지식산업연구원
- 책임연구원 : 박성기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 이사)
- 연구원 : 허재우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 이사)
김동성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 연구원)

- 자문위원: 나용원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상무)

(요약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통합정산조직 설립 및 구매자 등록제 시행방안 연구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 박성기 · 허재우 · 김동성

요약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1)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 경쟁력 강화

- 농수산물 거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통주체간 경쟁구도 조성을 위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통합정산이 필요

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2013. 5. 27)'의 지속적 추진

-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 촉진을 위하여 중도매인이 다수 도매시장법인과 거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 통합정산조직을 통한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체계 구축

- 중도매인, 출하자 모두 장애물, 추가 비용이 거의 없이 복수의 도매시장법인과 출하, 거래체결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

나. 연구의 목적

1) 통합정산조직 설립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 설립 추진조직, 설립위원회 구성, 정보시스템 스폰서 확보 등

2) 재원(財源), 역량, ICT 구축 방안 제시

- 소요자금 추정(지불대행), 일반관리비 확보 방안, 중도매인 모니터링 및 자금관리, 집행, 채권회수 등 전문역량 확보, 통합정산시스템 구축 및 실행 방안 제시

II.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현황 분석

1. 가락시장 상장거래 정산체계 현황

- 중도매인 부실로 인한 연쇄 피해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사업영역 제한
 -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을 다각화하여 영업 활성화를 꾀하여도 신규 도매시장법인에 거래보증금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는 금전적 부담이 존재하며, 이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사업영역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음.

2. 대금정산조직 운영현황

가. 가락시장 비상장거래 정산체계 현황

- 가락시장정산(주)은 서울시농수산물공사와 가락시장 비상장정산조합이라는 2명의 법인 주주가 각각 15억 원을 출자하여 50:50의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설립하였으며, 가락시장정산(주)은 先지불·後수취 방식을 취함.

나.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정산체계 현황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정산방식은 가락시장 비상장정산과 달리, 일본의 많은 정산조직이 취하고 있는 先수취·後지불 방식을 취함.

3. 대금정산 관련 주요 시사점

가. 국내 대금정산 관련 주요 이슈

-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과 정산 시 출하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못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중도매인과 유통업체 간 미수금 문제가 발생함.

나. 통합 정산창구 설립 필요성

- 1)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사업영역 확대
- 2)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체계 구축
- 3)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정산업무 운영 효율화

III. 판매대금 정산창구 설립·운영 방안

1. 판매대금 정산창구 설립 방안

가. 지배구조

1) 참여주체

- 거래대금을 수취해야 하는 도매법인이 수용해야 하고 정산업무를 관리하는 개설자·관리공사 및 농안법 집행기관인 농식품부의 승인이 필수적임.

2) 비용부담주체

- 순수 경제적인 접근으로 판매대금의 지급을 예정된 결재일에 100% 지급받을 수 있고, 위험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도매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임.
- 중도매인의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공고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대금정산조직이 설립되었다면 중도매인이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임.

나. 참여방식

1) 회사방식 vs. 조합방식

- 회사방식은 원칙적으로 유한책임을 지며, 의사결정구조는 출자비례임에 따라 책임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외부 자금차입 등에 유리함.
- 조합방식은 원칙적으로 무한책임으로 가야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문성의 약화·낮은 투명성 등의 문제 발생이 가능함.

2) 지분구조와 지분비율

- 출자자로 참여 가능한 조직은 개설자·관리공사·위탁기관·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외부투자자

3) 개설자 및 관리공사의 역할 필요성

- 개설자·관리공사는 농안법 규정에도 판매대금정산은 개설자의 업무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개설자·관리공사가 참여하고 관리하고 규정마련의 근거가 충분함.

4) 중앙정부 참여 및 역할

- 대금정산조직 운영요령 마련, 통합정산시스템 제공, 운전자금 지원

다. 조직 구조

- 대금정산조직의 오너십은 중도매인만으로 정산조합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이 주도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이 오너십을 갖게 되는 구조임.

2. 판매대금 정산창구 운영 방안

가. 정산창구 운영 체계

1) 운영 주체

- 대금정산조직의 운영주체 대안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관리공사, aT가 활동 가능한 주체임.
- 규모가 큰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중도매인이 100% 출자해서 대금정산 조직을 만드는 방식임.
- aT가 주주로서 참여하는 방안은 전문성, 투명성에 대한 이슈 제기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aT의 참여여부와 방식에 따라 대금정산조직 구조의 다양화가 가능할 것임.

나. 운영 모델

1) 중도매인 참여 모델

2) 중도매인 + aT 참여 모델

3) 중도매인 + 관리공사 참여 모델

4) 도매시장법인만 참여하는 모델

5) 도매법인 + aT 참여 모델

6) 도매법인 + 중도매인 참여 모델

7) 중도매인 대주주 + 도매법인 + aT 참여 모델

8) 도매법인 대주주 + 중도매인 + aT 참여 모델

목 차

I. 과업의 개요	1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가. 과업의 배경	1
나. 과업의 목적	2
2. 과업의 범위 및 수행 전략	2
가. 과업의 범위	2
나. 과업 수행 전략	3
II.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현황 분석	4
1. 국내 도매시장 운영현황	4
가. 상장거래 운영현황	4
나. 통합정산조직 운영현황	9
2. 국외 도매시장 운영현황	13
가. 일본 도매시장 운영현황	13
나. 주요 국가별 도매시장 운영 현황	15
3. 대금정산 관련 주요 시사점	17
가. 국내 대금정산 관련 주요 이슈	17
나. 통합 정산창구 설립 필요성	17
III. 통합정산조직설립, 운영을 위한 현황 분석	19
1. 통합정산조직 설립 필요성, 기대효과	19
가. 통합정산조직 설립 필요성	19
나. 통합정산조직 설립 기대효과	20

2. 정산조직 관련 규정, 정책	23
가. 중앙정부 판매대금정산조직 추진 정책	23
나. 판매대금 결제 관련 법규	23
다. 상장예외판매, 시장도매인 정산조직설립	23
3.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의 판매대금 정산조직 관련 주요 이슈	24
가. 도매시장법인	24
나. 중도매인	24
4. 통합정산조직 설립 이슈 및 해결방안	25
가. 통합정산조직 설립 주요 이해관계자	25
나. 주요 이슈 및 해결방안	27
5. 통합정산조직 운영 이슈 및 해결방안	28
가. 통합정산조직 운영 주요 이해관계자	28
나. 주요 이슈 및 해결방안	29

IV. 통합정산조직 설립, 운영 방안 32

1. 통합정산조직 사업기회 정의	32
가. 정산업무 기본서비스	32
나. 부가 서비스	33
2. 통합정산조직 설립과 운영의 전제 조건	35
가. 중도매인의 니즈 충족 요건	35
나. 법, 제도 정비 필요 요건	37
3. 통합정산조직 설립 방안	40
가. 사업 추진 단계	40
나. 지배구조	41
다. 참여방식	42
라. 조직 구조	47

4. 통합정산조직 운영 방안	48
가. 정산창구 운영 체계	48
나. 운영 모델	51
다. 자금 운영 체계	57
5. 통합정산조직 수익·비용 구조	61
가. 운영모델	61
나. 수익·비용 구조	62
다. 재무 추정	63
V. 통합정산조직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66
1. 정보시스템 비전·전략	66
가. 농산물 도매시장 정보화 현황	66
나. 판매대금 통합정산시스템 개요	71
2. 판매대금 통합정산시스템	74
가. 판매대금 통합정산시스템 주요 구성	74
나. 판매대금 통합정산시스템 활용 프로세스	76
3. 유통정보 분석·핀테크 서비스	77
가. 유통정보 분석 시스템	77
나.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79
다. B2B 전자결제 서비스	80
4. 판매대금 통합정산시스템 구축 전략	83
가. 추진 전략	83
나. 단계별 추진 계획	86
<참고 문헌>	89
<부록>	91

표 차례

[표 2-1] 도매법인별 중도매인 수	8
[표 2-2] 청과부문 중도매인 거래규모별 분포	8
[표 2-3] 가락시장 비상장정산회사 설립 전후의 변화	10
[표 2-4]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정산조합 설립 전·후의 변화	12
[표 2-5] 주요 국가들과의 도매시장 정산기능 비교	16
[표 3-1] 통합정산조직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22
[표 3-2] 통합정산조직 설립 관련 주요 이슈 및 이해관계자	26
[표 3-3] 통합정산조직 운영상의 주요 이슈 및 이해관계자	28
[표 4-1] 송금대행 및 지불대행	32
[표 4-2] 거래 형태에 따른 확보 가능한 데이터 종류	34
[표 4-3] 통합정산조직 수익·비용 구조	62
[표 5-1] 도매법인 정보시스템 현황 요약	67

그림 차례

〈그림 2-1〉 도매시장 상장거래 물류 및 상류	4
〈그림 2-2〉 가락시장 정산현황	5
〈그림 2-3〉 2019년 가락시장 도매법인 미결제 대불 판매자금 추정액	6
〈그림 2-4〉 가락시장 비상장거래 정산체계 현황	9
〈그림 2-5〉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정산체계 현황	11
〈그림 2-6〉 일본 쓰끼지 중앙도매시장 간 정산체계	14
〈그림 2-7〉 일본 삿포로 도매시장 정산체계	15
〈그림 2-8〉 통합정산조직 운영 시 거래구조	18
〈그림 4-1〉 중도매인 니즈 충족 요건	35
〈그림 4-2〉 농수산 페이 구조	39
〈그림 4-3〉 통합정산조직구조(안)	47
〈그림 4-4〉 통합정산조직 대불 방식 검토 결과	58
〈그림 4-5〉 통합정산조직 운영 모델(안)	61
〈그림 5-1〉 도매법인 정보시스템 기능 구성 사례	68
〈그림 5-2〉 도매법인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연계 사례	68
〈그림 5-3〉 도매법인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연계 사례	69
〈그림 5-4〉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정산시스템 기능구조도	70
〈그림 5-5〉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정산시스템 연계 이미지	71
〈그림 5-6〉 판매대금 통합정산시스템 서비스 범위	72
〈그림 5-7〉 판매대금 통합정산시스템 구성(안)	73
〈그림 5-8〉 판매대금 통합정산시스템 구조	75
〈그림 5-9〉 거래내역 관리 프로세스	76
〈그림 5-10〉 결제 및 대불 프로세스	77
〈그림 5-11〉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필요성	78
〈그림 5-12〉 가락시장 제로페이 도입가능성	82
〈그림 5-13〉 판매대금 통합정산시스템 구축 범위	84
〈그림 5-14〉 판매대금 통합종합시스템 To-Be 이미지	86
〈그림 5-15〉 대판매대금정산 종합시스템 구축 예상 추진 일정	87

I.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1)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 경쟁력 강화

- 시민들에게 매일 신선한 농수산물을 안전하고 값싸게 공급하고자, 거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방안 마련
- 농수산물 거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통주체간 경쟁구도 조성을 위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통합정산이 필요
-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영도매시장의 신용거래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구매자 등록제 도입 필요성 증가

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2013. 5. 27)'의 지속적 추진

-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정산창구 운영 시작(2014.5월)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정산창구 운영 시작(2017.2월)
 -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의 판매통합정산조직 설립
 -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 촉진을 위하여 중도매인이 다수 도매시장법인과 거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농산물 물류정보의 기반 구축과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의 거래·신용정보 분석 등 도매시장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3) 통합정산조직을 통한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체계 구축

- 중도매인, 출하자 모두 장애물, 추가 비용이 거의 없이 복수의 도매시장법인과 출하, 거래체결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
- 도매시장법인은 우수 출하자, 우수 농산물 유치, 우수 중도매인 유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는 체계를 구축

나. 과업의 목적

1) 통합정산조직 설립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 설립 추진조직, 설립위원회 구성, 정보시스템 스폰서 확보 등

2) 재원(財源), 역량, ICT 구축 방안 제시

- 소요자금 추정(지불대행), 일반관리비 확보 방안, 중도매인 모니터링 및 자금관리·집행·채권회수 등 전문역량 확보, 통합정산시스템 구축 개요 및 실행 방안 제시

2. 과업의 범위 및 수행 전략

가. 과업의 범위

1) 문헌조사

- 대금통합정산 기구 및 구매자 등록제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
- 대금통합정산 기구 및 구매자 등록제 관련 법률 등 근거규정 현황 조사

2) 관계자 인터뷰

- 최근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정산조직의 설치 가능성 검토
- 도매시장법인 미수금 부분의 대안 제시에 따른 통합정산조직 설치의 가능성 검토

3) 조사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대안 제시

- 구매자금 여신지원을 통한 현금거래 유도방안 검토
- 현금거래 유도를 통한 구매자 등록제 구현방안 제시
- 구매자 등록제를 기반으로 통합정산조직 설립의 타당성 검토

나. 과업 수행 전략

1) Fact, Evidence 기반 및 전문가 참여

- 현황분석, 대안 도출, 자금소요(장기미수금, 지불대행자금, 대손충당금 등) 추정을 위한 Fact-based 데이터 요청 및 확보
- 도매시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그룹 참여를 통한 최적화된 재무추정과 운영구조 설계

2) 법규, 제도 준수 및 공감대 확보 가능한 대안 도출

- 농안법, 상법, 민법 등의 테두리 내에서의 최적화된 대안 도출
- 설립, 운영과정에서의 이해 상충기관의 불필요한 소송 등 사전 방지
- 중도매인 > 도매시장법인 >> 개설자 공감대 확보
- 정보시스템 스폰서, 중앙정부 공감대 확보

II.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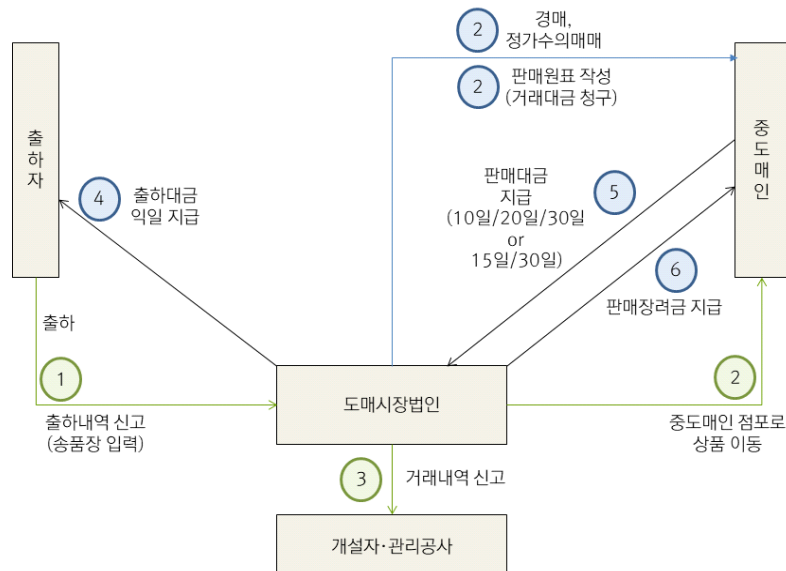
1. 국내 도매시장 운영현황

가. 상장거래 운영현황

1) 상장거래 정산체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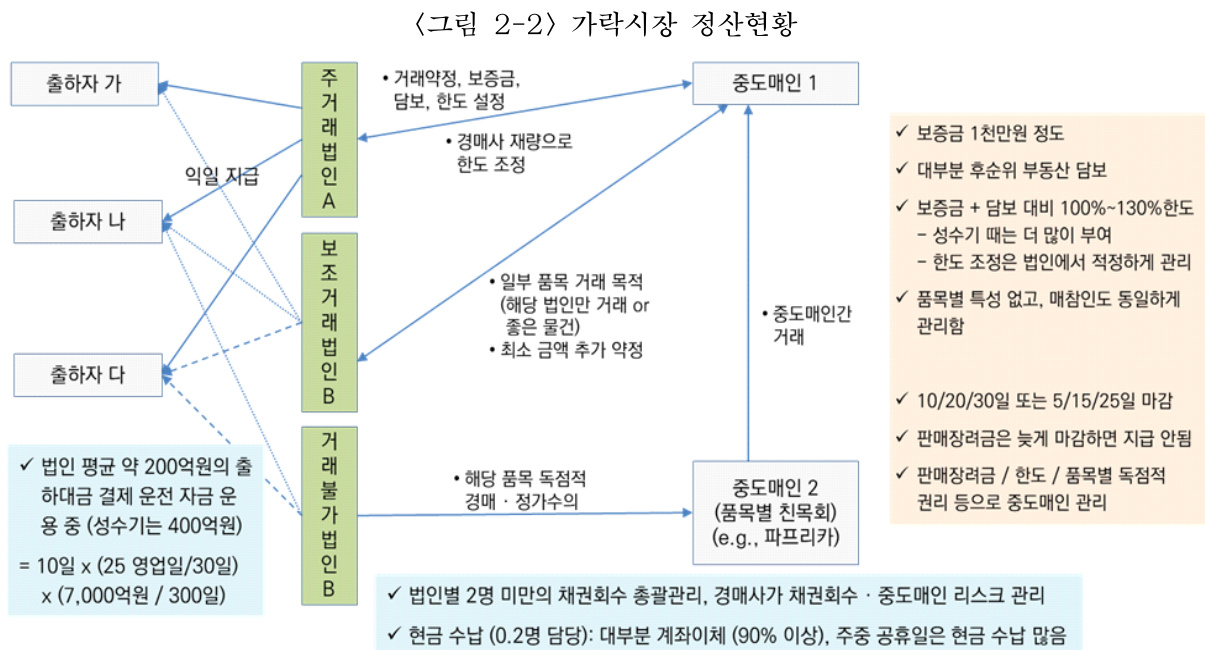
- 도매시장에서 가능한 거래 형태는 상장경매, 정가·수의매매, 상장예외거래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함.
- 상장거래는 경매, 정가·수의매매 등과 같이 도매시장법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정산 관련 업무의 주요 중심임.
- 상장거래의 정산은 다음 <그림 2-1>과 같이 도매시장법인 ↔ 출하자간의 정산, 도매시장법인 ↔ 중도매인간의 정산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도매시장법인의 관리를 통하여 상장거래가 이루어진 농산물은 산지출하대금 지급이 바로 이루어짐.
-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의 거래는 외상거래 형태이며,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에게 구매대금을 상환하는 시점은 낙찰 받은 농산물을 판매한 후 진행됨.

<그림 2-1> 도매시장 상장거래 물류 및 상류



※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7), 농산물도매시장 통합정산조직 설립방안 연구용역

- 도매시장법인은 농안법과 조례에 의거하여 보증금과 담보를 설정한 이후에 그 비율에 적정한 수준의 거래한도를 부여함.
- 도매시장법인에 따라 조건이 상이하나 정해진 기간 내에 구매대금을 상환하면 도매시장법인은 일정률의 판매 장려금¹⁾을 중도매인에게 지급함.
- 중도매인은 주로 거래하는 주거래법인에 대부분의 보증금과 담보를 설정하고 있으며, 다른 도매법인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증금과 담보를 설정함.
- 이는 보조거래법인의 특정한 농산물을 구매자들이 원해서 경매·정가수의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기 때문임.
- 일부 중도매인은 절차의 복잡성, 낮은 거래 빈도 및 일부 품목별 친목회에서 다른 중도매인의 경매·정가수의 참여 제한으로 인하여 중도매인 간의 거래를 통하여 구입하는 경우가 많음.
- 가락시장 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주요 정산 체계 및 현황은 다음 <그림 2-2>와 같음.



※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7), 농산물도매시장 통합정산조직 설립방안 연구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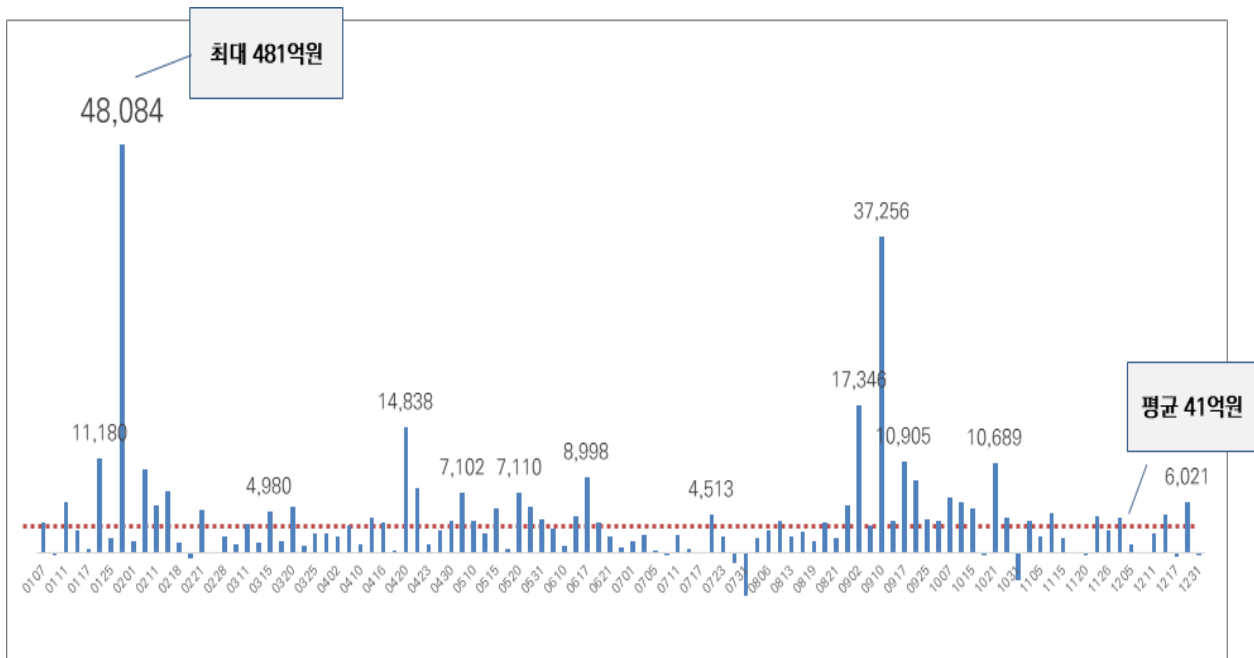
1) 판매 장려금은 지자체 조례 (예, 서울시조례 제16조)에 명문화 되어 있음. “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가락시장 상장거래 정산체계 현황

- 중도매인 부실로 인한 연쇄 피해

-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주된 거래처는 개인(주로 자영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 대형유통업체, 일반소매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거래비중이 높은 만큼 외상거래금액의 규모도 큼.
- 중도매인들의 과다한 미수금과 평균 1개월의 외상기간에 따른 결제 지연으로, 중도매인의 자금 흐름이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쇄적으로 도매시장법인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함.
- 2019년 도매법인 실적자료 분석 결과 미결제 금액 일 평균 금액은 41억 원이며, 최대 481억 원으로 확인됨(〈그림 2-3〉 참조).

〈그림 2-3〉 2019년 가락시장 도매법인 미결제 대불 판매자금 추정액



※ 출처: 서울시농수산물공사(2020), 가락시장 청과부류 통합정산조직도입 연구용역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사업영역 제한

- 도매시장법인별로 거래보증을 요구하며, 각 도매시장법인별로 경매를 진행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특정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됨.

-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을 다각화하여 영업을 활성화를 꾀하여도 신규 도매시장법인에 거래보증금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는 금전적 부담이 존재하며, 이는 중도매인의 영업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 제한
 - 정산체계에 의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종속관계가 유지되면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을 제한하여, 결국 도매시장법인 경쟁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
 - 기존 정산체계의 특성으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관계가 고착화 되면 역량 있는 중도매인을 유치하려는 도매시장법인 간의 경쟁이 둔화될 수 있음.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정산업무 운영 비효율
 - 도매시장법인마다 유사한 형태의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중복된 업무를 개별 법인별로 수행하는 것으로 비효율성이 존재함.
 - 도매시장법인의 정산업무는 출하자와의 출하대금 결제, 중도매인과의 외상매출금 회수 등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이며, 이러한 업무를 위해 도매시장법인별로 정산업무 담당 조직을 개별 운영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함.

3) 가락시장 청과 중도매인 현황

- 청과 중도매인 허가자 수는 2020년 기준 총 1,289명임.
 - 연도별로는 1,301명('18), 1,294명('19), 1,289명('20)
 - 과실 중도매인은 429명, 채소 860명임 .
 - 도매법인별로는 한국청과(235명), 동화청과(223명), 서울청과(204명), 중앙청과(201명), 농협공판장(152명), 대아청과(1명) 순임.
- 청과 거래금액은 3,859,930 백만 원 (즉 3조 8,599억 원)으로 확인됨.
 - 연도별 추이는 3조 4,832억 원 ('18) → 3조 8,599억 원 ('20)
 - 중도매인의 월 평균 거래규모별 분포는 [표 2-2]에 제시되어 있음.

[표 2-1] 도매법인별 중도매인 수

(단위: 명)

도매법인	과일	채소	합계
서울청과	103	101	204
농협(공)	73	79	152
중앙청과	119	82	201
동화청과	64	159	223
한국청과	70	165	235
대아청과	-	1	1
특수품목	-	273	273
합계	429	587	1,016

※ 출처: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통계연보(2021)

[표 2-2] 청과부문 중도매인 거래규모별 분포

(단위: 명)

구분	1억 원 미만	1~3억 원	3~5억 원	5~10억 원	10~20억 원	20억 원	합계
서울청과	1	5	6	15	55	41	103
농협(공)	-	1	3	6	38	37	71
중앙청과	-	-	5	13	48	45	101
동화청과	1	-	2	18	75	47	94
한국청과	2	4	10	18	90	51	90
대아청과	1	4	19	31	66	38	34
합계	5	14	45	101	372	259	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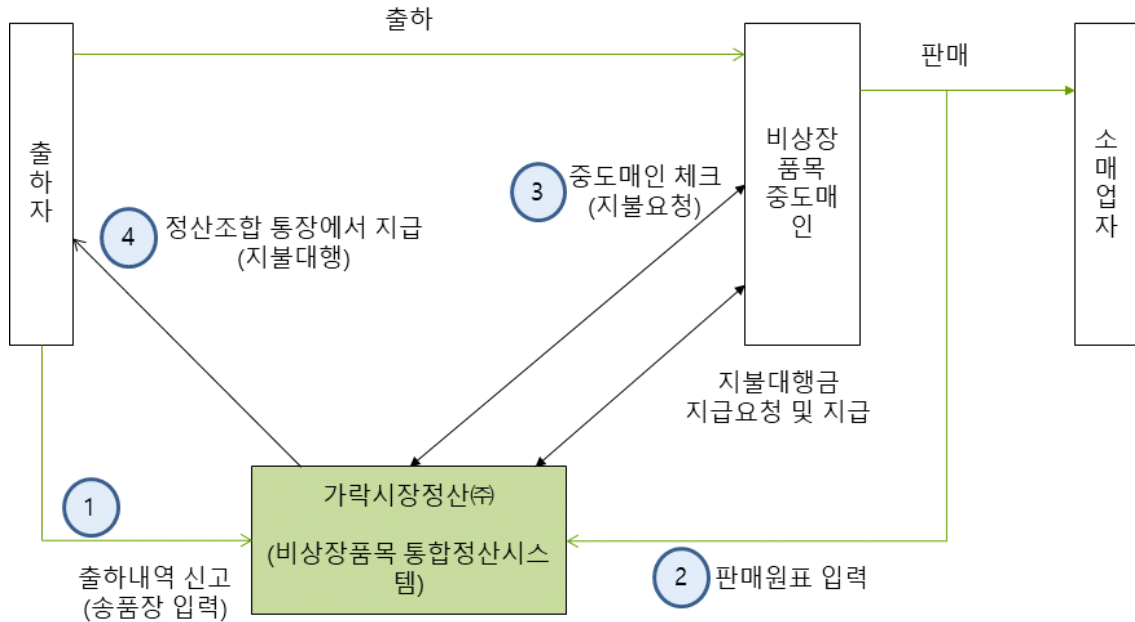
※ 출처: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통계연보(2021)

나. 통합정산조직 운영현황

1) 가락시장 비상장거래 정산체계 현황

- 가락시장정산(주)은 서울시농수산물공사와 가락시장 비상장정산조합이라는 2명의 법인 주주가 각각 15억 원씩을 출자하여 50:50의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설립함.
- 가락시장정산(주)은 매일 15:30 ~ 16:00에 전일 13시부터 당일 새벽까지 매수 출하되었거나, 위탁 판매된 농산물에 대해 1 ~ 2회, 중도매인의 확인을 받은 연후에 출하자에게 지불대행금을 일괄 송금하는 先지불·後수취 방식을 취함.

〈그림 2-4〉 가락시장 비상장거래 정산체계 현황



※ 출처: 서울시농수산물공사(2020), 가락시장 청과부류 통합정산조직도입 연구용역

- 가락시장정산(주)은 중도매인과 출하자가 모의하여 미출하된 농산물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위험성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예외품목 신고초소 운영, 중도매인 사전위험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함.
- 3년간 3일치 평균거래금액을 보증금으로 수취하고 보증금 대비 3배의 거래한도를 부여하였으며, 지불대행금에 대해 7일 경과 후 시중이자율보다 높은 수준의 지체상금 부과함.

- 모든 보증금은 농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매시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주거래 은행에 전액 보관하고, 미지급 지불대행금을 위한 변제 목적 이외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게 구조화함.
- 정산회사가 설립됨으로써, 기존의 3일 이내 전액을 지불해야 하였으나, 정산회사가 설립되면서, 중도매인은 출하대금 지불기일이 4일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정산수수료는 발생함.

[표 2-3] 가락시장 비상장정산회사 설립 전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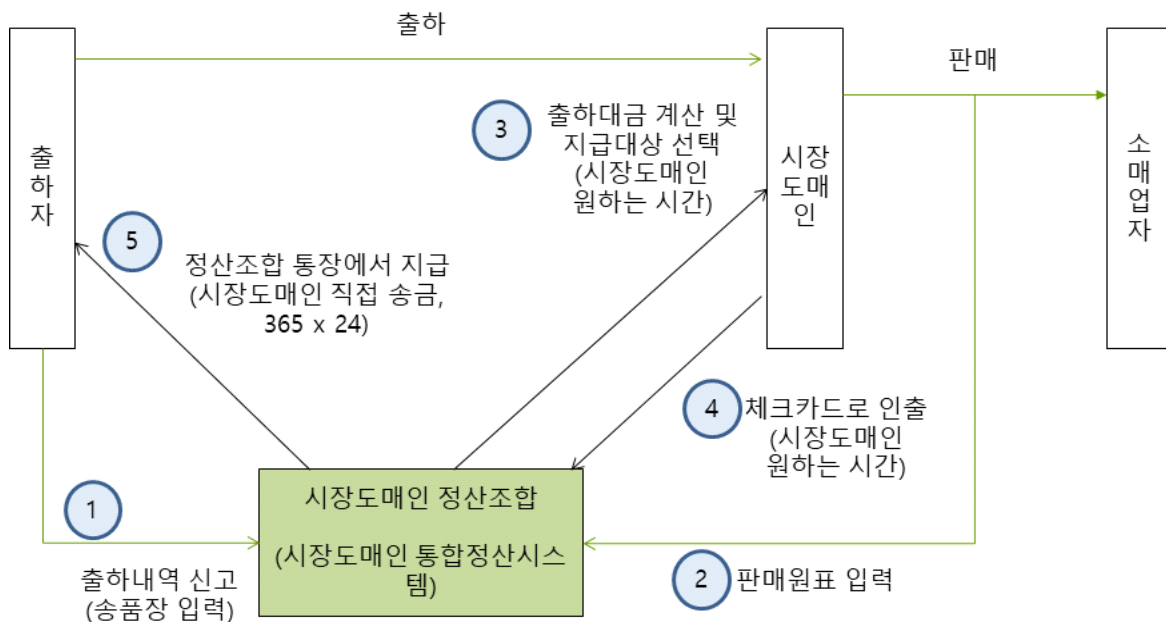
구분	설립 前	설립 後
출하주 이익	- “출하자 ← 중도매인” 양자간 거래에 따른 자금 회수 위험	- 정산회사가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출하대금을 선지급함으로써 출하주 출하대금 수납 확실하게 보장됨
출하대금 지불방식	- 출하자 ← 중도매인: 출하대금 계산 이후 3일 이내 인터넷 बैं킹	- 출하자 ← 정산회사 (즉시, 절차상 3일 소요 : 마감 / 계산 / 내부결제) - 정산회사 ← 중도매인 (판매원표 접수 7일 이내)
중도매인 부담의 변화	- 자기부담으로 출하 후 3일 이내 전액 지불 - 1차 지체: 경고 - 2차 지체 : 행정조치	- 출하대금 지불기일 4일 연장 - 정산수수료 발생 - 대금 납입 지연에 따른 행정처분·거래정지 발생
정보 시스템	- 시장관리자 운영 “상장예외품목정산시스템” 통해 - 거래내역관리, 인터넷 बैं킹 정보 확인	- 거래내역관리 - 정산 (대불/수납) - 한도 / 보증금 / 채권관리 - 반품/조정 처리 - 거래정지/해제 - 중도매인 위험 관리 - 부정거래모니터링 - SMS, 팩스 전송
정산창구 및 역할	- 판매내역 등록	- 판매내역 등록 (송품장 등록) - 출하대금 대불·수납 - 자금·시재관리 - 출하선도금, (조정) 예치금, 현금지불대금, 초과입금 등 지불수단 관리
다양한 지불수단, 예외사항	- 제도적 불가 - 음성적·불편·거래 데이터 오류	- 제도화 / 양성화 대상 vs. 엄격 금지 대상 - 다양한 지불수단, 예외사항 대응 (양성화 대상)
위험	- 출하자 Risk 많음 - 중도매인 Risk 적음 - 비상장품목 정산조합 Risk 없음	- 출하자 Risk 거의 없음 - 대불자금 부족 위험 (마이너스 통장 활용으로 이자 비용 발생 위험) - 중도매인 부도로 인한 악성채권 발생 위험 - 중도매인 수납 지연에 따른 이자 비용 발생 위험 - 한도관리, 거래정지 사유 발생 관리/해제 관리

※ 출처: 본 연구용역팀 작성

2)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정산체계 현황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정산조합은 가락시장정산(주)의 사례와는 다르게,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가 주주·조합원·경영진·감사로 참여가 불가능하면서,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로 일체화하여, 동일한 시장 내에 두 개의 단체가 서로 다른 단체장과 이사진으로 양립하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함.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정산조합을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와 일체화시키기 위하여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산하기구로 설립함.
- 시장도매인 정산방식은 가락시장 비상장정산과 달리, 일본의 많은 정산조직이 취하고 있는 先수취·後지불 방식을 취함.
-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출하대금을 정산조합에 납부하여야만 정산조합이 수취된 대금에 대해서 출하자에게 송금함.
- 매수한 날 또는 위탁판매 완료한 날로부터 3일 또는 7일이 경과되어도 시장도매인이 출하대금을 정산조합에 납부하지 않으면, 정산조합은 시장도매인과 정산조합간의 약정된 거래한도 내에서 납부한 보증금·결제준비자금 및 정산조합의 운전자금(위험적립금 포함)을 활용하여 출하자에게 대불함.

(그림 2-5)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정산체계 현황



※ 출처: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2020), 가락시장 청과부류 통합정산조직도입 연구용역

- [표 2-4]와 같이 시장도매인 정산조합 설립 전후의 변화를 보면,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약정, 위험적립금, 결제준비자금 납부를 제외하고는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지불대행이 추가되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존과 거의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구조화됨.

[표 2-4]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정산조합 설립 전·후의 변화

구분	설립 前	설립 後
일상적인 송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게 송품장 건별로 출하자 통장에 직접 송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도매인이 지급할 금액을 모아서 시장도매인 개별 기업은행 통장에서 체크카드로 통장에 있는 만큼 빼내감 - 송금대행 : 체크카드로 인출된 금액분 송금 - 지불대행 : 7일 초과한 미지급분 송금 (이자 발생 - 가락시장정산과 동일한 이자율 적용) - 수시 송금 가능함
긴급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하자 · 수집상 · 수입상 요청시 새벽 / 시장 쉬는날에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출하자 정산 기능함
출하선도금 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하선도금 송금 후 관련 증빙 갖추어 관리공사에 신고 - 출하선도금으로 출하대금 정산 - 장기특약 - 장기특약 신고 후 일정 기일에 정산하고 신고 - 매수송품장, 계약재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약도 정산조합 통해 지급 - 출하선도금 및 거래신고소는 현행대로 유지

※ 출처: 시장도매인정산조합 사용자교육 자료(2016)

2. 국외 도매시장 운영현황

가. 일본 도매시장 운영현황

1) 도매시장 정산 유형

- 조합 대불 방식

- 중도매인이 도산했을 때 정산회사가 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으며, 대금정산조합이 무한책임을 지는 형태임.
- 조합대불방식은 완전대불과 불완전대불로 구분이 가능하며, 완전대불이라 함은 중도매인이 도산해도 조합이 대불해주기 때문에 도매법인의 위험은 없음.
- 불완전대불이라 함은 중도매인이 도산하면 정산조합이 대불해 주지 않는 것이며, 중도매인 도산시 도매법인이 직접 중도매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도매법인에서 여신관리 전담팀을 운영하여야 함.

- 정산 회사 방식

- 도매법인이 정산회사에 대금을 청구(지불일람표를 제시)하고, 정산회사는 중도매인에게 청구하고 중도매인의 입금 한도 내에서 대금을 결제함.
- 중도매인의 입금액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므로 도매법인이 대금회수에 대한 위험을 가지게 됨.

- 개별 정산 방식

-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개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중도매인의 대형구매처들과의 거래에 따른 위험이 도매법인에 전가되고, 결국 출하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

- 전자 결제 방식

- 거래 착수시점에 은행 IC 카드를 넣고 은행 잔고가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구매금액과 통장잔고를 동시에 확인해서 거래 즉시 바로 출금하는 방식이며, 완납장려금이 지급됨.

- 선불 결제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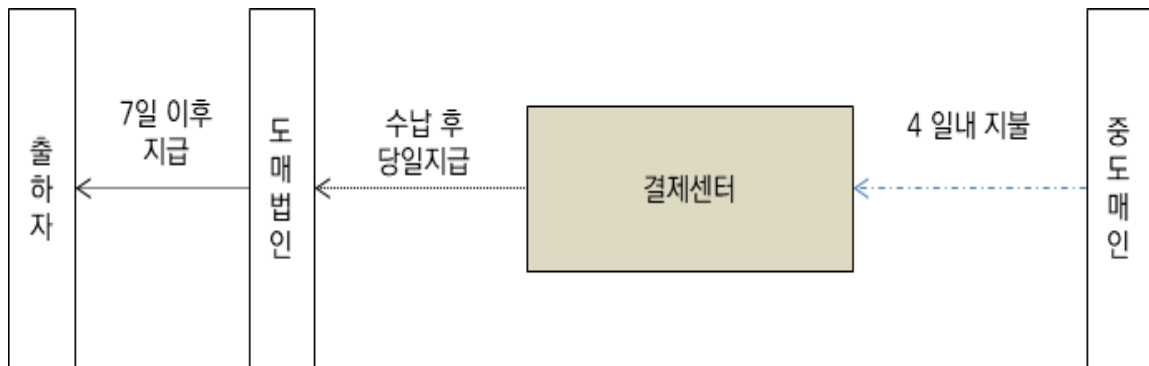
- 거래 이전에 창구에 예상되는 대금을 사전에 예치하고 거래 후에 차액을 정산함.

2) 주요 도매시장별 정산 현황

- 쓰끼지 중앙도매시장

- 7개의 수산법인과 700여의 중도매인, 600여 도매참여인이 구성한 정산조합이 결제센터를 통해 결제함.
- 도매시장내의 거래당사자(도매/중도매/소매상)간의 거래대금이 정산되고, 이후에 최종적으로 출하자에게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도매법인의 출하자에 대한 결제는 통상 7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선(先) 대금수취, 후(後) 결제하는 체계로 운영함.

〈그림 2-6〉 일본 쓰끼지 중앙도매시장 간 정산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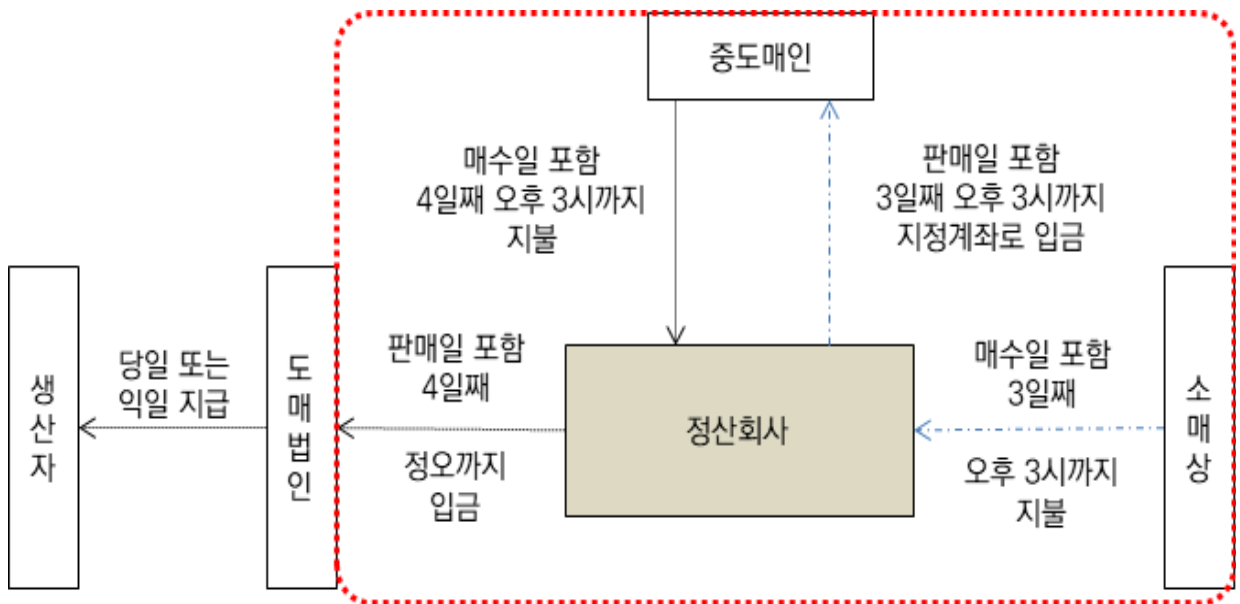
※ 출처: 농식품부 (2017), 농수산물도매시장 통합정산조직 설립방안

- 오파 도매시장 정산현황

- 시장거래의 90%이상이 대불형식을 통해 대금이 지불된다. 매매참가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3일 이내에 대금을 도매법인에 결제해야하기 때문에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도 다수임.
- 도매법인이 중도매인에게 물건을 팔고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이 소속한 정산조합에 대금을 일괄 청구하면, 정산조합은 중도매인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중도매인(매참인)을 대신하여 도매법인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체계임.

- 조합의 보증한도는 정확하게 보증금 또는 예치금의 1배 만큼만을 보증하며, 그 이상을 넘어가면 거래를 중지시키거나, 거래를 원하는 경우, 외상매출금을 갚거나, 추가 현금 입금이 필요함.
- 삿포로 도매시장 청과정산주식회사 정산현황
 - 청과물 대금의 수납·징수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개의 도매법인과 27개의 중도매인의 거래대금을 정산함.
 - ‘정산회사 ↔ 도매법인’ 간, ‘정산회사 ↔ 중도매업자(개별)’ 간, ‘정산회사 ↔ 소매조합’간 약정을 체결하고 있음.
 - 중도매업자·소매업자 조합에서 대납하기 때문에 정산회사에의 경우 자금사고 발생이 없음.

〈그림 2-7〉 일본 삿포로 도매시장 정산체계



※ 출처: 농식품부 (2017), 농수산물도매시장 통합정산조직 설립방안

나. 주요 국가별 도매시장 운영 현황

1) 일본

- 일본의 정산시스템은 조합대불방식·정산회사방식·개별정산방식·전자결제방식·선불결제방식으로 구분되며, 대부분 정산조합과 정산회사로 구조화됨.

- 1994년부터 협상을 통한 상대매매를 허용하여 경매 거래의 비율은 10% 정도이며, 수급 및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거래제도 개발 기능을 담당함.

2) 프랑스

- 청과물 수집 방식은 출하자와 도매상 간 오랜 기간의 거래를 통해 형성된 신용을 기반으로 계약거래를 실시함.
- 정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출하자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간 높은 신뢰 관계 형성

3) 미국

- 도매상의 수집 및 분산기능이 활발하여 영업 범위가 도매시장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한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유통비용을 고려하여 구매 주체와의 가격을 합의하며, 도매상은 판매이윤과 수수료를 취득함.

[표 2-5] 주요 국가들과의 도매시장 정산기능 비교

구분	정산주체	정산 특징
한국	도매법인(조합) 정산법인(회사)	- 정산조합방식 - 도매법인 직접 정산 비율이 높음 - 법인과 중도매인 간 미수금 발생 확률이 높음 - 일부 정산법인(회사) 운영
일본	정산법인	- 출하자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간 정산시스템 구축 - 정산까지 출하자에 3일 소요, 소비지 유통업체에서 도매업체에 6일 소요
프랑스	정산법인	- 출하자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간 체계화되고 신뢰성 높은 정산시스템 구축
미국	도매상과 거래당사자	- 시장도매상과 거래당사자 간 신용기반 개별정산체계 - 정산 관련 철저한 통계, 확인, 신용 확보, 처벌 시스템 존재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향

3. 대금정산 관련 주요 시사점

가. 국내 대금정산 관련 주요 이슈

- 도매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가격결정 및 정산기능이며, 우리나라 도매시장의 경우 불공정거래 이슈로 인하여 설립 초기부터 경매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과 정산 시에 출하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중도매인과 유통업체 간 미수금 문제가 발생함.
- 시장도매인 정산조합의 경우, 미결제사고 발생 시 시장도매인이 각출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게 정산조합을 송금처리 채널로만 활용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시장도매인 정산조합의 경우 정산내역만 관리하고 있어 농안법에서 정의한 엄격한 의미에서의 정산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음.

나. 통합 정산창구 설립 필요성

1)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사업영역 확대

- 새로운 도매시장법인과 거래하기 위해 추가 거래보증과 거래약정이 필요한 다소 복잡한 업무를 통합 정산창구 도입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복수거래 활성화가 가능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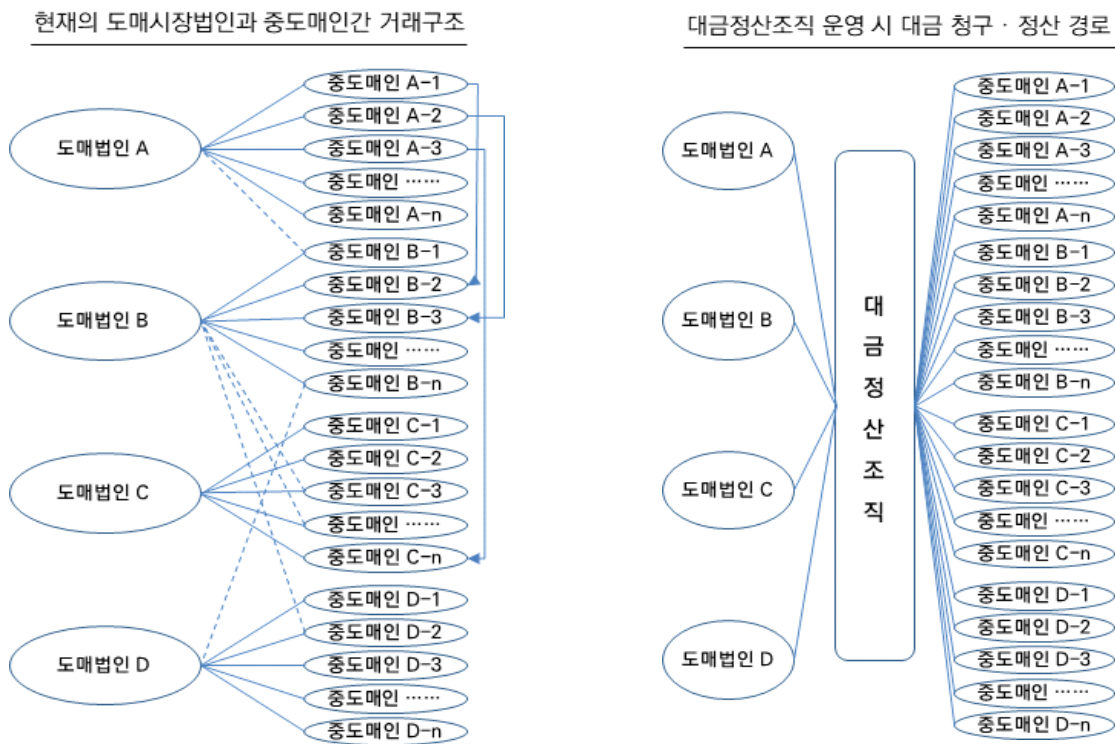
2)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체계 구축

- 현재의 거래방식은 중도매인이 주거래법인과 대부분 거래하고, 일부 품목에 한해 보조거래법인과 거래하거나, 타 중도매인에게 구입하고 모든 중도매인이 개별적으로 도매시장법인별로 결제하고, 도매시장법인도 모든 중도매인에 개별적으로 채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담보·보증금과 미수금으로 얽혀 있음.
- 도매시장법인별로 취급품목의 특화와 차별화를 도모하여 거래의 규모를 넓히고와 산지수집기능의 전문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중도매인의 전문화 촉진이 가능함.

3)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정산업무 운영 효율화

- 통합정산조직이 운영되면, 모든 도매시장법인과 모든 중도매인이 통합정산조직과 1:1 거래관계가 형성되고, 모든 중도매인이 통합정산조직에 설정된 보증금과 담보만으로 여러 도매시장법인에의 경매, 정가수의매매에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함.
-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의 수많은 개별약정과 수많은 결제, 정산 체계의 일원화가 가능함.
- 중도매인 측면에서는 도매시장법인별로 건별 송금, 보증금, 담보, 한도 관리하는 정산 관련 업무의 복잡함을 해소할 수 있으며, 통합정산서 발행으로 보다 수월한 거래 내역 확인이 가능함.

〈그림 2-8〉 통합정산조직 운영 시 거래구조



※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7), 농산물도매시장 통합정산조직 설립방안 연구용역

III. 통합정산조직설립, 운영을 위한 현황 분석

1. 통합정산조직 설립 필요성, 기대효과

가. 통합정산조직 설립 필요성

1)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

- 도매시장법인 ↔ 중도매인간 정산업무 효율성 제고
 - 도매법인은 정산조직을 통해서 중도매인과의 모든 금전적 거래(보증금, 담보, 한도책정, 판매대금 정산, 판매 장려금 지급 등) 진행이 가능함.
 - 또한 중도매인도 통합정산조직를 통해서 보증금, 담보설정, 판매대금 정산과 판매 장려금 정산이 가능하여, '도매시장법인 ↔ 중도매인간'의 '거래비용' 감소가 가능함.
 - 도매법인 측면에서는 개별 중도매인별로 진행하던 정산업무를 통합정산조직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관련 업무가 축소되며, 이에 따른 비용절감, 조직 효율성 제고 효과가 매우 큼.

- 도매시장법인 간, 중도매인 간 경쟁 촉진
 - 중도매인들은 항상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으로, 다른 도매법인에 담보, 보증금의 추가 제공이 불가능함.
 - 정산체계가 통합되고, 중도매인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면 법인 간 중도매인 유치 경쟁이 발생함.
 - 능력과 규모가 되는 중도매인들은 여러 법인으로부터 양질의 농산물을 모아서 구매자에게 공급하게 되며 중도매인이 규모화될 수 있음.

2) 상장거래 정산체계의 주요 현안 해소

- 안정적인 도매법인 · 출하자 대금 지급 체계 구축
 - 도매법인 및 출하자의 재무적 안정성 확보, 거래대금 회수 리스크 소멸이 가능함.
 - 채권 회수에 필요한 각종 인적, 금전적 소요 소멸됨.

- 중도매인의 보증금, 약정체결, 한도관리 업무 애로 사항 해결
 - 복수의 도매시장법인과 거래를 위해 소요되는 행정적 업무시간을 고객 발굴, 양질의 상품 구매 등으로 전환하여 중도매인의 영업력 강화가 가능함.
 - 중도매인에게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보증금, 담보 제공, 거래약정 체결, 거래 한도 책정 등의 업무가 해소됨.
 - 중도매인의 업무 애로사항 해결은 도매법인의 거래물량 확대, 출하자 이익 제고 등의 추가 효과로 이어짐.

나. 통합정산조직 설립 기대효과

1) 중도매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이익 제고

- 중도매인의 취급 상품 확대, 물류처리능력 확대, 판매처 확대를 위한 제반 방안 마련
- 농협유통센터, 식자재마트, 대기업 식자재업체, 유통 사업단 대비 도매시장 중도매인 경쟁력 제고
- 물류비(배송비/이송비/내부 및 외부창고), 소분/포장비, 시장관리 비용과 같은 직접비 절감
- 2013년 5월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보면, ‘거래능력 및 신용정보 평가 등을 통한 중도매인의 투명성 강화’를 통합정산조직 설립의 목적으로 제시함.
 - 통합정산조직이 운영되면 중도매인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상장거래의 투명성도 강화됨.
 - 도매시장법인간의 거래와 정산의 특성 파악이 가능하여 거래와 정산의 투명성이 확보되며, 통합정산조직을 통해 모든 거래 내역에 대한 관리가 가능함.

2) 도매시장법인의 비용 절감을 통한 이익 제고

- 중복 업무 축소를 비롯한 보증금, 담보, 한도관리 업무 축소를 통한 비용 절감
- 대손충당금 자산 전환, 판매 장려금 지급 업무 축소
- 통합정산조직 운영을 통하여 도매시장법인이 판매한 농산물에 대한 대금을 100% 회수가 가능하여, 출하자에게 안정적으로 출하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

3) 도매시장 활성화 및 거래안정화

- 통합정산조직의 설립·운용으로 도매시장법인은 대손충당금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대손충당금 모두 자산차감계정에서 삭제할 수 있으며 이익 전환이 가능함.
- 도매시장법인 본연의 주요 목적으로는 산지로부터 우수한 농산물 구매, 출하자와 공동으로 상품 개발, 수급관리, 시장에 적정량의 우수한 농산물 유통 등을 바탕으로 더 좋은 농산물을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공급하는 것임.
- 기존 정산체계의 특성으로 인하여 중도매인 소속제의 특성으로 시장 내에서의 경쟁이 둔화되고, 도매시장법인 본연의 역할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존재함.
- 통합정산조직 설립을 통하여 도매시장법인은 지금까지는 출하자 대상으로만 영업·서비스 하던 것으로 우수한 중도매인을 유치 및 유지하기 위한 투자와 경쟁 활동이 필요하게 됨.
-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은 수익의 일부를 할애하여 중도매인에게 판매 장려금을 지급함.
- 판매 장려금 지급 조건은 중도매인이 약정일에 결제대금을 완납할 때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성격을 가지며, 도매시장법인의 입장에서 판매 장려금은 마감일 완납을 위한 비용으로 인식함.
- 이러한 판매 장려금 정산조직 운영비용과 위험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일부 중도매인들의 이익 도모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활용 방안임.

[표 3-1] 통합정산조직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구분		통합정산조직 설립 전
직접효과	도매시장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축소와 이에 따른 비용 절감 - 법인당 2 ~ 3명 인건비 절감 - 보증금, 담보, 한도관리 업무 축소 - 대손충당금 자산 전환 이익, 대손충당금 미충당에 대한 이익 전환 가능 - 판매 장려금 지급을 정산조합에 일괄 이관이 가능 - 대형·신용도가 높은 중도매인 대상 영업 확대 기회
	중도매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를 위한 별도의 약정 체결 없이 법인 제한 없이 즉시 구매 가능함 - 정산·송금 관련 업무 축소 - 미수취한 판매 장려금 수취를 통한 공동 수익 증가
간접효과	도매시장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 및 판매에 더욱 집중이 가능하고, 우수 중도매인 집중 관리 가능 - 대금회수·중도매인 신용관리업무를 정산조직(조합)으로 이관
	중도매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조직(조합)의 한도 내 지급보증 - 영업 관리시스템 등 관련 정보시스템을 무상으로 활용 - 신용도 관리, 거래투명성 제고
과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약정, 한도 내 자유로운 거래 - 거래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높은 중도매인에 대한 법인의 개별 한도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 확대 기회 발생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2B 전자결제 서비스, 외상대금회수·법인결제 통합 핀테크 적용 - 통합대금정산 시스템 운영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농수산물 유통정보 활용 체계 마련

※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7), 농산물도매시장 통합정산조직 설립방안 연구용역 재구성

2. 정산조직 관련 규정·정책

가. 중앙정부 판매대금정산조직 추진 정책

- 2010.4.28. 관계부처 합동: 경쟁 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
 - 중도매인 복수거래를 위한 정산법인 설립 추진
- 2011.9.29. 농식품부장관: 농안법 개정안
 - 도매법인 ↔ 중도매인간 판매대금의 정산조직 법제화
- 2013.5.27. 관계부처 합동: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 도매법인간 경쟁축진을 위한 경매대금 정산조직 도입
 - 정산조직 활용한 물류정보 기반 구축 및 도매시장 투명성 강화

나. 판매대금 결제 관련 법규

- 농안법 제41의 2: 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 농안법 시행규칙 제36조: 대금결제절차
- 개설자조례
 - 중도매인 보증금 납부, 도매법인의 보증금관리, 거래한도 초과 및 고의로 미수금 미납 시 중도매인의 거래 참가 제한
- 농안법 제42조 제1항 제5호: 대금정산수수료 징수 규정
- 농안법 시행규칙 제39조 제8항: 정산수수료 최고한도 규정

다. 상장예외판매, 시장도매인 정산조직설립

- 가락시장 및 강서시장 상장예외거래에 대한 출하대금 정산회사 설립 및 운영 (2014년)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출하대금 정산조합 설립 및 운영 (2016년)

3.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의 판매대금 정산조직 관련 주요 이슈

가. 도매시장법인

- 판매대금 정산조직 설립과 관련하여 도매시장 법인 측면에서의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
 - 기존 미수금을 통합정산조직으로 이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하며, 도매시장법인은 미수금에 대한 상계 수단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담보와 보증금을 통합정산조직에서 가져가면 미수금도 가져가야 하는 것이 주요 조건임.
 - 향후 담보, 한도, 채권관리 업무가 사라짐으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한편, 판매대금 정산조직 설립과 관련하여 도매시장 법인의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중도매인과 거래 시 제공하는 한도, 판매 장려금과 관련하여 반대 이슈가 존재하며, 도매시장법인의 입장에서는 중도매인을 관리하는 주요 수단이 통합정산조직으로 이관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중도매인 유치경쟁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우수 중도매인이 수집력이 좋은 도매시장법인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중도매인 관리 능력과 수집력이 떨어지는 법인의 경우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효율과 관련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정산조직의 운영비용, 위험충담금 등의 근거로 효율이 증가될 수 있을 것을 우려함.

나. 중도매인

- 판매대금 정산조직 설립과 관련하여 중도매인의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
 - 농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전략과 정책이 중심이었으며, 중도매인들은 여러 제약들이 발생하였음. 이에 중도매인이 주체가 되어 통합정산조직을 설립하고 도매시장법인과 동등한 입장으로 거래와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함.

- 판매 장려금과 관련하여 거래가격 기준이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한도가 설정되는 것, 마감기일 이후에는 전혀 수령하지 못하는 문제, 차별화 지급 등 여러 불만족이 존재하며, 통합정산조직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판매대금 정산조직 설립에 대하여 중도매인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반대 의견을 그대로 옮기는 일부를 제외하면 우려의 측면이 다수이며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 기존 이익 침해에 대한 우려 등이 존재함.
 - 통합정산조직을 통하여 중도매인이 복수 도매시장법인과 거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가능성, 타 법인 중도매인들의 견제, 경매사들의 의도적 회피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4. 통합정산조직 설립 이슈 및 해결방안

가. 통합정산조직 설립 주요 이해관계자

- 통합정산조직 설립과 관련하여 주요 이슈 및 이와 관련한 각각의 이해관계자는 다음 [표 3-2]와 같음.
- 통합정산조직은 정부부처, 지자체(개설자), 도매시장 유통인이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함.
- 통합정산조직은 정부부처, 지자체(개설자), 도매시장 유통인이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함
- 정부부처는 공영도매시장의 주무부서인 농식품부 유통정책과를 포함하여, 공정거래,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관여하고 있음.
- 농식품부는 공영도매시장 총괄관리 및 제도 지원, 관리규정을 마련하는 기관으로써, 통합정산조직 설립을 위한 방향성, 정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결정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가짐.

[표 3-2] 통합정산조직 설립 관련 주요 이슈 및 이해관계자

이슈	이해관계자			
	중앙정부	개설자	도매법인	중도매인
설립의 당위성, 필요성 vs. 불편함, 비용발생				●
법인별 vs. 시장별 통합정산 조직화			●	
先지급, 後회수 vs. 先수취, 後지급				●
주식회사 vs. 조합(사단법인)		●		●
참여자간의 지분구조				●
'통합정산시스템' 구축, 운영비용 부담 주체			●	●
정산조직 인건비, 관리비 부담주체			●	●
통합정산조직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	●	●	●	●
주거래은행 변경과 지점 설치 여부				●

※ 출처: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2020). 가락시장 청과부류 통합정산조직 도입 연구 재구성

- 통합정산조직 설립을 위한 통합정산조직은 추가비용 발생, 기존 거래비용구조(판매 장려금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도매인과 도매시장 법인이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음.
- 통합정산조직 설립 이슈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이해관계는 중도매인으로 확인되며, 설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과 비용발생, 정산대금 지급 방식, 조직 설립 형태, 지분 구조, 정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 정산조직에 대한 자금지원 등 설립과 관련한 전반적인 이슈와 연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도매법인의 경우 법인별 또는 시장별 통합정산 조직화 여부, 통합정산시스템과 정산조직 운영에 다른 비용 부담 주체, 자금지원 여부와 같이 비용 측면에서의 이슈와 밀접하게 연계됨.
- 통합정산조직을 위한 개설자의 경우 정산조직의 형태와 자금지원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확인되며, 중앙정부의 측면에서는 대금 정산조직에 대한 자금지원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현안으로 파악됨.

나. 주요 이슈 및 해결방안

- 통합정산조직 설립과 통합정산조직 설립은 도매시장법인간의 경쟁 촉진, 중도매인의 투명한 거래와 신용도 제고, 통합정산조직을 통해 물류 효율화, 유통경쟁 촉진 등을 통한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임.
-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소속제는 폐지되었으나 실질적인 소속제가 유지되고 있고, 중도매인들이 보증금, 질권 설정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도매시장법인과 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실정임.
- 또한 중도매인간 거래 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같이 도매시장에서 부정적인 현상들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짐.
- 농산물 도매시장은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매우 특수하고 규제 일색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서만 설립되고 농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조례시행규칙을 통해서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음.
-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의 거래가 농안법의 테두리에서만 진행되어야 하듯이 중도매인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대금정산도 농안법에 의해 통제되고 관리되어야 함.
- 정부차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책과 과제를 마련하고 도매시장 종사자에게 해당 제도에 대한 수용 또는 강제적 시행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5. 통합정산조직 운영 이슈 및 해결방안

가. 통합정산조직 운영 주요 이해관계자

- 통합정산조직 운영과 관련한 주요 이슈와 이해관계자는 우선 중도매인의 경우 보증금·거래한도, 회사자본금과 조합출자금 규모, 대금 미지급시의 패널티, 판매 장려금 구조화, 거버넌스와 개설자 역할, 정산마감과 도매법인의 송금 시점 등 모든 이슈와 연관되는 것으로 확인됨.
- 도매법인의 경우 판매 장려금 구조화, 거버넌스와 개설자 역할과 관련한 이슈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중앙정부의 경우 판매 장려금 구조화 여부에 대하여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개설자의 경우 회사자본금과 출자금 규모, 패널티, 장려금 구조화, 개설자 역할 등의 이슈와 연관되어짐.

[표 3-3] 통합정산조직 운영상의 주요 이슈 및 이해관계자

이슈	이해관계자			
	중앙정부	개설자	도매법인	중도매인
보증금·거래한도				●
회사자본금과 조합출자금 규모		●		●
미지급시의 패널티(Penalty)		●		●
판매 장려금(완납장려금) 구조화 여부	●	●	●	●
Governance와 개설자의 역할		●	●	●
정산마감과 도매법인 송금시점				●

※ 출처: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2020). 가락시장 청과부류 통합정산조직 도입 연구 재구성

나. 주요 이슈 및 해결방안

1) 통합정산조직 운영비용 발생

- 통합정산조직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출하자·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농산물 거래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통합정산조직에서 수취하는 정산수수료는 극히 미미하지만, 농산물 거래비용의 일부로 구성될 수밖에 없음.
- 농산물 거래비용의 일부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농안법 시행규칙 제39조 제8항에 정산수수료는 거래금액의 최대 0.4% 또는 최대 월 7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음.
- 가락시장비상장정산의 경우 연간 6,000억 원을 거래하고 있으며, 정산수수료는 조합비를 제외하면 연간 약 1.3억 원(0.25%)으로 매우 낮음.
- 강서 시장도매인 정산조합 또한 52개 시장도매인이 매월 20만원씩 조합비를 내고 있어, 연간 약 1.3억 원(0.25%)의 정산관련 조직의 운영비를 지불하고 있음.
- 가락시장에서 판매대금 정산조직이 만들어질 경우, 연간 5억 원 운영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청과 전체거래금액인 3조 7천억 원 대비 0.0135%의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됨.
- 통합정산조직 운영을 통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기대할 수 있는 실제 이익은 대손충당금 미충당으로 인한 이익, 보증금·담보·한도·채권관리 업무 감소 등으로 인한 이익이며, 이는 추정된 연간 운영비 5억 원보다 클 것으로 확인됨.

2) 비용 확보 이슈

- 통합정산조직의 운영을 위한 비용은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에게 지급해주고 있는 판매 장려금의 일부를 할애 받아 통합정산조직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음.
-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의 일부를 정산조직 운영에 활용하는 것이 아닌,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한 판매 장려금을 정산조직이 우선 결제하여 지급받고 이를 정산조직이 운영비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
- 중도매인 정산대금을 정산조직이 우선 결제 후, 이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중도매인이 지급받는 판매 장려금의 일부를 정산조직이 수취하여 운영비로 활용하는 것임.

- 이는 중도매인 입장에서 마감일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어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며, 도매시장법인의 입장에서 마감일에 제대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채권회수, 위험 발생과 관련한 추가 비용발생이 해소되게 됨.
- 즉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모두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한 판매 장려금과 불필요하게 발생한 비용을 고려할 시, 통합정산조직 운영을 위한 비용 확보 이슈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사안임.

3) 도매시장 체계 변화 이슈

- 중도매인만으로 구성된 통합정산조직이 설립되는 경우, 기존 도매시장법인주도의 도매시장 운영 체계에서 중도매인 조합으로 체계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 중도매인 입장에서 대금지급 방식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관리·영입을 위한 마케팅·영업활동에 따른 비용발생, 중도매인 이탈로 인한 거래가격 형성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간의 경쟁 촉진 가능성이 있고, 기존의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매우 강력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러한 도매시장 체계의 변화는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측면에서는 통합정산조직 설립과 운영의 순기능으로 기대함.
- 도매시장법인 공공출자법인이나 공익적 성격을 갖는 조직이 아님에 따라, 시장 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은 서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투자와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 원가절감을 위한 제반 노력이 필요함.
- 도매시장법인은 수집능력이 떨어져 중도매인이 수집해온 것을 상장하는 경우도 다수이며,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게서 전송받은 농산물을 상장하고 중도매인에게 상장거래 수수료를 확보하면서 판매하고 있음.
- 통합정산조직은 시장도매인제의 전면적 도입, 공동경매장 설립, 공동경매 등을 제안하는 것이 아닌, 도매시장법인의 대금지급 보장을 위한 조직으로 도매시장법인이 경쟁 체계로 인한 위협의 가능성은 존재하나 전체 도매시장의 활성화와 대금지급 안정화 차원의 순기능이 존재함.

4) 거래한도 및 농산물 관리

-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을 직접 관리하면서, 거래한도와 담보 설정을 유연하게 운영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중도매인이 소화하기 힘든 물량 또는 거래한도 초과 물량도 다양한 방식으로 출하 물량을 해소하였음.
- 통합정산조직의 경우 경험 부족과 중도매인과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연한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함.
- 이는 통합정산조직 운영 초기에 시행착오로 인하여 충분히 발생 가능한 이슈이나, 최소 1년 정도의 통합정산조직 운영을 통해 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가락시장 비상장정산방식의 경우 다양하고, 시스템으로 수용하기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이슈 사항들이 존재하였지만, 업무설계·전산시스템 설계과정에서 모두 반영하게 되었으며 정산조직 몇 개월 이내에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음.
- 도매시장법인에서도 거래한도 대비 물량이 많이 밀려오는 경우에는, 중도매인에게 각서를 받는다면, 신용도 높은 중도매인 대상으로 한도를 일시 상향시켜주어 출하된 물량을 해결하고 있음.
- 가락시장 비상장정산과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보증금·담보, 결제준비금 대비 3배 정도의 거래한도를 주고 있으며, 300%의 한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음.
- 또한 비상장품목의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성수기한도라는 별도의 한도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법과 틀을 동원하면서 출하된 물량을 소화하는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임.
- 농산물은 저장성이 높지 않고 수확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하락되는 특성을 가지며, 도매시장의 경우 별도의 보관공간이 부재하여 출하된 물량은 거의 당일 경매 또는 정가수의매매로 거래되어야 함.
- 경매사들이 시황을 보고 물량의 출하를 조절하지만 수탁거부금지의 원칙, 비싼 물류비 때문에 도매시장에 출하된 물량이 다시 출하자에게 되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중도매인의 거래한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그 거래한도로만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도매시장법인은 적정 물량만을 출하하게 할 것이고 그 결과 도매시장은 수급 균형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임.

IV. 통합정산조직 설립·운영 방안

1. 통합정산조직 사업기회 정의

가. 정산업무 기본서비스

- 정산 업무 기본 서비스는 공적인 영역으로 최소한의 수익 확보를 전제로 사업이 설계되어야 함

1) 결제대금 계산 및 청구서 발행

- ‘구매자 → 중도매인’ 및 ‘중도매인 → 도매법인’ 거래내역에 따른 구매대금 및 판매대금 계산 및 지급 청구서 발행

2) 송금대행 및 지불대행

[표 4-1] 송금대행 및 지불대행

거래관계	구매자, 중도매인 지불시	구매자, 중도매인 미지불시
구매자 → 중도매인	송금대행	지불대행 및 채권회수
중도매인 → 도매법인		

3) 거래약정체결, 보증금, 한도, 미수금 관리

- 거래대금 정산 거래약정체결
 - ‘구매자 → 정산조직 → 중도매인’ 간의 구매대금
 - ‘중도매인 → 정산조직 → 도매법인’ 간의 판매대금
- ‘중도매인의 상장거래 통합 보증금, 한도, 미수금 관리’

4) 정산시스템 운영 (전문기업 아웃소싱)

- ‘구매자 → 정산조직 → 중도매인’, ‘중도매인 → 정산조직 → 도매법인’ 계산, 지급, 채권관리, 보증금, 한도관리, 지불대행 및 송금대행 등의 업무를 위한 통합정산 시스템 운영

- ‘중도매인 → 구매자’ 및 ‘도매법인 → 중도매인’ 간의 결제 관련 거래 내역 총액 또는 상세 내역 관리하며, 정산내역을 개설자에게 제공
- 경매시스템과 개설자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자료 송수신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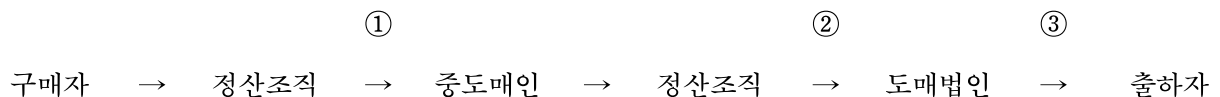
나. 부가 서비스

1) 결제대금 대출서비스

- ‘구매자 → 중도매인’ 및 ‘중도매인 → 도매법인’ 결제일 미지불 가능성 발생 시, 구매자, 중도매인 대상의 대출(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 대출) 서비스 기회를 의미함.
- ‘구매자 → 정산법인 → 중도매인’ 간의 지불대행 자금은 즉시 결제 도입 시 (최대) 외상거래 총액인 2조 7천 5백억 원의 단기대출상품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 이동판매상, 일반소매상, 소형납품업체의 합은 1조 6천억 원임.
- ‘중도매인 → 정산법인 → 도매법인’ 간의 지불대행 자금은 즉시 결제 도입 시 약 4,225억 원으로 추정됨.
- 연 3%의 이자율 적용 시 (30일 상환적용), 지불대행금 이자수익은 50.6억 원으로 추정됨.
- 구매자 지불대행 이자: 40.0억 원 (= 1조 6천억 원 × 3% ÷ 12)
- 중도매인 지불대행 이자: 10.6억 원 (4,225억 원 × 3% ÷ 12)

2) 농수산페이 서비스

- 다음과 같이 농수산페이를 적용하는 경우 최대 3차례의 결제를 농수산페이로 적용할 수 있음



- 모든 거래에 거래수수료 소규모 가맹점 기준인 0.8% 적용 시 연간 약 1,000억 원의 수수료 매출이 예상됨
 - 가락시장 정서상 중도매인 1인당 최대 월 10만원 (연간 22.8억 원), 도매법인당 월 1억 원 (연간 72억 원) 의 정산수수료 지급이 Ceiling으로 예상됨

3) 거래데이터 활용한 농수산물 도매 거래 및 금융 플랫폼 사업

- 통합정산시스템 활용하여 확보 가능한 데이터

[표 4-2] 거래 형태에 따른 확보 가능한 데이터 종류

구분	도매법인 → 중도매인 거래 내역	중도매인 → 구매자 거래 내역
최소의 데이터	중도매인별, 일별, 도매법인별 거래금액 및 결제금액	개별 중도매인 ↔ 구매자 간 일별 거래금액 및 결제금액
거래 플랫폼 사업을 위한 데이터	중도매인의 일별, 도매법인별, 출하자별, 산지별, 품목별, 품종별, 등급별, 거래단위별 상세거래 (거래규모, 거래금액) 내역	일별, 도매법인별, 구매자별, 출하자별, 산지별, 품목별 · 품종별, 등급별, 거래단위별 상세거래 (거래규모, 거래금액) 내역
금융 플랫폼 사업을 위한 데이터	중도매인의 일별, 상장 낙찰금액, 판매대금 정산금액, 구매자별 판매금액, 구매대금 회수 금액 중도매인 대출, 채무 관련 내역 (대출서비스 수행 시)	구매자의 일별 구매금액, 구매대금 결제 금액, 구매자의 대출, 채무 관련 내역 (대출서비스 수행 시)

- ‘중도매인 → 구매자’ 도매거래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중도매인 낙찰 상품의 자동 등록 가능, 가격 자동설정 및 구매자의 거래내역 확인한 추천, 거래연계 서비스 사업
 - 중도매인 미판매 농산물의 도매 및 소매 구매자 대상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판매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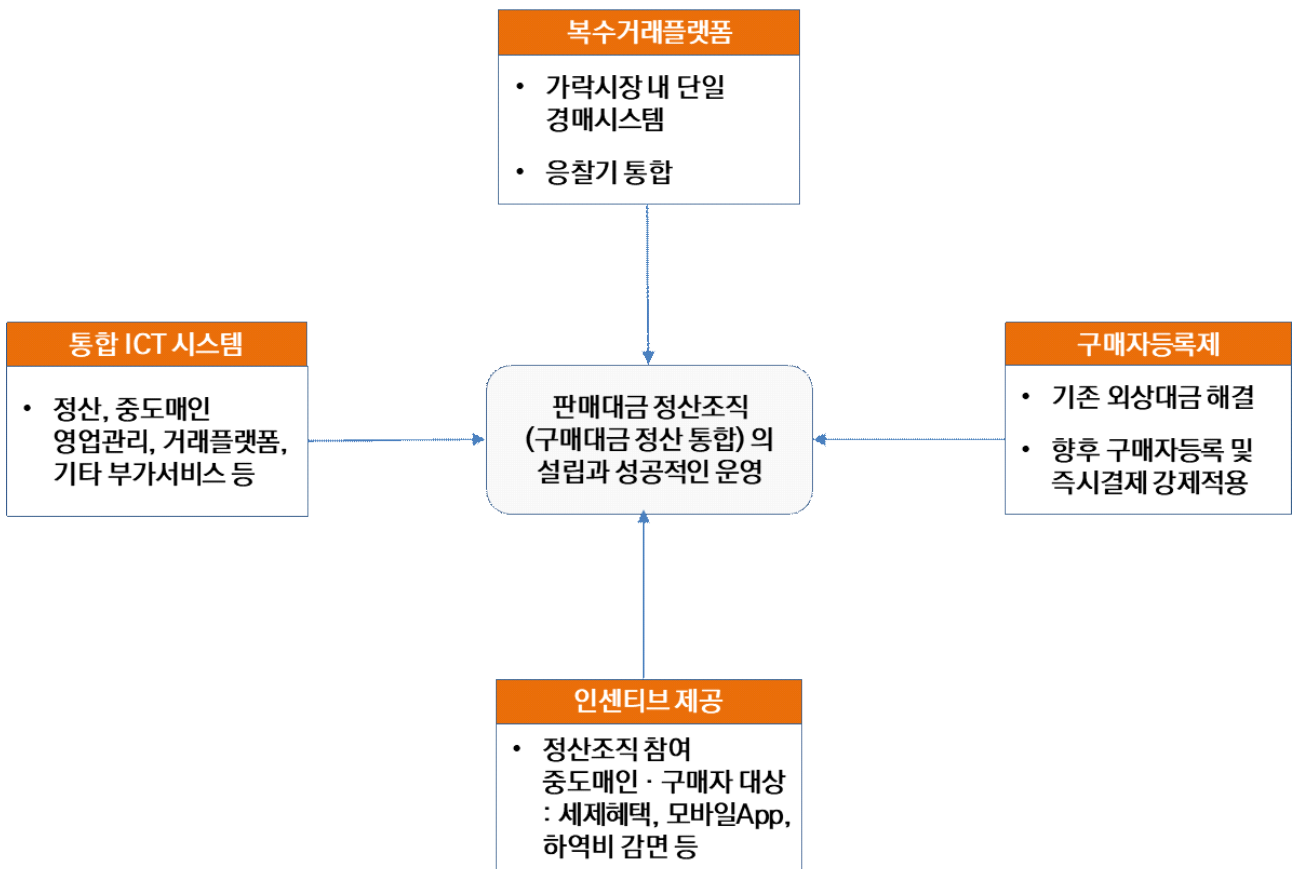
- ‘구매자 및 중도매인’ 대상의 금융 서비스 사업
 - 구매자 대상의 구매대금 회수를 위한 단기 대출 (예,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 서비스
 - 중도매인 대상의 판매대금 회수를 위한 단기 대출 서비스

2. 통합정산조직 설립과 운영의 전제 조건

가. 중도매인의 니즈 충족 요건

- 중도매인의 판매대금 정산조직화 설립을 위해서는 구매대금 정산이 통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은 네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함.

〈그림 4-1〉 중도매인 니즈 충족 요건



※ 출처: 본 연구용역팀 작성

1) 복수거래플랫폼 구축

- 판매대금 통합정산은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금·한도 통합만을 수행함
- 진정한 의미의 복수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도매인이 시장 내 모든 농산물·모든 도매법인을 대상으로 단일 응찰기를 통해 경매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시장 내 단일의 경매시스템인 복수거래플랫폼 운영이 반드시 필요함

2) 구매자등록제 시행 및 기존 외상대금 해결

- 중도매인이 도매법인에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은 구매자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그 금액이 금융 지원으로 해결할 성격이 아님.
- 구매자가 중도매인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금융상품을 개발 하여 구매자 → 중도매인 → 도매법인 미수금을 정리하여야만 통합정산조직의 설립이 가능함

3) 통합 ICT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 비상장정산, 시장도매인정산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산업무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금융기관과 연계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함
- 본 사업은 정산업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영도매시장 거래플랫폼, 금융상품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필수임

4) 중도매인·구매자 대상의 인센티브 제공

- 통합정산조직설립과 이를 위한 기존의 미수금 해소는 구매자·중도매인 모두 Win-Win의 구조이므로 당연히 정산조합 설립에 찬성할 것인바, 이후 구매자 등록 및 거래명세서 작성의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1) 아주 쉽게 거래등록이 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제공, (2) 한시적인 세금 감면, (3) 완납장려금, (4) 정산 회사 관리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함.

나. 법·제도 정비 필요 요건

1) 구매자등록제 및 등록자 혜택 제도화

- 출하자, 도매법인, 중도매인은 모두 농안법에 의해 등록·허가·거래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음
- 그러나 구매자는 누구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며, 거래 내역도 기록되지도 않고, 연간 2조 7천억 원의 외상거래(가락시장 연간 거래대금의 약 50%)가 있고, 현금거래도 40%에 달함. 현금거래의 상당부분은 중도매인이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 가능함. 이러한, 무자료거래, 외상거래, 현금거래를 없애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농안법 29조의 산지유통인등록, 30조의 출하자신고를 강제하듯이 구매자도 도매시장에 거래하기 위해서는 구매자등록, 구매예약 등을 법제화 추진이 요구됨
- 출하자 ↔ 도매법인간의 거래내역과 정산에는 농안법 제41조의 출하대금즉시결제, 판매원표 작성 등의 강제조항이 명시되어 있듯이 중도매인 ↔ 구매자 간의 거래도 즉시결제, 거래원표 작성 등의 강제규정이 필요함.
- 이를 통해 무자료거래로 인한 탈세, 구매자 지급지체로 인한 중도매인 부실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안전한 농산물 거래까지 유도할 수 있음
- 한편, ‘중도매인 → 도매법인’간 미수금의 대부분은 구매자 지급 지연 또는 미수금 또는 중도매인이 입금된 금액을 타 용도로 전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따라서 구매자 → 중도매인 → 도매법인 → 출하자 간 농산물 판매대금을 에스크로 형태로 구조화하여 농산물 판매대금이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중도매인이나 도매법인이 타 목적으로 전용하게 해서도 안 됨
- 구매자와 중도매인이 모두 통합정산조직을 의무화하고, 구매자 ↔ 중도매인 간 모든 거래를 실시간 전산입력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참고] 출하자등록, 즉시결제, 거래원표 규정 및 구매자거래에의 적용(안)

구분	출하자 규정	구매자 규정 (신규입법)
등록 의무(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 신고의무)	농안법29조(산지유통인 등록) 농안법30조(출하자신고)	농안법30조의1(구매자신고) - 개설자 신고 의무화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 목적 달성	
결제 관련	농안법41조1항(도매법인 → 출하자 즉시결제 의무)	농안법41조의 3(구매자 → 중도매인 결제 의무) - 정산창구를 통해 결제 - 즉시결제는 장기과제
거래내역 등록 관련	농안법41조2항(표준송품장, 판매원표 작성의무)	농안법41조의 3(거래명세서 작성의무 - 중도매인에게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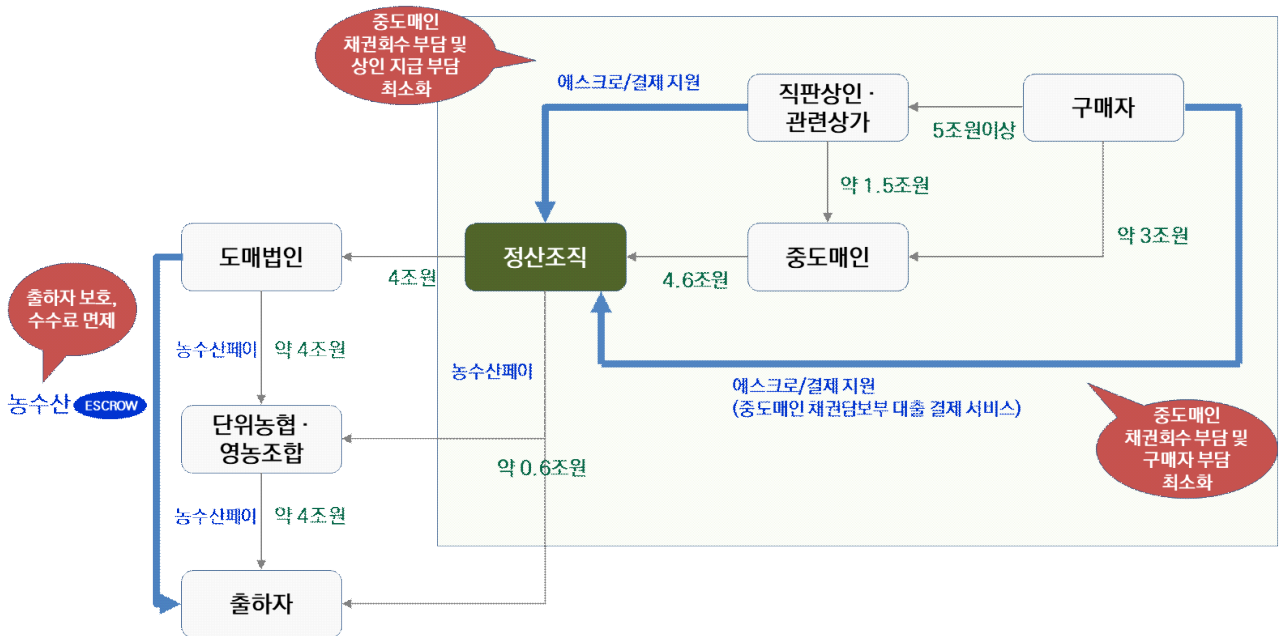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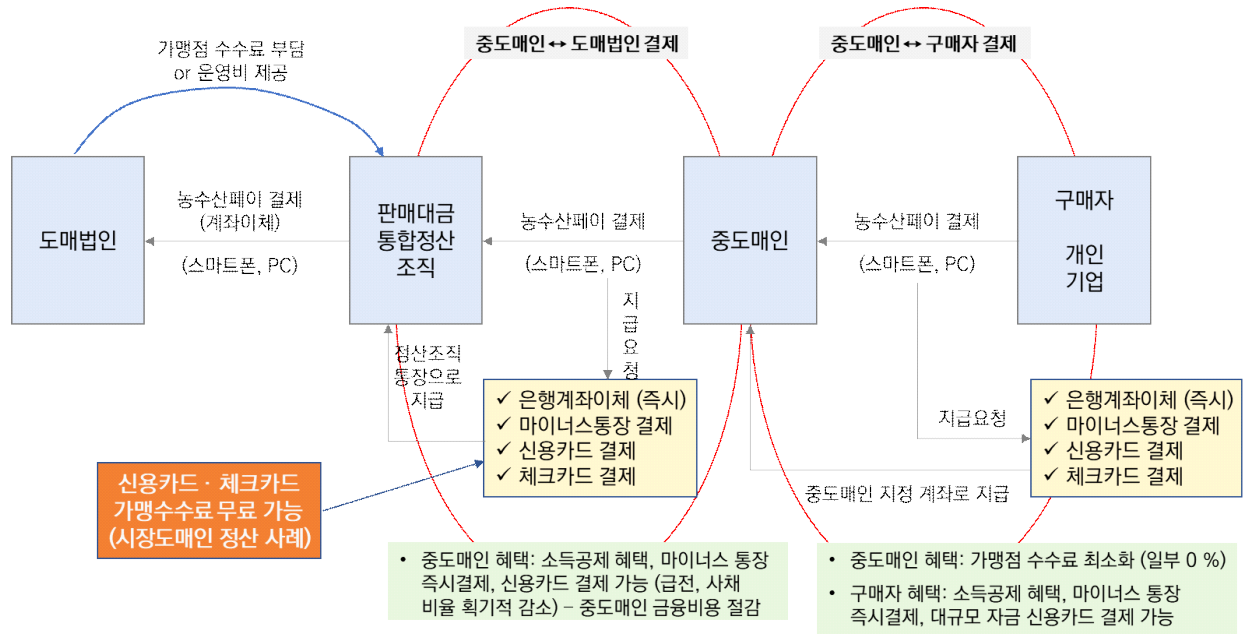
2) 복수거래플랫폼 도입 및 판매대금 통합정산 적용 제도화

- 도매시장 간 경쟁체제 구축과 중도매인이 자유롭게 여러 도매법인 거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장별로 통합된 경매시스템 (즉, 단일 경매시스템으로 모든 도매법인이 거래를 체결하고, 하나의 응찰기로 모든 경매 참여) 인 복수거래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함.
- 복수거래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으면 도매법인 ↔ 중도매인간 통합정산조직 설립은 불가능하거나 설립되어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

3) 농수산페이 사용 의무화, 확산 구조화

- 구매자 → 정산회사 → 중도매인 → 정산회사 → 도매법인 → 출하자 정산은 일련의 연계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모든 대금결제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자금의 흐름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Block Chain 구조화가 필요함.
- 이를 아래의 그림과 같은 농수산페이 구조로 체계화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함이 적절함.
- 공영도매시장에 적용되는 농수산페이와 농수산페이 에스스로/결제 지원 서비스를 통해 중도매인, 출하자 보호와 농산물 가격안정 효과까지 도모할 수 있음.

〈그림 4-2〉 농수산페이 구조



※ 출처: 본 연구용역팀 작성

3. 통합정산조직 설립 방안

가. 사업 추진 단계

- 정산회사 및 계열사 설립 및 사업 추진단계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됨이 적절함.

1) 사업주체와 중도매인 간 합의 (계약체결)

- 사업주체와 가락 청과 중도매인조합 간의 정산회사 설립 및 지분 참여에 관한 협약 체결
 - 판매대금 및 구매대금 통합정산조직 설립에 참여
(30%의 지분확보(현금 없는 영업권 인정 및 30%의 이익 배분)
 - 사업주체에 향후 10년간 독점적 지위 보장
 - 사업 준비, 설립, 추진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2) 제도화 관련 국회, 농식품부 합의

- 국회와 농식품부에서의 기존 외상미수금 해결안 합의 - 재정지원 또는 금융기관 참여를 통한 금융상품 적용
- 구매자등록제, 농수산페이 강제규정 법제화
- 복수거래플랫폼 도입, 정산수수료 확보 및 활용 등에 관한 제도화

3) 정산회사(주), 정산시스템(주) 설립 및 정보시스템 개발

- 회사 설립, 프로세스 설계, 각종 제도 설계 및 정보시스템 개발에 1년 이상 소요됨

4) 농수산페이(주) 설립 및 본격 가동

- 농수산페이 법제화 단계에서 설립함

나. 지배구조

1) 참여주체

- 통합정산조직의 본질적인 기능은 중도매인의 판매대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중도매인 미결제시 대불(代拂)하는 것임.
- 이에 중도매인의 참여가 없이는 정산조직화는 불가능하고, 거래대금을 수취해야 하는 도매법인이 수용해야 하고 정산업무를 관리하는 개설자·관리공사 및 농안법 집행기관인 농식품부의 승인이 필수적임.
- 정산조직은 금융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정산조직의 이해관계자는 중도매인, 도매법인, 개설자 및 관리공사, 농식품부를 비롯하여 금융기관까지도 고려되어야 함.
- 이들 참여주체 모두는 정산조직에 주주·조합원·관리감독·자금지원 등 어떤 형태로든 통합정산조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 통합정산조직에 주주 또는 조합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자본금·출자금을 납입하고 판매대금 정산을 책임지며 정산업무에 주체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중도매인 미결제에 대한 대불 책무를 가짐.
- 통합정산조직화는 대불 자금 부족위험, 내부 임직원의 실수 또는 고의로 인한 사고 위험, 중도매인의 고의 부도위험, 중도매인의 자금부족으로 인한 단기 미결제와 과산 등으로 인한 지급보증 위험 등 수많은 위험들이 내재되어 있음.

2) 비용부담주체

- 통합정산조직은 부담한 비용 대비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함.
- 통합정산조직을 통한 이익에는 운영비용 부담이 필수적이며, 순수 경제적인 접근으로 판매대금의 지급을 예정된 결재일에 100% 지급받을 수 있고, 위험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도매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임.
- 중도매인이 자신들의 결제자금을 자신들이 제때 지급하고 연대보증을 통해 중도매인의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공고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통합정산조직이 설립되었다면 중도매인이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임.

- 초기 통합정산조직의 운영은 그간의 판매 장려금 누락분으로 초기 운영비용을 확보하고, 이후 운영을 통하여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그 비용의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다. 참여방식

- 중도매인 조합 단위로 참여하여 중도매인 조합에서 미지급 위험을 일부 해소하는 방식, 도매법인이 주주 또는 비용 부담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방식, 개설자의 정산조직 관리 및 지원확보 차원에서 개설자·관리공사가 참여하는 방식, 금융권이 금융서비스 제공을 대가로 운영비 분담 방식 등 참여·운영의 주체는 매우 다양한 조합이 가능함.
- 통합정산조직의 가입을 의무규정으로 할 것인지 또는 임의규정으로 할 것인지도 중요한 요소임.
- 일본의 경우 중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정산조직인 관계로 의무규정이 필요가 없었으나, 우리나라의 가락시장 비상장중도매인,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의 정산조직화 사례를 살펴보면 의무규정으로 하지 않으면 통합정산조직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음.
- 판매대금 정상창구 운영 초기부터 모든 중도매인이 통합정산조직을 통해 정산함이 가장 이상적이고 목적과 취지에 일하는 것이나, 기존의 존재하는 악성·장기 미수금이 많은 중도매인의 일부는 유예기간이 필요함.

1) 회사방식 vs. 조합방식

- 회사방식은 원칙적으로 유한책임을 지며, 의사결정구조는 출자비례임에 따라 책임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외부 자금차입 등에 유리함.
- 조합방식은 원칙적으로 무한책임으로 가야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문성의 약화·낮은 투명성 등의 문제 발생이 가능함.
- 회사방식의 경우는 주식회사의 설립을 의미하며, 조합방식은 농식품부 산하 또는 지자체 산하의 사단법인으로의 설립을 의미함.

2) 지분구조와 지분비율

- 출자자로 참여 가능한 조직은 개설자, 관리공사, 위탁기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외부투자자인데, 개설자 및 관리공사는 통합정산조직의 운영규정에 실질적인 강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개설자 및 관리공사는 도매시장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비율에 상관없이 통합정산조직에 참여할 때에는 가장 비중이 높은 의사결정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존재함.

3) 개설자 및 관리공사의 역할 필요성

- 개설자, 관리공사는 농안법 규정²⁾에도 판매대금정산은 개설자의 업무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개설자, 관리공사가 참여하고 관리하고 규정마련의 근거가 충분함.
-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간의 정산방식은 사적인 영역이므로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 질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개설자나 관리공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도 존재함.
- 이에 개설자 및 관리공사는 적정수준에서 관리감독의 범위와 방식을 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참여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앙정부의 업무대행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며, 농안법 법제화, 도매시장 제도, 평가, 시설현대화, 각종 정부사업의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통합정산조직은 금융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고도화된 통합정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구축비용과 운영비용은 도매시장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통합정산조직 출범에 여러 한계점이 발생함.
- 대금정산 창구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은 중앙정부가 전국 단위의 단일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통합정산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맡을 조직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유일함.

2) 농안법 시행규칙 제36조 2항에는 “출하대금결제와 법 제41조의2에 따른 판매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 가락시장정산(주)과 (사)한국시장도매인 연합회와 같이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는 가능하나, 통합정산시스템은 모든 도매시장의 거래대금 및 관련되는 부속사항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 요구됨.
- 중도매인만으로는 정산조직 구성과 운영이 중소 규모의 도매시장에서는 거래의 투명성·전문성·수익 원에 이르는 자금 관리의 위험성 때문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이 높으며, 정산조직의 참여주체로서 언급되는 개설자는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하고 금융기관의 경우 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에 참여 의사가 없음.
- 이러한 실정에서 농안법에 의해 규정된 기관이 통합정산조직에 주체로 참여해야 하는바, 마지막 대안이자 유일한 대안은 aT가 조정자·관리감독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aT의 통합정산조직에의 참여는 농안법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규정과도 일치하고 있다. 농안법 21조³⁾에 따른 개설자 위탁 기관은 관리공사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aT는 개설자로서 통합정산조직에 참여할 수도 있음.
- 공사법 제13조(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제14조에 따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위탁 또는 대행 받은 사업은 사업할 수 있음)규정에 따라서 정부 또는 지자체 위탁으로 통합정산조직에 참여가 가능함.
- 통합정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주주로서 직접 참여하게 되면 농식품부의 시장 관리 정부업무 대행기관으로서의 aT의 전문성·기능·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에도 큰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음.
- 수익 원의 구축·운영자금과 정산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어 지금까지 정산조직이 출범하지 못한 시장에서는 즉시 정산조직의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이 밖에도 도매시장 거래 데이터를 직접 확보할 수 있고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해지고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정보를 생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가능함.

3) 농안법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업무 범위를 정하여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에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참여하는 통합정산조직은 주식회사 방식으로 밖에는 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분투자한 부분에 대한 유한책임 이외에는 통합정산조직의 부실 또는 중도매인의 미결제에 대한 공동책임은 존재하지 않음.
- 내부 임직원의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자금관리상의 문제 발생도 통합정산시스템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주로서 참여하는 경우의 위험은 거의 없음.
- 농산물 도매시장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 도매법인의 독과점적인 구조, 열악한 경영환경, 중도매인의 정산업무의 비전문성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조정·관리·통제·지원하여야만 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참여는 매우 중요함.

5) 중앙정부 참여 및 역할

- 통합정산조직 운영요령 마련
 - 통합정산조직은 농안법에 명시되어 대금 결제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조직임.
 - 자금 운용·대금 결제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합정산조직의 자금관리·경영관리·인사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모니터링·통제시스템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사외이사제도 운영, 분기별 회계감사, 내부통제시스템 등의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중앙정부는 통합정산조직 운영요령과 같은 규정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부족한 역량과 중도매인이 중심이 되어 운영될 수밖에 없는 정산조직의 투명성·안정성·위험회피를 장치 마련이 필요함.
- 통합정산시스템 제공
 - 통합정산조직은 매일 일정한 규모의 대금을 중도매인으로부터 받아 도매시장법인에게 지급, 도매시장법인에 미리 지급한 후 중도매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수취하기 위한 채권관리, 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간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적절한 대응으로 정산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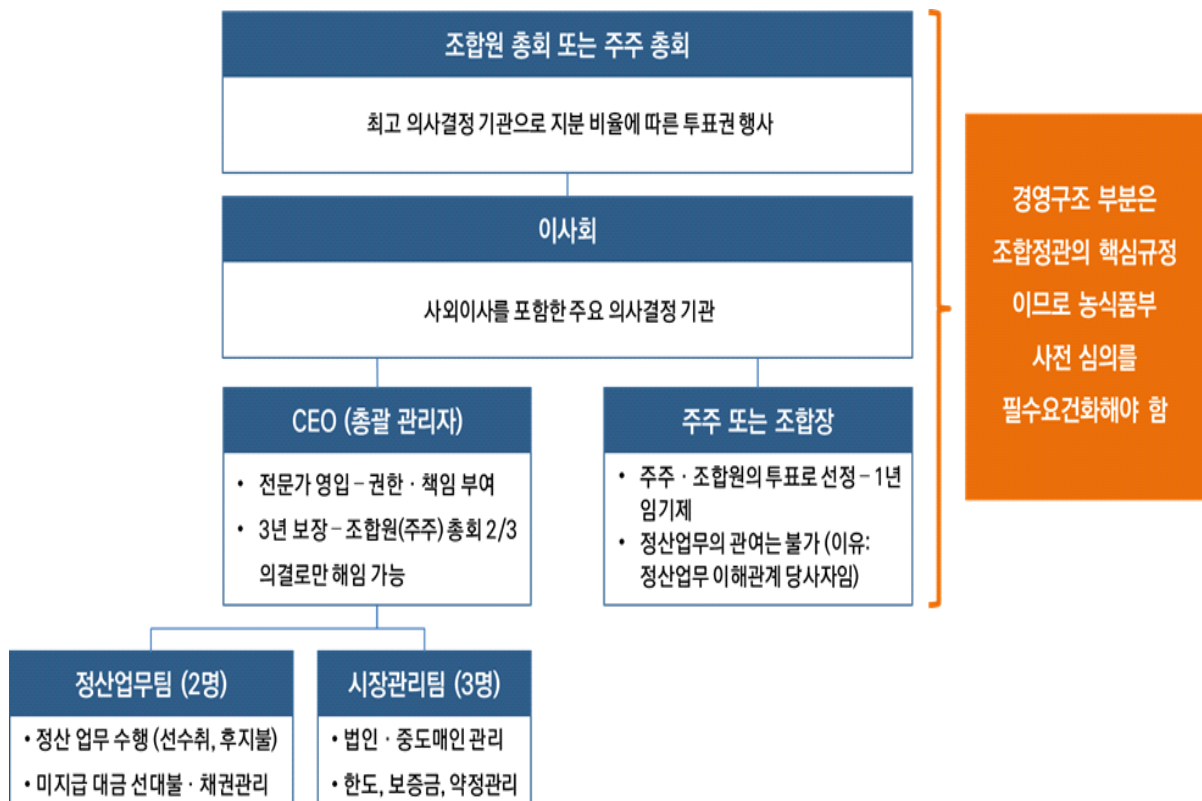
- 도매시장 내에서의 판매 장려금을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받아서, 중도매인에게 송금해야 하므로 판매 장려금의 효율 및 오류 없는 계산과 중도매인 개별 계좌로 정확하게 즉시 송금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되어야 함.
 - 통합정산조직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보증금·담보와 한도설정, 도매시장법인의 거래금액과 실시간으로 통합적으로 관리 부분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모든 업무들은 체계적인 전산시스템의 구축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함.
 -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개별적인 거래에 대한 영업비밀, 거래정보보호도 동시에 보장되어야 하고, 24시간 365일 운영되어야 하고, 데이터의 백업과 이중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많은 예산과 짧지 않은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 가락시장 비상장정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락시장정산(주)과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 모두 제 1금융권에서 10억 원 이상의 초기투자비용과 매년 1억 원 가까운 운영비를 감당하기 때문에 정산조직화가 가능하였음.
 - 통합정산조직에 금융권 참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로서는 통합정산조직의 필수기반이자 10억 원이 넘게 투자되는 정산시스템의 구축이 불가능한 실정임.
 - 이에 대금정산 조직을 위한 통합정산 시스템은 정부에서 전국 공영도매시장 공통으로 우선 구축하고, 각 도매시장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도매시장법인과 과의 실시간 연계 작업을 진행하는 절차로 통합정산조직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할 것임.
- 운전자금 지원
 - 기존 가락시장 비상장정산조직의 지불 대행금 용도로 사용토록 무이자융자 100억 원의 존재로 인해,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정산조합 설립에도 그 자금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설립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였음.
 - 실제 미지급 대금의 지불대행이 통합정산조직의 근원적인 설립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지불 대행금을 위한 운전 자금의 확보가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이슈로 예상됨.

- 어느 정도의 운전자금이 필요할지? 이 중에서 정부보조금으로 얼마만큼 충당이 가능할 것인지? 에 대한 분석과 중도매인의 대금결제 기일과 대금결제 비율, 판매 장려금 활용방안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보조금의 필요규모, 활용방안 결정이 가능할 것임.

라. 조직 구조

- <그림 4-1>은 대금정산 조직도(안)이며, 통합정산조직의 지배권은 중도매인만으로 정산조합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이 주도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이 지배권을 갖게 되는 구조임.

<그림 4-3> 통합정산조직구조(안)



※ 출처 : 본 연구용역팀 작성

- 중도매인 및 도매시장법인은 조합원 총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에는 반드시 참여해야만 하고 일상적인 업무는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가에게 맡기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외이사로 임명함으로써 CEO의 독단적인 경영과 외부(특히, 개설자 및 개설자의 위탁기관)의 불필요한 간섭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업무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므로, 정산업무는 선수취·후지불을 담당하는 직원 1명(즉, 중도매인이 송금하는 금액을 확인하여 출하자에게 송금하는 송금대행 업무 담당), 마감일까지 중도매인이 미지급한 금액을 확인하여 송금하고, 그 금액에 대한 채권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1명(즉, 지불대행 및 채권관리 담당)이 정산업무를 담당함.
- 시장관리팀은 말 그대로 도매시장에서의 중도매인 위험관리를 하는 담당자로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대상으로 거래약정관리, 한도관리, 보증금관리를 확인함.
- 또한, 도매시장에서의 중도매인의 미지급·과다 채무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도매시장법인과 함께 세우거나 거래물량이 매우 많이 들어왔거나 성수기 물량에 대해 도매시장법인과 협의하여 일시적으로 한도를 증가시키는 등의 도매시장과 관련한 배경 지식이 충분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4. 통합정산조직 운영 방안

가. 정산창구 운영 체계

1) 상장거래 출하대금 정산 관련 규정

- 상장거래 출하대금 정산은 농안법과 도매시장 상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농안법의 핵심정신인 출하자 보호가 바로 도매시장법인의 수탁거부금지 원칙과 출하된 농산물에 대한 즉시 출하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상장거래에 대한 출하대금 정산은 도매시장법인이 농안법 제41조의 단서조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37조에 구체적으로 정의함..
- 도매시장법인의 출하대금 정산 관련 개설자 조례도 마련되어 있는데, 대금결제를 위한 보증금 규모를 정의하며, 구체적인 대금결제 업무절차와 대금지급이 지체된 경우의 지체상금도 구체적으로 그 요율까지 명시함.

- 다른 일반적인 조항은 개설자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해야 할 보증금은 개설자별로 큰 차이가 있으며, 이 기준이 해당 도매시장에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

2) 비상장거래 출하대금 정산 관련 규정

- 도매시장법인의 직접대금결제는 농안법 제41조의 단서조항으로 시행규칙 제37조에 제정되어 있는데, 비상장품목 및 시장도매인의 출하대금 결제는 직접대금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별도의 정산창구의 활용, 특히, 통합정산조직을 통한 결제를 중앙정부가 유도함.
- 이에 따라 2013년 가락시장 비상장정산을 위한 가락시장정산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2016년에는 강서시장에 사단법인 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 농안법 제42조에 의거하여 가락시장정산(주)는 정산수수료를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사)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은 조합비 명목으로 정액의 정산수수료를 징수함.

3) 운영 주체

- 통합정산조직의 운영주체 대안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관리공사, aT가 활동 가능한 주체임.
- 도매시장법인이 주체가 된다는 것은 도매시장법인에서 출자하고 운영비용을 완전히 부담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의 삿포로중앙도매시장에서 대금수취목적으로 도매시장법인에서 상당지분으로 참여함으로써, 대금정산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주도가 되는 방식임.
- 중도매인이 주체가 되는 방식은 중도매인만 참여하는 조합방식이 대부분으로 정산조합이 중도매인 조합의 연합체 성격으로 만들어짐으로써 중도매인조합, 소매인조합이 조합원들에 대한 연대책임을 가짐.
- 중도매인조합, 소매인조합이 조합원들이 정산조합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산조합이 미지급 결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지지 않고, 중도매인 조합에서 일차적으로 위험을 감당함.

- 개설자가 직접 정산조직의 주주로 참여하는 방식의 주된 이유는 정산조합의 형태로 중도매인만을 구성한 경우, 전문성 부족, 투명성 확보 제한, 관련 법 규정 준용 모니터링, 미결제시 보증 등의 다양한 목적과 이유가 존재하였음.
- 개설자 참여로 인해 중도매인들이 개설자가 책임질 것이라는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여, 일본의 경우 개설자가 참여하는 정산조직은 없음.
- 관리공사가 참여하는 경우는 가락시장 비상장정산조직의 경우를 참조하면, 관리공사가 주주와 경영진으로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 유력함.
- 시장관리에는 매우 효율적이고, 관리공사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방식이겠지만,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도매시장의 경쟁력제고, 도매시장법인간·중도매인간 경쟁력제고에는 한계점이 존재할 것임.
- 금융기관이 경영의 주체·협력의 주체(예를 들어, 주거래은행으로 참여하는 방식)로서 참여하는 형태가 있음.
- 금융기관에서는 도매시장의 큰 거래규모와 지속성으로 인하여 사업 확대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가락시장 비상장정산조합과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시장에 대한 정산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사례가 있음.
- 현재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향후 사업 확대에 참여할 의사가 없고, 다른 금융기관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여 금융기관 참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임.
- 규모가 큰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중도매인이 100% 출자해서 대금정산 조직을 만드는 방식임.
- 다음으로는 참여함으로써 전문성·투명성에 대한 이슈 제기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aT가 주주로서 참여하는 방안임.
- 모든 도매시장의 통합정산조직화에 있어서 aT의 참여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고 aT의 참여여부와 방식에 따라 통합정산조직 구조의 다양화가 가능할 것임.

나. 운영 모델

1) 중도매인 참여 모델

- 대금 지불 의무자끼리 조합을 형성하고, 중도매인이 주인이 되며 판매 장려금, 조합비 등으로 운영비용을 확보하는 방안임.
- 참여, 운영 주체는 중도매인이며, 법적 형태는 조합의 형태로 운영함.
- 운영비용 원천 - 1순위: 판매 장려금; 2순위: 중도매인 조합비; 3순위: 중도매인 정산수수료; 4순위: 도매법인 정산수수료로 예상함.
- 정산서비스 대상은 시장 특성에 따라 1) 중도매인 상장거래 대금만 또는 2) 동일 시장 내 비상장 중도매인 통합정산 (가락시장은 제외)으로 정의함.
- 보증 및 한도부여 - 시장의 특성과 중도매인간 협의에 따라 9개 대안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 대금수취, 대불방식은 '先수취, 後송금 + (결제일에) 미수취시 先대불, 後 수취' 로 운영함.
- 미결제 대불자금원 - 초기엔 정부지원, 판매 장려금 일부로 위험적립금 적립 후 정부지원금을 반환함.
- 개별 중도매인 참여방식 - 1순위: 도매법인별로 구성된 채소, 과일별 중도매인 조합 단위 가입; 2순위: 개별 중도매인 가입함.
- 도매시장법인 약정 - 중도매인 정산대행, 미지급금 보증, 판매 장려금 수취, 재분배 약정함.
- 중도매인 약정 - 중도매인 보증, 한도, 송금대행, 지불대행, 미지급 페널티, 판매 장려금 재분배, 채권 미회수 제재 등이 필요함.

2) 중도매인 + aT 참여 모델

- 중도매인 중심 조합에, 공신력 확보와 전문성 확보위한 aT 참여, 주식회사 방식, 조합단위 가입함.
- 참여, 운영 주체는 중도매인 (60 ~ 70%) · aT (30 ~ 40%)이며, 법적 형태는 주식회사임.

- 운영비용의 원천은 1순위: 판매 장려금, 2순위: 중도매인 조합비, 3순위: 중도매인 정산수수료, 4순위: 도매법인 정산수수료로 예상함.
- 정산서비스 대상은 시장 특성에 따라 1) 중도매인 상장거래 대금만 또는 2) 동일 시장 내 비상장 중도매인 통합정산 (가락시장은 제외)임.
- 보증 및 한도부여는 시장의 특성과 중도매인간 협의에 따라 9개 대안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 대금수취·대불방식은 ‘先수취·後송금 + (결제일에) 미수취시 先대불·後 수취’
- 미결제 대불자금원은 초기엔 정부지원, 판매 장려금 일부로 위험적립금 적립 후 정부지원금을 반환함.
- 개별 중도매인 참여방식은 1순위: 도매법인별로 구성된 채소·과일별 중도매인 조합 단위 가입; 2순위: 개별 중도매인 가입 형태임.
- 도매시장법인 약정은 중도매인 정산대행, 미지급금 보증, 판매 장려금 수취·재분배 약정함.
- 중도매인 약정은 중도매인 보증·한도, 송금대행·지불대행, 미지급 페널티, 판매 장려금 재분배, 채권 미회수 제재 등을 약정함.

3) 중도매인 + 관리공사 참여 모델

- 가락·강서·구리 한정되는 모델로 관리공사 지분율 50%, 비상장 및 출하대금 통합 운용이 예상됨.
- 참여·운영 주체는 중도매인 (50% 지분) · 관리공사 (50% 지분) - (가락비상장 정산 사례가 있어, 관리공사 참여시 지분조정이 제한적임).
- 법적 형태는 주식회사 (관리공사의 자회사 편입, 관리공사에서 오너십을 가짐)
- 운영비용 원천은 1순위: 판매 장려금, 2순위: 중도매인 정산수수료, 3순위: 도매법인 정산수수료로 예상함.
- 정산서비스 대상은 동일 시장 내 판매대금 뿐만 아니라, 비상장 출하대금 및 도매법인 출하대금 통합정산임.
- 보증 및 한도부여는 시장의 특성과 중도매인간 협의에 따라 9개 대안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 대금수취, 대불방식은 '先수취, 後송금 + (결제일에) 미수취시 先대불, 後 수취' 임.
- 미결제 대불자금원은 초기엔 정부지원, 판매 장려금 일부로 위험적립금 적립 후 정부지원금을 반환함.
- 개별 중도매인 참여방식은 도매법인별로 구성된 채소·과일별 중도매인 조합 단위로만 가입 (중도매인 개별 주주 가입 및 관리 불가)
- 도매시장법인 약정은 중도매인 정산대행, 미지급금 보증, 판매 장려금 수취, 재분배 약정을 진행함.
- 중도매인 약정은 중도매인 보증, 한도, 송금대행·지불대행, 미지급 페널티, 판매 장려금 재분배, 채권 미회수 제재 등으로 진행함.

4) 도매시장법인만 참여하는 모델

- 도매시장법인끼리 공동출자, 판매 장려금으로 운영, 상장거래대금만 정산
- 참여, 운영 주체는 도매법인이며, 법적 형태는 주식회사 (조합 방식도 법적으로는 설립 가능하나, 주식회사 방식으로 가야 보다 합리적임)
- 운영비용 원천은 판매 장려금 (다른 재원의 활용은 불가함)이며, 정산서비스 대상은 중도매인 상장거래 대금만 정산 (비상장 중도매인은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의 이슈가 있어 도매법인 수용 불가)
- 보증 및 한도부여는 시장의 특성과 중도매인간 협의에 따라 7개 대안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법인별 특별약정은 없음).
- 대금수취, 대불방식은 '先수취, 後송금 + (결제일에) 미수취시 先대불, 後 수취' 방식임
- 미결제 대불자금원은 초기엔 정부지원, 판매 장려금 일부로 위험적립금 적립 후 정부지원금을 반환
- 도매시장법인 약정은 중도매인 정산대행, 미지급금 보증, 판매 장려금 수취, 재분배 약정함.
- 중도매인 약정은 중도매인 보증, 한도, 송금대행·지불대행, 미지급 페널티, 판매 장려금 재분배, 채권 미회수 제재 등으로 진행함.

5) 도매법인 + aT 참여 모델

- 지방 군소 소재 도매시장의 부족한 역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aT의 시장위탁관리 기능 활용함.
- 참여·운영 주체는 도매법인 (60% ~ 70%) · aT (30% ~ 40%)이며, 법적 형태는 주식회사임.
- 운영비용 원천은 판매 장려금(다른 재원의 활용은 불가함)이며, 정산서비스 대상은 중도매인 상장거래 대금만 정산 (비상장 중도매인은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의 이슈가 있어 도매법인 수용 불가)
- 보증 및 한도부여는 시장의 특성과 중도매인간 협의에 따라 7개 대안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법인별 특별약정은 없음).
- 대금수취·대불방식은 '先수취·後송금 + (결제일에) 미수취시 先대불·後 수취' 방식임.
- 미결제 대불자금원은 초기엔 정부지원, 판매 장려금 일부로 위험적립금 적립 후 정부지원금을 반환함.
- 개별 중도매인 참여방식은 중도매인 참여 없음.
- 도매시장법인 약정은 중도매인 정산대행, 미지급금 보증, 판매 장려금 수취·재분배 약정함.
- 중도매인 약정은 중도매인 보증·한도, 송금대행·지불대행, 미지급 페널티, 판매 장려금 재분배, 채권 미회수 제재 등을 약정함.

6) 도매법인 + 중도매인 참여 모델

- 대금을 받아야 하는 도매법인과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도매인이 통합정산으로 업무효율을 높임
- 참여·운영 주체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조합 (또는 개별 중도매인)
- 법적 형태는 가능하면 조합방식으로 진행함.
- 운영비용 원천은 판매 장려금 (다른 재원의 활용은 불가함)이며, 정산서비스 대상은 중도매인 상장거래 대금만 정산 (비상장 중도매인은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의 이슈가 있어 도매법인 수용 불가)

- 보증 및 한도부여는 시장의 특성과 중도매인간 협의에 따라 7개 대안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법인별 특별약정은 없음).
- 대금수취·대불방식은 ‘先수취·後송금 + (결제일에) 미수취시 先대불·後 수취’
- 미결제 대불자금원은 초기엔 정부지원, 판매 장려금 일부로 위험적립금 적립 후 정부지원금을 반환함.
- 개별 중도매인 참여방식은 개별 중도매인으로 참여 가능하나, 가능하면 중도매인 조합이 조합원으로 참여함.
- 도매시장법인의 약정은 중도매인 정산대행, 미지급금 보증, 판매 장려금 수취·재분배 약정함.
- 중도매인 약정은 중도매인 보증·한도, 송금대행·지불대행, 미지급 페널티, 판매 장려금 재분배, 채권 미회수 제재 등으로 진행함.

7) 중도매인 대주주 + 도매법인 + aT 참여 모델

- 중도매인 중심 정산에서 도매법인은 효율성 제고 차원, aT는 공신력 확보 차원에서 참여함.
- 참여·운영 주체는 중도매인 (60% ~ 70%) · aT (15% ~ 20%) · 도매법인 (15% ~ 20%)
- 법적 형태는 주식회사이며, 운영비용 원천은 판매 장려금(다른 재원의 활용은 불가함)
- 정산서비스 대상은 중도매인 상장거래 대금만 정산(비상장 중도매인은 시장도매인 제 도입 등의 이슈가 있어 도매법인 수용 불가)
- 보증 및 한도부여는 시장의 특성과 중도매인간 협의에 따라 7개 대안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법인별 특별약정은 없음)
- 대금수취·대불방식은 ‘先수취·後송금 + (결제일에) 미수취시 先대불·後 수취’
- 미결제 대불자금원은 초기엔 정부지원, 판매 장려금 일부로 위험적립금 적립 후 정부지원금을 반환함.
- 개별 중도매인 참여방식은 개별 중도매인으로 참여 가능하나, 가능하면 중도매인 조합이 주주로 참여함.

- 도매시장법인 약정은 중도매인 정산대행, 미지급금 보증, 판매 장려금 수취·재분배 약정을 진행함.
- 중도매인 약정은 중도매인 보증·한도, 송금대행·지불대행, 미지급 페널티, 판매 장려금 재분배, 채권 미회수 제재 등으로 진행함.

8) 도매법인 대주주 + 중도매인 + aT 참여 모델

- 도매법인이 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중도매인과 공동 출자, aT는 도매시장 지원 차원에서 참여함.
- 참여·운영 주체는 도매법인 (60% ~ 70%) · 도매법인 (15% ~ 20%) · aT (15% ~ 20%) 형태임.
- 법적 형태는 주식회사이며, 운영비용 원천은 판매 장려금임.
- 정산서비스 대상은 중도매인 상장거래 대금만 정산(비상장 중도매인은 시장도매인 제 도입 등의 이슈가 있어 도매법인 수용 불가)
- 보증 및 한도부여는 시장의 특성과 중도매인간 협의에 따라 7개 대안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법인별 특별약정은 없음).
- 대금수취·대불방식은 '先수취·後송금 + (결제일에) 미수취시 先대불·後 수취'
- 미결제 대불자금원은 초기엔 정부지원, 판매 장려금 일부로 위험적립금 적립 후 정부지원금을 반환함.
- 개별 중도매인 참여방식은 개별 중도매인으로 참여 가능하나, 가능하면 중도매인 조합이 주주로 참여함.
- 도매시장법인 약정은 중도매인 정산대행, 미지급금 보증, 판매 장려금 수취·재분배 약정함.
- 중도매인 약정은 중도매인 보증·한도, 송금대행·지불대행, 미지급 페널티, 판매 장려금 재분배, 채권 미회수 제재 등으로 진행함.

다. 자금 운영 체계

1) 선(先)지불, 후(後)수취 vs. 선(先)수취, 후(後)지불

- 先지급, 後수취 방식

- 정산조직의 운영자금 규모는 가락시장정산(주)과 같이 미리 지불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선(先)지불, 후(後)수취 방식으로 갈 것인지 또는 (사)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과 같이 조합원이 정산조직에 송금한 금액의 범위에서만 지급하는 선(先)수취, 후(後)지불 방식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함.
- 先지급, 後수취하는 방식은 통합정산조직이 해당 거래대금을 미리 지급(지불대행)하고, 중도매인에게 나중에 수취하는 방식이다. 先지급, 後수취하는 경우에는 통합정산조직이 충분한 운전자금이 확보되어야 하고, 중도매인이 즉시 지불대행금을 납부함으로써, 통합정산조직의 자금 소요를 줄여야 함.
- 지불대행금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관리 업무도 추가되어야 하고, 지불대행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수취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자비용을 추가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거래정지까지도 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결제방식임.
- 통합정산조직의 자금소요를 줄이고, 거래를 활성화하기는 차원에서는 3일 이내, 최대 7일 이내에 해당 대금을 회수하는 게 적절한 방식이며, 선지급, 후수취로 인한 일반적인 위험과 비용과다 발생 이외에도 막대한 자금이 소규모 조직에서 관리됨으로 인한 위험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先지급, 後수취방식은 '중도매인 → 도매시장법인' 정산에는 적용이 불가능함.
- 중도매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결제자금을 통합정산조직이 미리 지급해주기 때문에 며칠 동안의 자금흐름에의 여유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담보, 보증금 대비 100% 또는 약간 초과된 비율 만큼만의 거래한도에 묶여있고, 중도매인이 지불대행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부도 처리된 경우, 그 위험성을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先수취, 後지불 방식에 비해 중도매인에게 유리한 구조라고 할 수 없음.

- 先수취, 後지불 방식

- 先수취, 後지불하는 방식은 중도매인이 해당 거래대금을 통합정산조직에 입금하여야만 통합정산조직에서 해당 거래대금을 도매시장법인에 송금하는 방식임.

- 마감일에도 해당 거래대금이 통합정산조직에 입금되지 않는다면, 통합정산조직이 해당 거래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중도매인에게 나중에 수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先지급·後수취 방식이 일부 병행되어 운영되는 방식임.
- 先지급·後수취방식보다는 위험도 적고, 관리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매인의 입장에서는 통합정산조직에 보증금·한도를 모두 설정했고, 일부 위험기금도 적립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결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정산·결제방식보다 개선된 체감하지 못할 수 있음.
- 판매대금 정산조직의 대불 방식은 <그림 4-1>과 같이 보증금 이하 도는 약정 한도 이하로 중도매인 미지불 시 대납하는 先수취·後지불 방식이 적절함.

<그림 4-4> 통합정산조직 대불 방식 검토 결과

수취·송금 선후관계	대불 방식			
	대불 안함	보증금 이하	약정 한도 이하	완전 대불
先지불·後수취	X	0	0	△
수취 후 송금 (미지불 시 대납)	X	권고안 0	비상장 (가락시장정산) 방식	△
			시장도매인 정산 방식	△
수취 후 송금 (미지불시 대불 없음)	0	X	X	X

결제자금 소요	필요없음	중도매인 미결제시 단기 결제 자금 (약 480억원)	기존 장기미수금 (약 850억원)	약 2,200억원 의 자금흐름 필요
		한도·보증금 차액 (약 900억원)		

※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7), 농산물도매시장 통합정산조직 설립방안

2) 보증금·담보 설정과 거래한도 부여 방식

-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잡하고 위험관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은 보증금·담보설정과 거래한도 부여방식(거래한도의 비율과 성수기한도 관리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도매시장법인들은 일반적으로 보증금과 담보대비 100%를 일괄 부여한 후, 130% ~ 150%까지는 중도매인의 신용도에 따라 임의부여하고 있으며, 신용도가 높거나, 일부 거래량이 많은 중도매인에게는 300% 이상의 거래한도도 허용함.
- 이는 몇 십 년 동안의 거래관계로부터 형성된 경험과 신용도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음에 반해, 통합정산조직은 이제 막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관계를 바로 형성할 수도 경험과 지혜도 확보하기 불가능함.
- 현재로서는 다양한 거래 자료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단정적인 확인이 어려우나, 시장별로 몇 년간의 거래 데이터만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중도매인별, 품목별, 시즌별로 보증금, 담보를 어느 정도 책정하고, 그러한 담보물 대비 몇 배의 거래한도 부여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것이 가능함.
- 일단은 통합정산조직도 부도, 부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100%를 일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하며, 장기적으로는 객관적이고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중도매인별, 품목별, 시즌별로 보증금, 담보금액과 거래한도 부여 비율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함.

3) 적정 자금 규모

- 적정 자금 규모는 통합정산조직의 자금규모로서 1) 자본금, 출자금⁴⁾ 규모, 2) 운전자금 규모, 3) 위험적립금 규모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자본금 또는 출자금만으로 모든 자금 (초기 설립비용, 위험충당용 기금, 미결제시 지불대행금 등) 소요를 확보하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출자금 규모의 책정은 시장의 규모, 출자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함.
- 통합정산조직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 소요의 추정은 그 중요성 만큼 복잡한 금융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으로, 최소한 3년 동안의 해당 도매시장 내 모든 도매시장법인의 거래내역을 일자별, 중도매인별로 분석하는 것이 요구됨.
- 일별 거래금액의 차이가 크고 명절 등의 특수 상황과 성수기, 품목별 성수기, 중도매인 고객별 특성에 따른 성수기 등에 따른 거래금액의 차이가 다양할 것임.
- 이 밖에도 작황에 따른 품목별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한 거래금액도 몇 배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으며, 마감일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마감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예측과 분석도 매우 중요함.

4) 회사방식으로 가는 경우에는 자본금, 조합방식으로 가는 경우에는 출자금

- 향후 통합정산조직에서 모든 미지급 위험 상황을 책임지기 위해 필요한 위험기금 적립금의 규모 산정도 중요한 요소임.

4) 지불대행 수수료·미지급 페널티

- 지불대행에 따른 수수료와 약정된 지불대행 지급 마감일까지 중도매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페널티 (즉, 이자비용과 거래상의 불이익 - 거래정지 등)를 부여할 것 인지에 대한 결정도 필요함.
- 지불대행은 도매시장법인 마감 약정일에 중도매인이 판매대금을 통합정산조직에 입금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통합정산조직이 중도매인의 보증범위 내에서 미리 지불대행하고 중도매인에게 대신 지불한 금액을 청구하고 수취하는 행위임.
- 중도매인에게 사전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만 하고, 일정기일 이내에 해당금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경고를 하거나 그 금액이 매우 크고 장기 연체하는 경우 거래 정지가 가능해야 함.

5) 판매 장려금

- 판매 장려금은 개설자의 조례에 임의규정⁵⁾으로 규정되어 있고 도매시장법인이 일부 자의적·임의적으로 마감일에 완납한 중도매인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도매시장법인은 그 비율을 품목별·중도매인별로 차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들이 통합정산조직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고 이러한 비용발생을 이유로 통합정산조직의 설립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매인이 마감일에 결제를 하지 못하여 미수취된 판매 장려금의 일부를 운영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가장 쉬운 접근 방안임.

6) 정산조직 설립 이전의 미수금

- 통합정산조직 설립 이전에 형성된 미수금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개별 거래로 발생된 것이기에 통합정산조직에서 이관 받는 것은 법적·회계적 불가능함.

5)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6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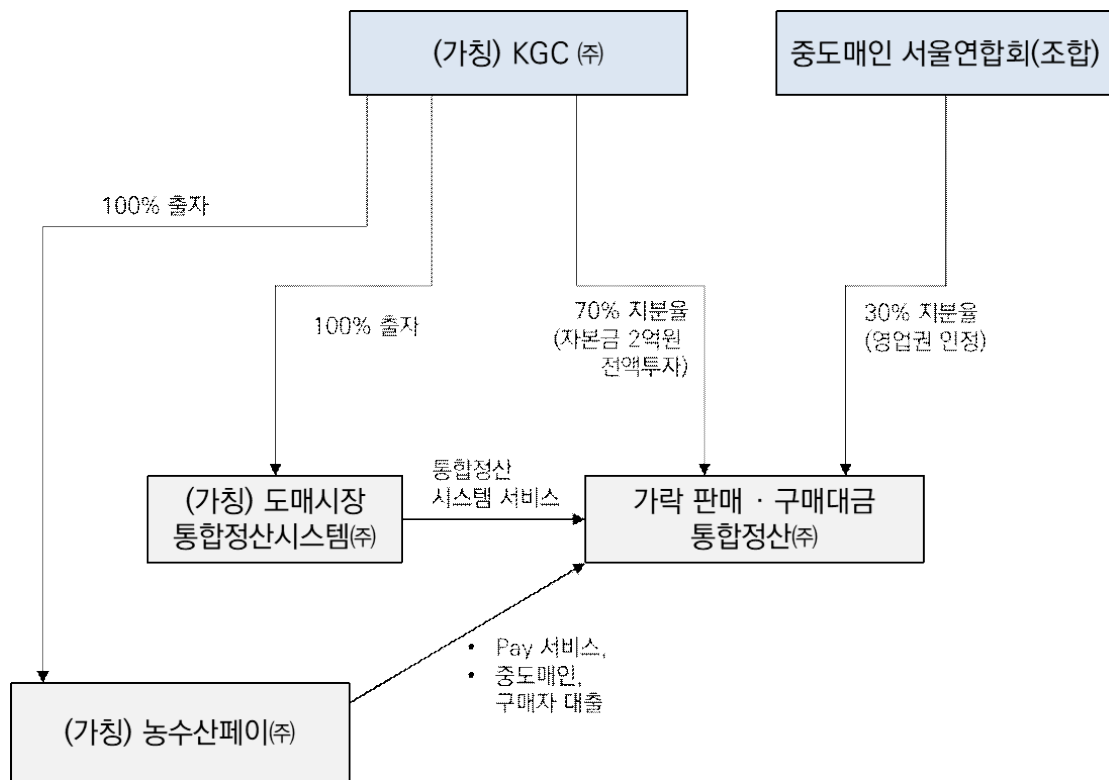
- 정산조직이 설립되면 도매법인이 중도매인으로부터 확보한 보증과 담보를 통합정산조직에 넘기는 시점에서 미수금이 남아 있을 경우, 특히 악성미수금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통합정산조직으로 이관하기는 불가능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정리를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함.

5. 통합정산조직 수익·비용 구조

가. 운영모델

- 지주회사(가칭 KGC(주))를 설립하고, 지주회사에서 (가칭) 가락 판매·구매대금 통합정산(주)을 70% 지분 출자(2억 원), 중도매인 서울연합회에서 무자본금 납입하고 영업권으로 30%로 지분을 확보함.

〈그림 4-5〉 통합정산조직 운영 모델(안)



※ 본 연구용역팀 작성

- 지주회사에서 100% 출자를 통한 도매시장통합정산시스템(주)을 설립하고 이 회사에서 정산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서비스를 제공함
- 지주회사에서 100% 출자한 (가칭) 농수산 페이(주)에서 통합정산(주)에 Pay 서비스와 중도매인 구매자 금융서비스를 금융기관과 결합하여 제공함
- 도매시장통합정산시스템(주)은 향후 농수산물 도매거래 플랫폼 사업자로 포지셔닝함.

나. 수익·비용 구조

- 앞에서 기술한 모든 사업을 상정하여 수익과 비용 구조를 정의함.

[표 4-3] 통합정산조직 수익·비용 구조

단계	비용	수익
설립 준비 단계	사업기획 및 문건작성 비용 이해관계자 미팅·협의 비용 법·제도 신규 제정 및 정비를 위한 협의·기획 비용 법인 설립·등록비용	-
설립 후 인프라 구축 단계	통합정산회사 인원채용 비용 통합정산시스템 설계 및 구축, 장비 구매 비용 농수산페이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장비 구매 비용 공영도매시장 도매거래 및 금융플랫폼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장비 구매비용 사무실 확보, PC·가구 도입 비용 업무프로세스 설계, 매뉴얼 작성 비용 - 통합정산(주) - 통합정산시스템(주) - 농수산페이(주)	-
운영 단계	인건비, 관관비 정보시스템 운영비 대손(채권 미회수 상정) 수수료 확보 및 지급	정산수수료(정산회사) 정산시스템 사용료(정산시스템(주)) 농수산페이 수수료 농산물 거래 수수료 금융서비스 수수료

다. 재무 추정

- 본 재무추정은 통합정산사업의 구조가 미확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추정에 불과함.

1) 계열사 간 수익·비용 구조

- 가락통합정산(주)는 사업주체 70%, 중도매인 30% 지분구조이면서 공적인 영역이므로 이윤을 남겨서는 안되고, 비용을 충당하는 정도의 수익을 확보함이 적절함.
 - 연간 25억 원의 정산수수료 확보시 손익분기점은 도달 예상됨.
 - 0.8%의 농수산물페이 수수료 확보시 가락시장에서만 최대 1,000억 원의 수수료 수입이 예상되지만, 이 금액을 모두 수취할 수는 없음.
 - 가락시장의 정서 및 통합정산회사 설립 취지 상 중도매인 정산수수료 22.8억 원, 도매법인 연간 72억 원의 합인 연간 95억 원이 최대 확보 가능한 금액임.

항목	가락통합정산(주)	농수산물페이(주)
원칙 (대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락통합정산(주)는 공적인 영역으로 이익을 남겨서는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점유율 확대, 거래규모 확보 차원으로 접근하고 최소의 수수료를 부과함 (가락시장에서만 약 12조원의 거래 규모 = 구매자 6조원, 중도매인 4.5조원, 도매법인 4.4조원 지급함)
수익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안법 시행규칙 제39조 8항에 의거 - 정를 계산시 연간 최대 440억원 (구매대금 + 판매대금 통합) • 연간 25억원의 정산수수료 징수 - 중도매인 부담 시: 중도매인 인당 월 9만8천원 (= 25억원 ÷ 2,125명 ÷ 12개월) - 도매법인 부담 시: 도매법인 당 (= 도매법인 당 연간 4.2억원) 	<p>가락시장 내 (이론적으로 가능한수치로, 향후 상당한조정 요구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최대 610억원의 매출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 중도매인 → 도매법인: 360억원 (= 4.5조원 × 0.8%) • 구매자 → 중도매인 : 0% • 도매법인 → 출하자 : 250억원 (= 4.4조원 × 70% × 0.8%) (개인, 소규모 조합, 중소기업까지는 면제: 약 30% 면제) ※ 상기 금액의 일부는 은행, 카드회사의 수수료 등으로 지급됨 <p>타 영역에서의 수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도매시장 농수산물페이 • 농수축산물 거래 - 농협, 수협, 축협, 하나로마트 등 <p>농수산물 온라인 거래, 온라인 경매, 학교급식(aT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적용 가능함</p>
비용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정산시스템 및 중도매인 영업관리시스템 구축 : 구축비용 30억원, 연간 운영비 4억원 • 인건비: 연간 약 8억원 • 대관, 중도매인, 구매자 지원: 연간 약 5억원 <p>= 연간 23억원의 비용 발생 (정보시스템 감가상각 연간 6억원 + 인건비 등 연간 17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페이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금융권 연계 등을 위한 제반 투지 - 정보시스템 구축 (거래 대상과 서비스 확대에 비례한 구축비용) - 홍보·마케팅 비용

2) 이해관계자별 역할·수익 구조

- 중도매인의 외상거래 기회비용은 연간 약 1,200억 원으로 추정되고, 도매법인의 비용절감효과는 연간 120억 원으로 추정됨
- 구매자의 미결제 대금을 모두 정산회사를 통해 구매자에게 대출하거나 중도매인 채권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대신 판매대금 결제 준비자금은 400억 원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홍보 및 위험기금 확보 차원에서 300억 원의 지불대행금은 정산회사가 운영함이 적절함.

항목	초기 투자	운영비	수익
중앙·지방 정부	• 복수거래플랫폼 구축 (약 35억원)	• 복수거래플랫폼 운영 (연간 5억원)	• 없음
	• 소상공인 정책자금 무상 또는 융자 (약 250억원)	• 없음	• 없음
	• 판매대금 결제 준비자금 (400억원)		
도매법인	• 없음	• 없음 • 정산수수료 지급 (농수산페이 수수료 지급)	• 대손충당금 이익전환: 32억원 + 외상미수금 처리: 850억원 / 5% 이자율 적용 = 연간 42억원의 이자 수입 효과 + 경매·정산시스템 운영비 감소 - 법인당 연간 약 5억원 (30억원) + 보증금·한도·정산업무 감소: 법인당 연간 5억원 + 대손 감소: 연간 24억원 = 연간 12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
중도매인		• 가락통합정산(주) 정산수수료 지급 (인당 월 9만 8천원)	• 영업관리시스템 무상 사용 • 외상거래 기회비용 약 1,210억원 (외상 거래 금액인 2.7조원의 4.5%)
가락통합 정산(주)	• 정보시스템 구축 (30억원) • 정부에서 제공한 중도매인 지불대행 예비자금 (400억원)	• 정보시스템 운영 + 정산징수, 관리 인력 (8명) + 중도매인 지원, 대관 = 연간 12억원	• 정산수수료: 연간 25억원 (중도매인 1인당 월 9만 8천원) (이익 = 연간 2억원 - 예비비 성격, 전액 중도매인 위해 투자)
농수산페이(주)	• 정보시스템 구축 • 상장예외, 시장도매인 정산시스템 구축 (선점 차원에서 - 약 15억원)	• 대관·홍보·마케팅 • 은행, 카드 연계 파트너십 체결	• 농수산페이 거래 수수료 • 추가 사업 수익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통합 거래 체결 서비스 등

3) (간략한) 손익 계산 추정

- 2022 ~ 2033년 동안의 비용·수익 분석 결과 경상이익은 약 360억 원, 내부 수익률은 약 48%로 추정됨.

(단위: 백만 원)

항 목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투자 · 비용	자본금 납입 - 정산회사(주)	200	200											
	자본금 및 시스템 투자 - 정산시스템(주)	4,500	3,500				500				500			
	농수산페이(주) - 설립, 시스템 투자	2,000	2,000											
	대관업무, 인원확보, 자료 작성 등	2,700	5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인건비	9,6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정보시스템 운영비	4,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금융기관 수수료 분담, 협력업체 분담 (정산수수료의 50% 상정)	26,125		2,375	2,375	2,375	2,375	2,375	2,375	2,375	2,375	2,375	2,375	2,375
	투자 · 비용 합계	49,525	7,000	3,775	3,775	3,775	4,275	3,775	3,775	3,775	4,275	3,775	3,775	3,775
수익	정산수수료(정산회사, 정산시스템 및 농수산페이 합계) 수익 (연간 95억 원의 50%만 가정)	52,250		4,750	4,750	4,750	4,750	4,750	4,750	4,750	4,750	4,750	4,750	4,750
	농수산거래, 금융거래 플랫폼 수입	22,237		1,200	1,320	1,452	1,597	1,757	1,933	2,126	2,338	2,572	2,830	3,112
	금융이자 수입 배분 (20% 확보 가정)	11,13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수익합계	85,619		6,962	7,082	7,214	7,359	7,519	7,695	7,888	8,100	8,334	8,592	8,874
이익 (계열사 통합 이익)	36,094	-7,000	3,187	3,307	3,439	3,084	3,744	3,920	4,113	3,825	4,559	4,817	5,099	

V. 통합정산조직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1. 정보시스템 비전·전략

가. 농산물 도매시장 정보화 현황

1) 주요 정보생산 주체

-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요 정보생산자는 출하자, 중도매인, 도매법인, 개설자, 하역조직, 농식품부, aT로 구분할 수 있음.
- 개설자는 시장 내 유통인 허가, 행정처분, 임대, 시장사용료 등 징수, 시장관리·지침과 관련한 정보를 생산함.
- 출하자는 송품장 - 상품정보(품명 / 수량 / 포장), 출하시장, 출하일, 산지, 출하자, 배송기사, 계좌정보를 생성함.
-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정가수의 농산물 등록 - 상품정보, 출하일, 산지, 출하자, 판매원표: 상품정보, 산지, 출하자, 출하일, 수량 및 가격, 경매·정가수의 내역, 구매한 중도매인, 출하대금, 판매대금 정산 관련 정보를 생산함.
- 중도매인은 구매 내역, 판매내역, 거래대금 관리, 개설자 자료 요청 등과 관련한 정보를 생산함.
- 하역노조의 경우 시장 내 물류비용, 구매자는 구매 내역, 농식품부와 aT는 각종 지침, 자료요청, 개설자·도매법인 평가 자료를 생산함.

2) 주요 정보생산 주체별 정보시스템 현황

- 도매법인의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은 [표 5-1]과 같으며, 각 항목별 빈칸은 조사에 응답하지 않아 구축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임.
- 도매법인 정보시스템 현황을 통하여 판매대금 통합정산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 '실적관리', '거래알선', '계약체결', '지불/정산', '부정/허위', '분쟁조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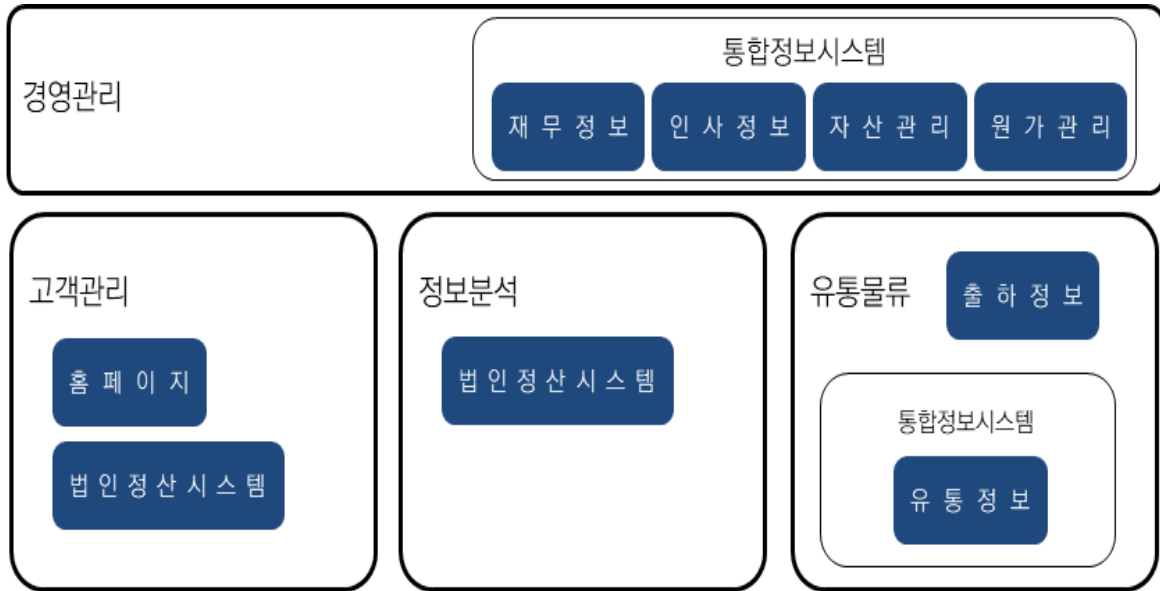
[표 5-4] 도매법인 정보시스템 현황 요약

도매시장	도매법인	거래시스템적용 범위					
		실적관리	거래알선	계약체결	지불/정산	부정/허위	분쟁조정
서울가락	서울청과		●		●		
	대아청과			●			
	한국청과	●	●				
	동부팜청과		●		●	●	
	중앙청과						
	농협가락						
서울강서	농협강서	●			●		
	서부청과	●			●	●	
	강서청과	●		●	●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4), 정가수의매매 예약거래시스템 ISP 재구성

- <그림 5-1>은 민간 도매법인의 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구조이며, 경영관리와 고객 관리, 정보 분석, 유통물류로 구성되어 있음.
- 경영관리 기능의 경우 '재무정보', '인사정보', '자산관리', '원가관리'를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였음.
- 고객관리는 홈페이지와 법인정산시스템이 주요 구성 기능으로 확인됨.
- 정보 분석은 법인정산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유통물류는 출하정보와 유통정보 분석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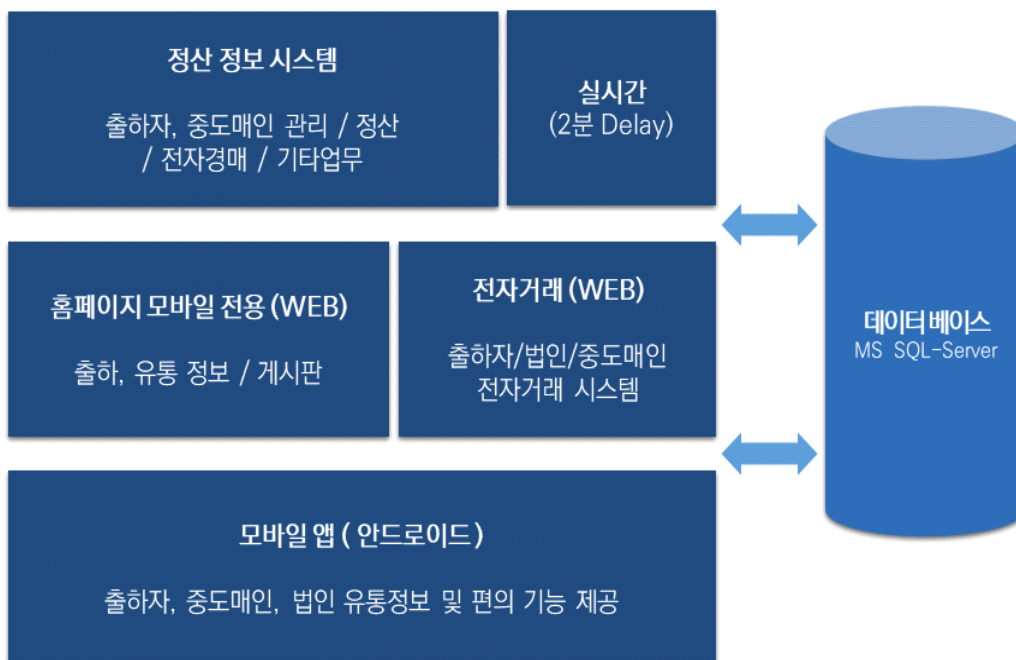
〈그림 5-1〉 도매법인 정보시스템 기능 구성 사례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4), 정가수의매매 예약거래시스템 ISP

- 〈그림 5-2〉는 도매법인의 주요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연계 현황의 예시이며, 정산 정보 시스템, 웹 기반의 홈페이지와 전자거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각각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5-2〉 도매법인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연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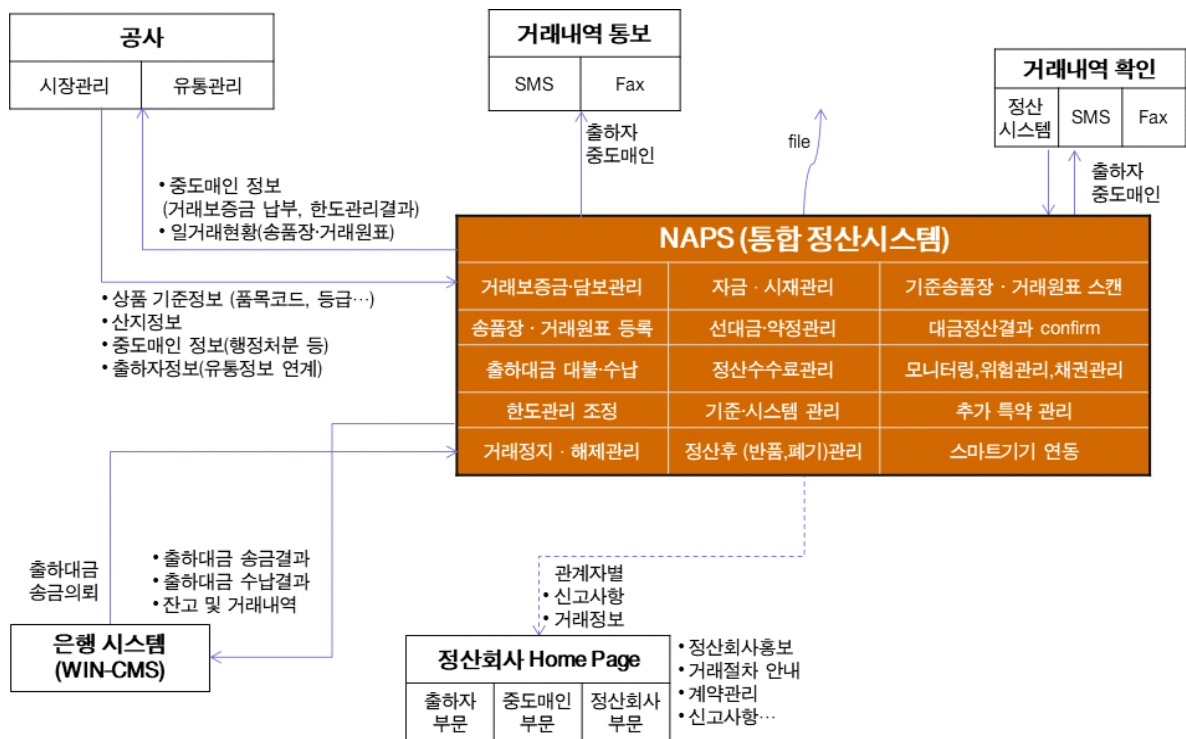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4), 정가수의매매 예약거래시스템 ISP

3) 정산조직 정보시스템 현황

- 가락시장정산(주)의 정산시스템

- 가락시장 비상장정산시스템(Non-onboarding Agro-fisheries products Payments Systems, NAPS) <그림 5-3>과 같으며,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의 시장관리·유통관리시스템과 상품기준정보, 중도매인정보, 출하자 정보를 동기화함.
- 출하대금 송금의뢰, 출하대금 송금결과, 지불대행금 수납결과, 중도매인의 잔고확인을 위해 우리은행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음.
- 시스템 개발기간이 짧았고,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와 우리은행 모두 정산회사의 빠른 운영을 필요로 하여, 2단계에 걸쳐 개발이 진행되었음.
- 단계에서는 정산회사의 핵심 기능 위주로 개발하였고, 2단계는 부가가치 서비스 위주로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그림 5-3> 도매법인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연계 사례



※ 출처 : 가락시장정산(주) BPR/ISP 보고서 (2014)

• 강서시장 정산시스템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정산시스템은 가락시장 비상장정산시스템 구축 경험이 기반이 되었으며, 시간적 여유도 존재하여 시스템 구축에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됨.
- 장도매인 정산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림 5-4>, <그림 5-5>과 같이 시장도매인 중심의 편의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임.
- 통합 정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주요 이슈로 52개의 시장도매인 허가사업자가 존재하며, 영등포 후적지에서 옮겨올 때 시장도매인 당 다수의 공동 대표가 있어, 이들이 개별적으로 정산대금을 관리하기 위해 동일한 시장도매인 점포 하에서도 여러 명이 개별적인 정산통장과 정산조합의 개별 계좌를 가질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음.

<그림 5-4>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정산시스템 기능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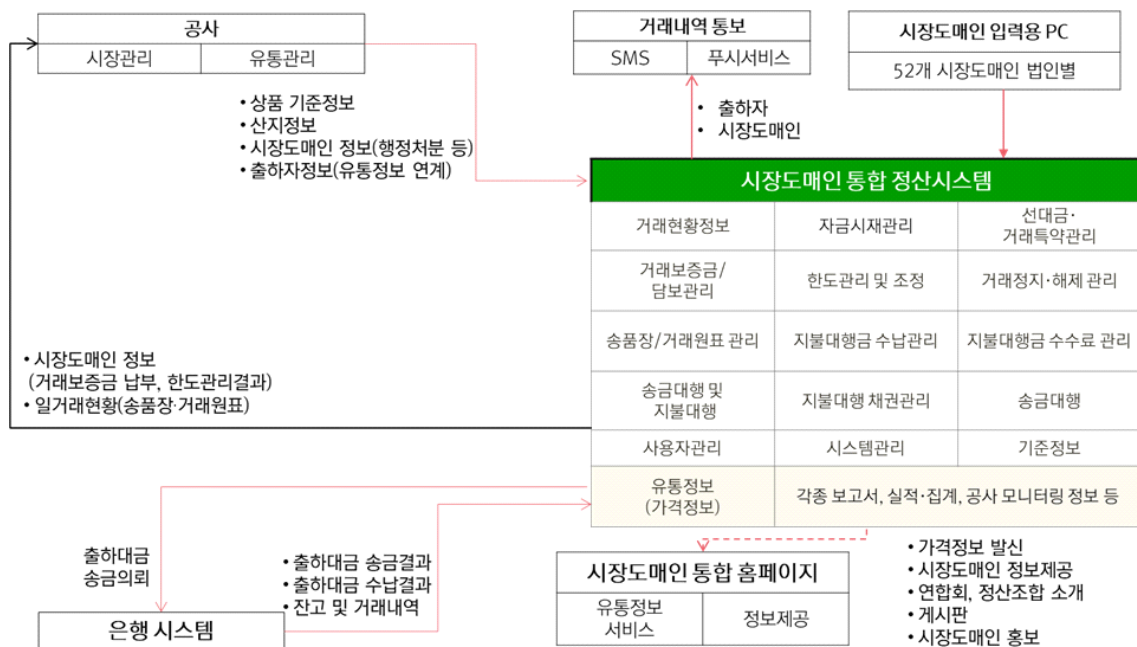
<p>I. 기준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도매인정보 · 출하주정보 · 시장도매인별출하주 <p>I. 거래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보증금관리 ♣ 한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관리 기준등록 · 시장도매인별 한도관리 · 지불대행금 수납현황 · 잔여거래한도 산정 · 추가한도관리 ♣ 특약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특약관리 · 거래특약등록 ♣ 선대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대금등록 	<p>II. 송품장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 등록/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등록 · 미승인송품장 조회 · 송품장조회 ♣ 거래원표 등록/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원표 등록 · 미판매조회 · 지급확인 · 미입력단가 조회 · 판매조회 ♣ 승인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정승인 · 정정내역 · 정정요청 - 송품장 정정 · 정정요청 - 판매원표 정정 ♣ 조정송품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송품장 	<p>III. 정산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하대금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감 ♣ 지불대행금 채권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불대행금 상세내역 ♣ (결제내역) 체크카드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카드 승인내역 · 체크카드 매입내역 	<p>IV. 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산서 · 시장도매인별 공제내역 · 송품장별 품목별 거래실적 · 시장도매인별 총 거래실적 · 시장도매인별 출하자별 총 거래실적 · 출하자별 품목별 거래실적 · 출하자별 품목별 월별 거래실적 · 판매마감 별 월별 송품장 등록 건수 및 거래실적 현황 · 거래방법별실적 · 파렛트 출하실적 · 판매원표 · 평가자료 조회 <p>V. 게시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지사항 · Q&A · Q&A 등록 · 자료실
--	---	---	--

※ 출처 : 시장도매인정산조합 사용자교육 자료 (2016)

- 또한, 시장도매인에 출하된 농산물은 출하자명은 한 명이지만, 실제로 출하대금을 나눠 가져야 할 출하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 시장도매인 사무장이 개별적으로 송금하려면 기존에는 항상 인터넷 बैं킹에 들어가서 각각의 계좌번호를 반복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함.

- 정산시스템 구축 시 이러한 한 개의 농산물에 여러 명이 출하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 출하자별 거래 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기를 진행하여 마우스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송금 내역을 선정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현함.
- 또한, 시장도매인의 가격 투명성에 대한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루에 세 번씩 정기적으로 위탁판매·매수한 농산물의 가격을 홈페이지 (<http://www.jeong-san.com/>)를 통해 공개함.

〈그림 5-5〉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정산시스템 연계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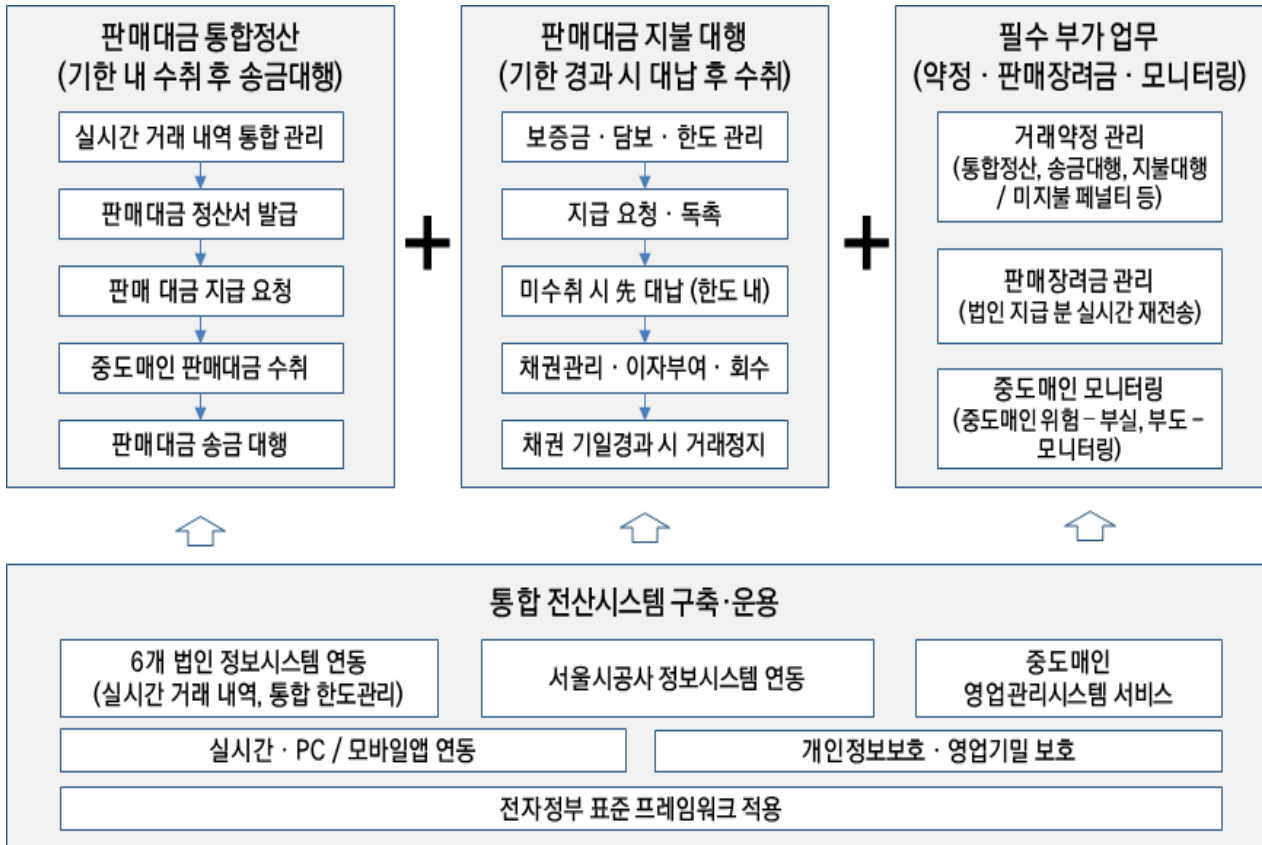
※ 출처 : 시장도매인정산조합 BPR/ISP 보고서 (2016)

나. 판매대금 통합정산시스템 개요

1) 업무 범위·정보화 대상

- 판매대금 통합정산시스템의 주요 서비스 범위로는 〈그림 5-6〉과 같이 크게 판매대금 통합정산, 판매대금 지불대행, 필수 부가 업무, 통합 정산시스템 구축·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판매대금 통합정산은 실시간 거래 내역 통합관리에서 부터 판매 대금 송금 대행까지 원활하고 차질 없이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함.

〈그림 5-6〉 판매대금 통합정산시스템 서비스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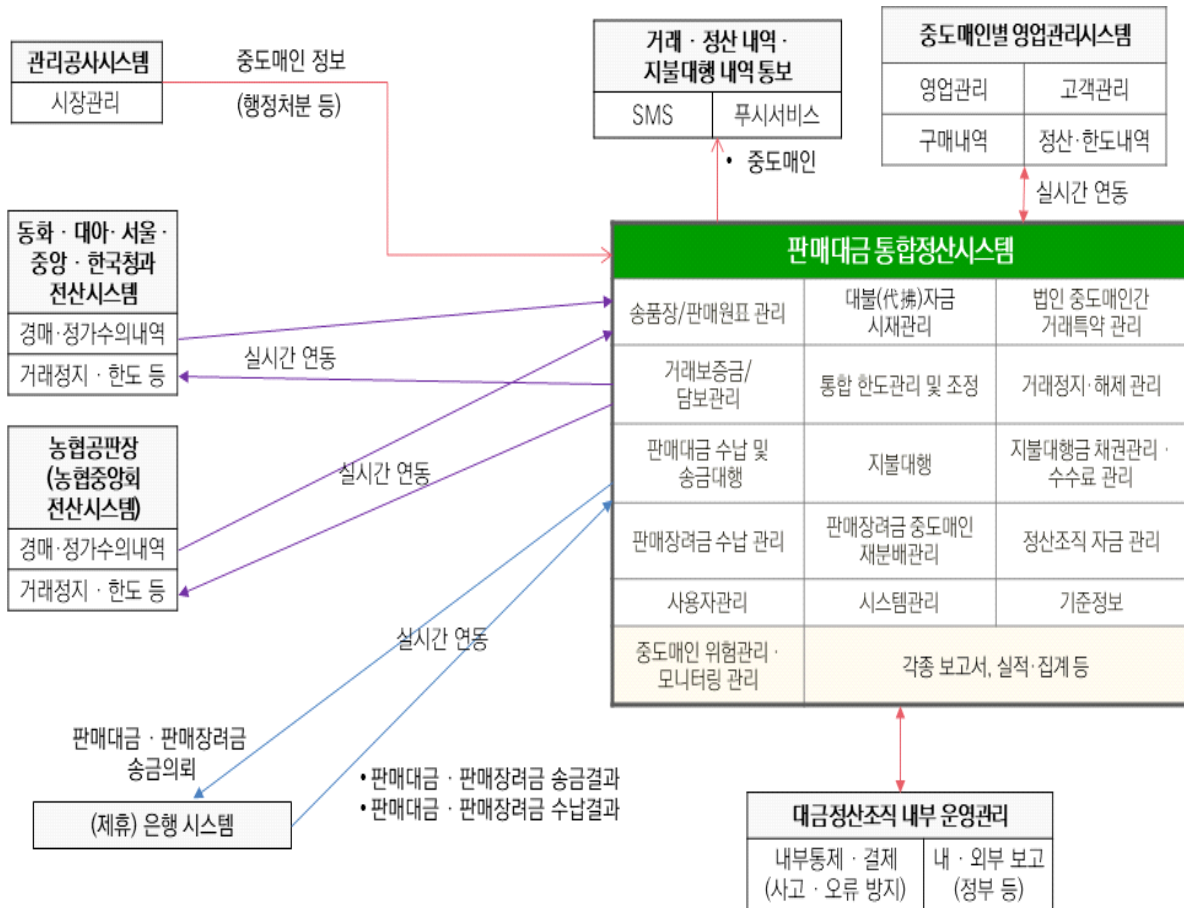
※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7), 농산물도매시장 통합정산조직 설립방안

- 판매대금 지불 대행은 보증금·담보·한도 관리를 비롯하여, 지급 요청 및 독촉, 미수취 시 선대납, 채권관리 등의 업무 지원이 가능해야 함.
- 필수 부가 업무로는 거래약정 관리와, 판매 장려금 관리, 중도매인 모니터링 기능이 포함되어야 함.
- 판매대금 통합정산, 판매대금 지불 대행, 필수 부가 업무는 모두 통합 전산시스템과 연계·운영되어야 하며, 통합 전산시스템은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하에 실시간성과 PC/모바일앱 연동을 비롯하여 주요 법인들의 정보시스템 연동, 서울시공사 정보시스템 연동, 중도매인 영업 관리시스템 서비스화 모두를 포함.

2) 업무 자동화·전산화 대상

- 다음 <그림 5-12>는 판매대금 통합정산시스템 구성(안)으로 통합정산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면, 정산시스템과 도매시장법인과 실시간 데이터 연동을 위한 시스템 연계 작업이 필수적임.

<그림 5-7> 판매대금 통합정산시스템 구성(안)



※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7), 농산물도매시장 통합정산조직 설립방안

- 보증금 관리·담보·한도관리도 전산시스템의 도움을 받거나 전산시스템이 계산한 것을 그대로 약정으로 반영하거나 중도매인에게 제공하게 되며 채권관리·이자계산하는 부분은 전산시스템의 도움 없이는 계산이 불가능함.
- 전산화가 불가능한 부분인 지급요청·독촉 부분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요청 대상과 요청 일시가 결정되어야 하며, 거래약정도 모두 시스템으로 체결할 수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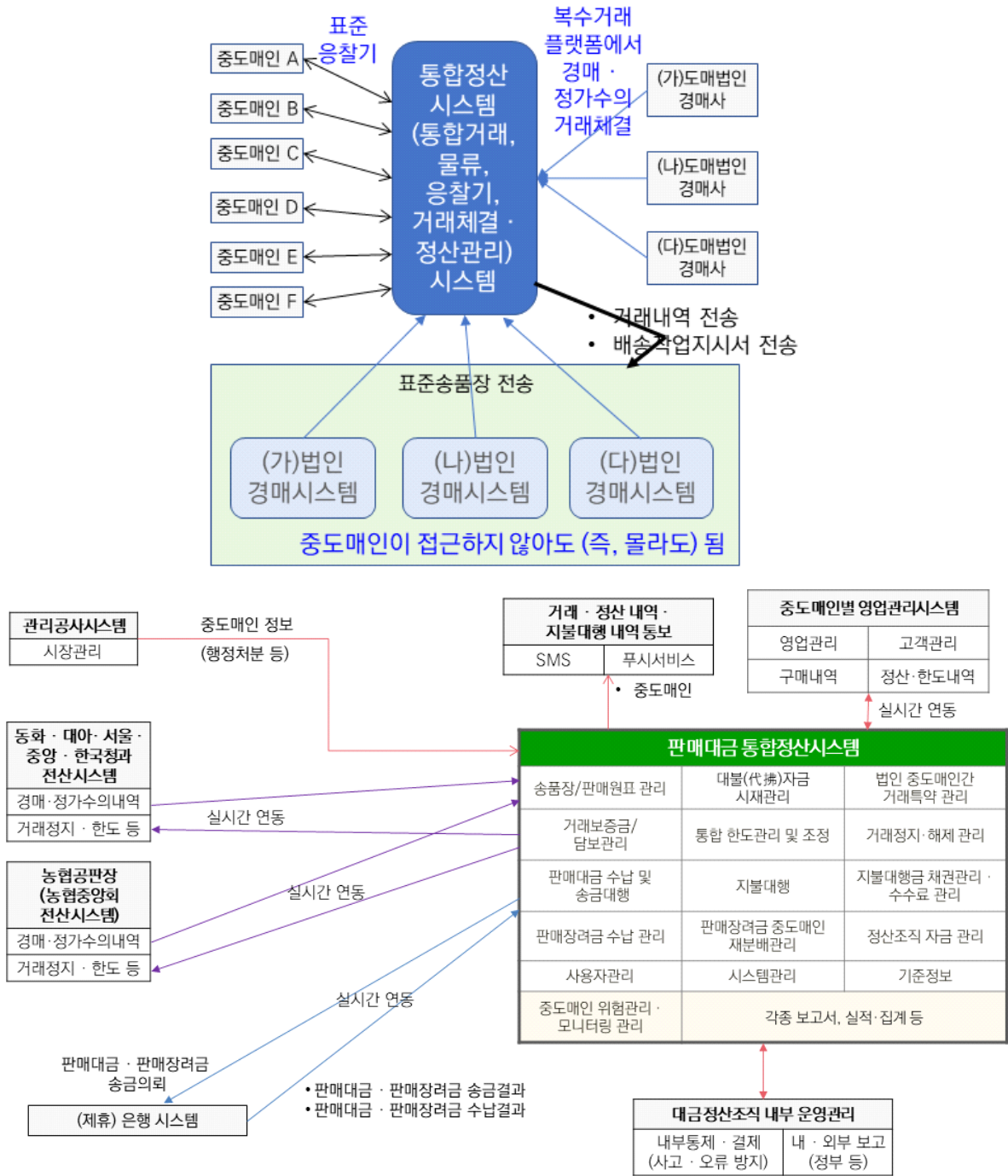
- 중도매인 모니터링은 통계적 처리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축적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중도매인의 위험 정도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전산시스템을 통합정산조직이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식품부와 aT에서 해당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지 않으면 통합정산조직은 설립과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2. 판매대금 통합정산시스템

가. 판매대금 통합정산시스템 주요 구성

- 통합정산조직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인프라는 통합전산시스템이며, 거래 규모를 고려하여 단순하고 사소한 오류도 발생하는 것이 허용 불가능하며, 실시간으로 모든 도매시장법인의 거래내역과 동기화가 가능해야 함.
- 관리공사의 전산시스템과 실시간 동기화가 필요하며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보호를 위해 높은 수준의 정보화 보안 체계도 적용되어야 함.
- 중도매인 영업 관리시스템은 판매대금 통합정산시스템 차원에서 필수적인 기능은 아니지만, 정산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중도매인에게 거래내역, 정산 예정 금액, 한도 등을 실시간 안내하고 편의기능 제공을 위해 필요함.
- 모든 시스템의 기능들이 실시간으로 PC와 스마트기기와의 연동은 당연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통합정산시스템 사용과 관련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높은 안정성과 사용 용이성도 확보 되어야 함.

〈그림 5-8〉 판매대금 통합정산시스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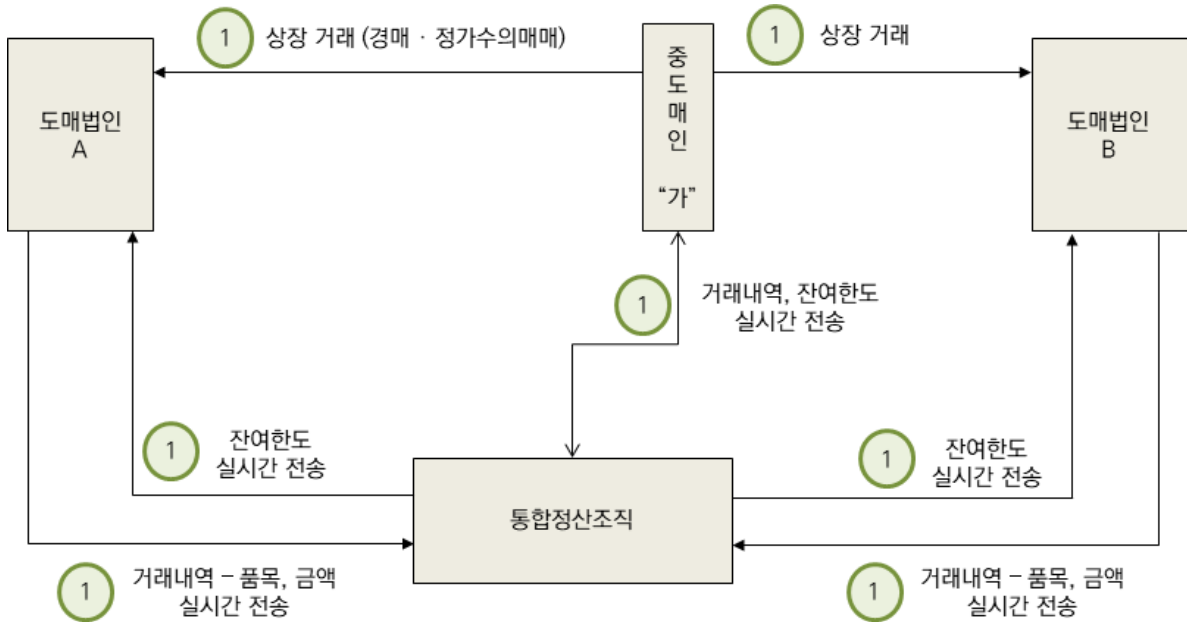
※ 출처: 본 연구용역팀 작성

나. 판매대금 통합정산시스템 활용 프로세스

1) 거래내역 관리 프로세스

- 경매 · 정가수의거래 내역과 잔여한도 정보를 도매법인 · 중도매인 · 정산조직 간 실시간 전송함.
- 거래내역 관리 프로세스에서 통합정산조직은 통합정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거래내역, 잔여한도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 관리할 수 있음.

〈그림 5-9〉 거래내역 관리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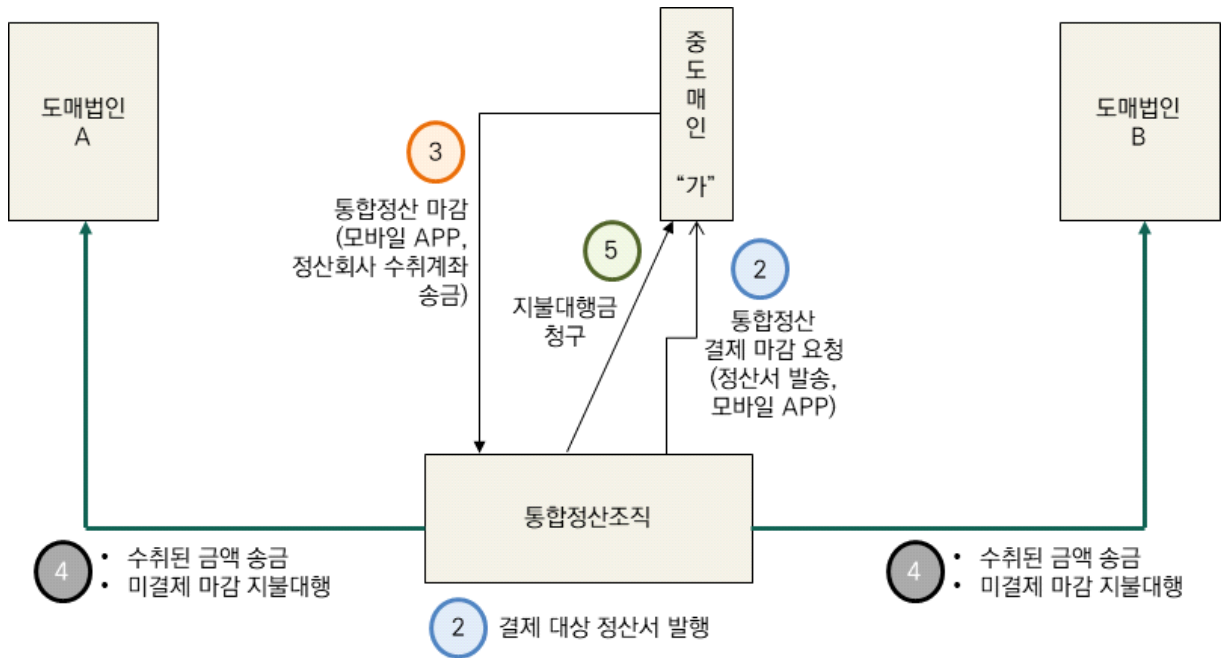


※ 출처: 본 연구용역팀 작성

2) 결제 및 대불 프로세스

- 결제 및 대불과 관련한 프로세스는 '정산서 발행(정산조직) → 대금송금(중도매인) → 수취분 송금·미결제분 지불대행(정산조직)' 으로 확인됨.

〈그림 5-10〉 결제 및 대불 프로세스



※ 출처: 본 연구용역팀 작성

3. 유통정보 분석·핀테크 서비스

가. 유통정보 분석 시스템

1) 유통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필요성

- 신속한 정부 정책 전파·홍보·공유 신기술 적용 - 모바일, 초연결시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적용을 통한 주요 문제점 해결 전략이 필요함.
- 통합 클라우드 환경 구축을 통한 출하자·중도매인 정보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함.
- 단순 경험 기반의 추정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토론·의사결정을 위한 실용분석·빅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이 필요함.

〈그림 5-11〉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필요성



※ 출처: 본 연구용역팀 작성

- 절대 다수이자 약자인 출하자·중도매인의 정보시스템 향상으로 도매시장 정보수집·활용과 관련한 급격한 발전이 가능함.
- 새로운 정책, 지원사업의 전파·시행이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이 가능하며, 도매시장의 경쟁력과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됨.
- 장소 제약 없이 신뢰성 높은 원 데이터 및 분석 서비스에 접근함으로써 데이터·팩트(Fact) 기반의 토론과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 주먹구구식 의사결정이 감소함.

2) 클라우드 컴퓨팅

- 개개인이 보유하고 운영하던 컴퓨팅 자원(데이터, SW, 시스템, 네트워크)을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영역으로 이전하여 원하는 때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 컴퓨팅파워를 아웃소싱 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며, 이 기종의 하드웨어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마치 한 시스템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하드웨어 폴링, 실제 시스템 구성을 몰라도 되는 하드웨어 비가시성을 제공함.
- 일본 최대 유기농식품 유통업체 '클라우드기반 물류기술 플랫폼' 개발, 운송관련 모바일 솔루션 도입함.

3) 모바일 최적화

- 기기의 소형화, 휴대화에 따른 이동성 증가, 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결성 강화, 언제 어디서나 응답 가능한 실시간성 보장, 불특정인이 아닌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증강현실, 내 차량 주차위치, 버스정보시스템(BIS)과 연계한 실시간 정보 제공, 쇼핑정보 등의 제공에 활용이 가능함.

4)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분석

-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대해진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존에 찾아내지 못했던 의미 있는 결과를 추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각종 고급 분석 기법의 활용이 가능함.
-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해주는 각종 고급 분석 기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능함.

나.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1) 빅데이터 분석의 전제조건

- 기존 유통정보의 클린징 (cleansing), 오류 수정, 누락 데이터 보충, 표준 코드 적용을 통한 원 데이터의 정확성 · 충실도 제고, 실시간 수집되는 자료의 시스템적 오류체크 · 데이터 항목 검증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개방되고 공유할 수 있는 단일 데이터 플랫폼 (Single Repository) 구축, 과거 데이터 통합 및 구축 이후실시간 데이터 수집 플랫폼 구축이 요구됨.

- 도매시장에 대한 깊고 넓은 이해, 이해관계자 정보 니즈에 대응이 가능한 객관성을 갖춘 전문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여 지속적인 역량 · 경험 확충이 필요함.
- 기존 데이터의 불완전성(오류, 누락, 항목간 미통합 등) 보충과 출하자 · 상품정보의 부정확성을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 품질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운영과 개선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2) 빅데이터 분석 활용 예

- 가격변동성 분석 - 연도별 · 월별 변동성 분석이 가능함.
- 경매의 가격변동성 분석이 가능함.
- 전자거래의 가격변동성 분석이 가능함.
- 모든 거래를 요약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도매시장 가격지수 개발이 가능함.
- 빅데이터 기반의 경매부정탐지와 같이 도매시장 공정성 모니터링을 위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함.
- 빅데이터 기반의 수급량 · 가격 상관관계 분석이 가능하며, 연도별 경락가격 상관계수 파악이 가능함.

다. B2B 전자결제 서비스

1) B2B 전자결제 서비스 개요 및 도입 의의

- 기업 간 상거래(B2B)에서 발생하는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대금결제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 가락시장의 “중도매인 ← 구매자” 대금 결제는 매우 전통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금융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는 없었음.
- 중도매인이 집단적으로 공동구매 또는 중도매인 전체 및 구매자 전체 대상의 결제 · 정산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과 도입은 타당성 확보가 가능함.
- 다양한 형태의 B2B 구매카드가 개발되어 있으며, 구매기업이 물품구매대금을 일반 신용카드와 같은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판매 기업은 지급은행(또는 카드사)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결제방식 운용이 가능함.

- 구매기업이 카드회원이고 판매 기업이 가맹점으로서 결제수수료를 가맹점인 판매 기업이 부담함.
- 구매카드로 결제 받은 판매기업(납품업체)은 이를 할인하여 바로 현금화하거나 아니면 만기일에 자동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B2B 구매자카드는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 인프라 활용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기업이 구매자의 신용도 관리, 채권회수 등과 같이 일반적인 신용카드 거래 방식을 그대로 적용 가능하며 신용도에 따른 대출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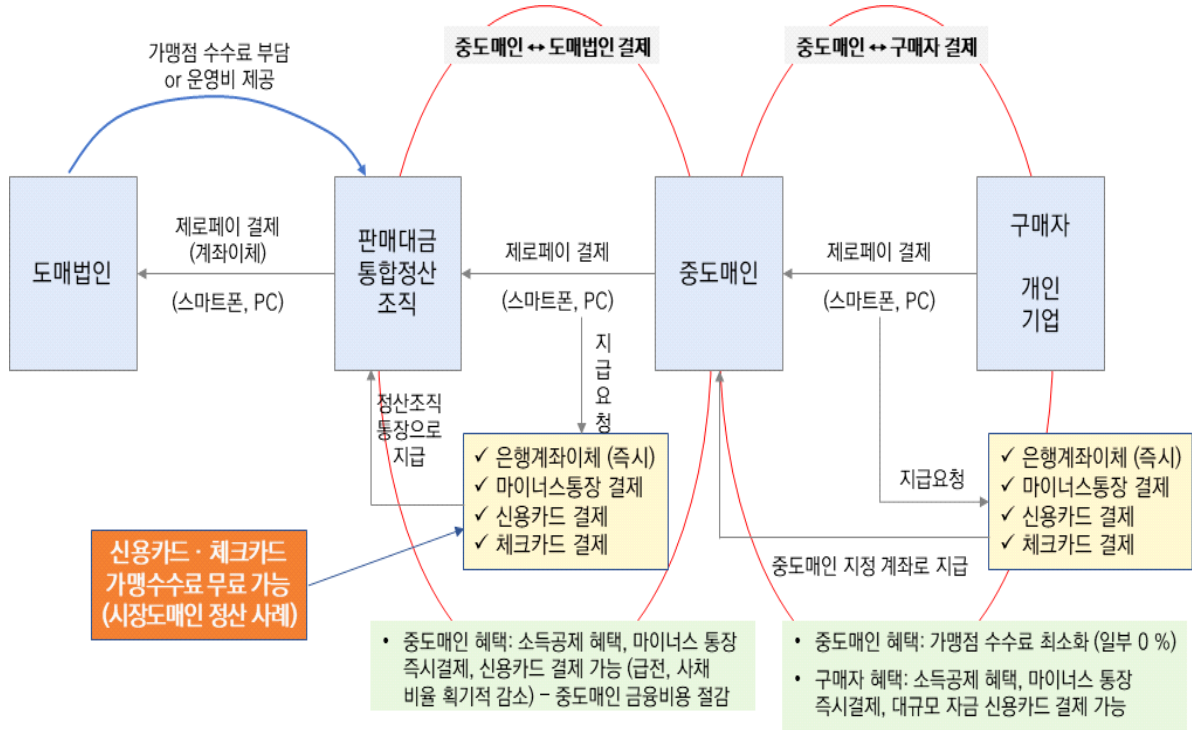
2) B2B 전자결제 서비스 결제수단

- B2B 전자채권
 - 구매기업이 판매 기업에게 지불한 납품 대금을 약속어음이나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 전자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면 판매 기업이 이를 은행에 양도하고 지급기일내에 언제든지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임.
- 외상매출채권담보 대출
 - 기업 간 상거래 결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서 구매기업은 판매 기업에 결제할 지급내역을 은행에 등록하고 판매 기업은 동 채권을 담보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임.

3) 결제 시스템 도입 가능성

- 농산물 전체 가치사슬에 페이 시스템의 도입 가능성과 효익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며, 기술적·정책적·수익성 측면에서 충분한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됨.
- 구매자 → 중도매인 → (정산조직) → 도매법인 → 출하자까지 연결되는 모든 결제 단계에 페이 시스템이 도입이 가능하며, B2B 결제시스템과 유사한 에스크로 기능, 우선 결제, 신용카드와 같은 기능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 가락시장 판매대금 통합정산창구가 제도화되고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중도매인의 거래에도 금융기관이 참여하게 된다면 구매자 결제를 위한 다양한 B2B 결제 대행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5-12〉 가락시장 제로페이 도입가능성



※ 출처: 본 연구용역팀 작성

- 국세청, 중앙정부, 개설자의 지원 유도를 통하여 B2B 구매자 카드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 카드로 결제되는 모든 거래 내역은 투명하게 관리되며, 도매시장의 정산, 결제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음.
- 즉, 중앙정부와 개설자의 다양한 도매시장 지원 대책과 농안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국세청의 세금 인센티브 또는 절세 효과 등 다양한 부수적 순기능을 기대하는 것이 가능함.

4) B2B 결제 시스템 도입 및 운영방안

- B2B 구매카드는 가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도매인들이 서비스 개발을 의뢰하고, 금융기관이 상품을 개발하여 카드사용자를 모집(중도매인과 함께 권유하면서 중도매인에게 일정의 모집 인센티브 제공)하여 운영하는 방식임.
- B2B 구매카드는 중도매인이 원하는 결제방식을 금융기관과 상의하면서 만들고 구매자를 대상으로 결제를 요청하는 시스템이므로 가락시장 청과 중도매인에 최적화된 결제구조, 대출, 대불방식을 만드는 것이 가능함.

- B2B 결제시스템으로 확대 통합하여 “구매자 → 중도매인 → 도매법인”이라는 결제사슬을 구조화 (구매자카드와 중도매인 결제카드) 하면, 구매자가 중도매인에게 외상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중도매인이 도매법인에 결제하지 못하는 미납대금도 금융기관에서 구매자의 채권을 담보로 중도매인을 위해 대납하거나 구매자 대금을 미리 지급해주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가능함.
- 신생 핀테크 기업과의 B2B 결제 시스템 구축, 중도매인과 구매자의 접근성, 보편성이 가장 높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도입 및 운영방안임.
 - 카카오톡은 전 국민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출발하여 선물 교환, 소액 송금 및 결제, 외환송금, 금융플랫폼으로 까지 발전되고 있으며 아직도 다양한 새로운 ICT 기반의 사업을 확장함.
 -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범위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에 대한 제약이 적으며, 자금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적극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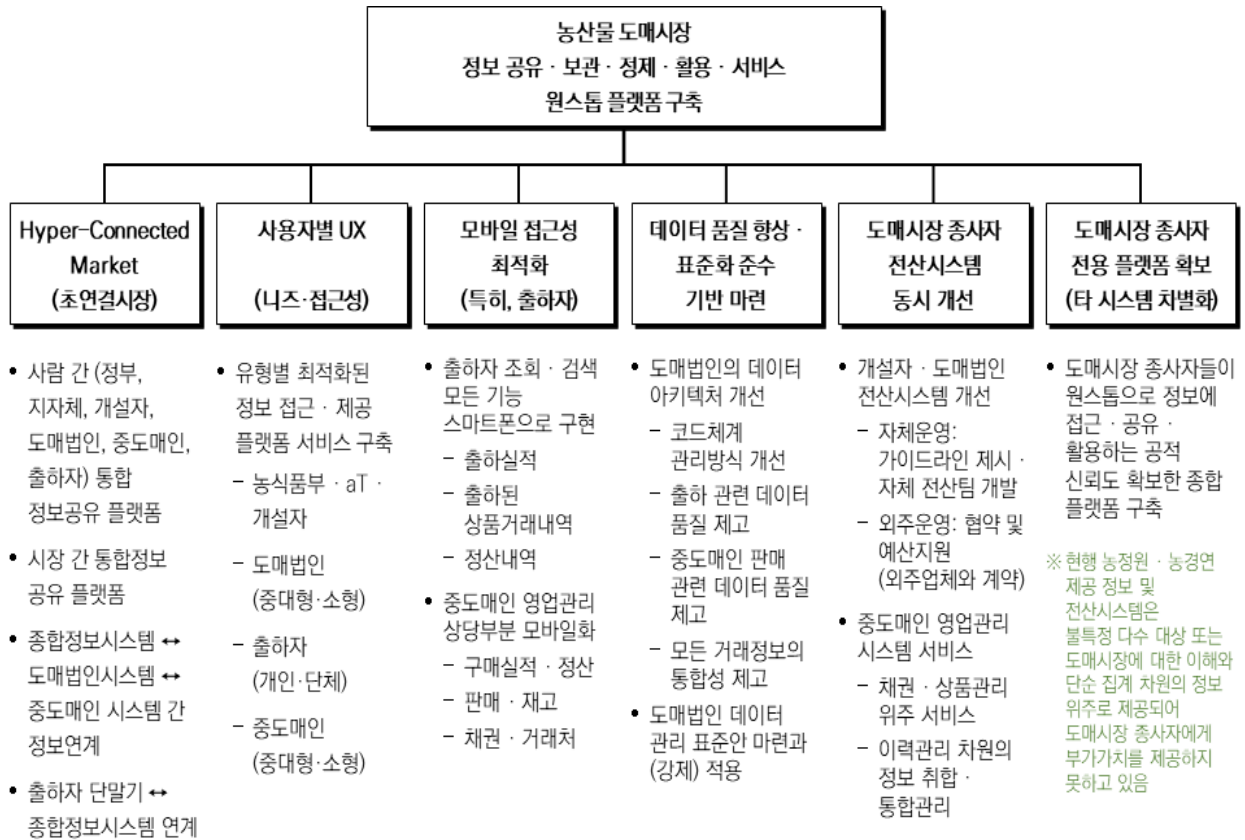
4. 판매대금 통합정산시스템 구축 전략

가. 추진 전략

1) 통합정산시스템 구축 목표 및 범위

- 업무효율성제고 · 공적기능강화를 위한 도매시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현행 시스템 개선계획을 수립함.
- 업무·정보운영 현황분석과 니즈 ·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비전·전략·주요 과제 정의 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현황분석, 정보화 과제 정의 및 전략 수립, 실행계획 수립의 체계적인 추진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됨.
- 농산물 도매시장 정보 공유 · 보관 · 정제 · 활용 · 서비스 원스톱 플랫폼 구축을 주요 목표로 설정함.

〈그림 5-13〉 판매대금 통합정산시스템 구축 범위



※ 출처: 본 연구용역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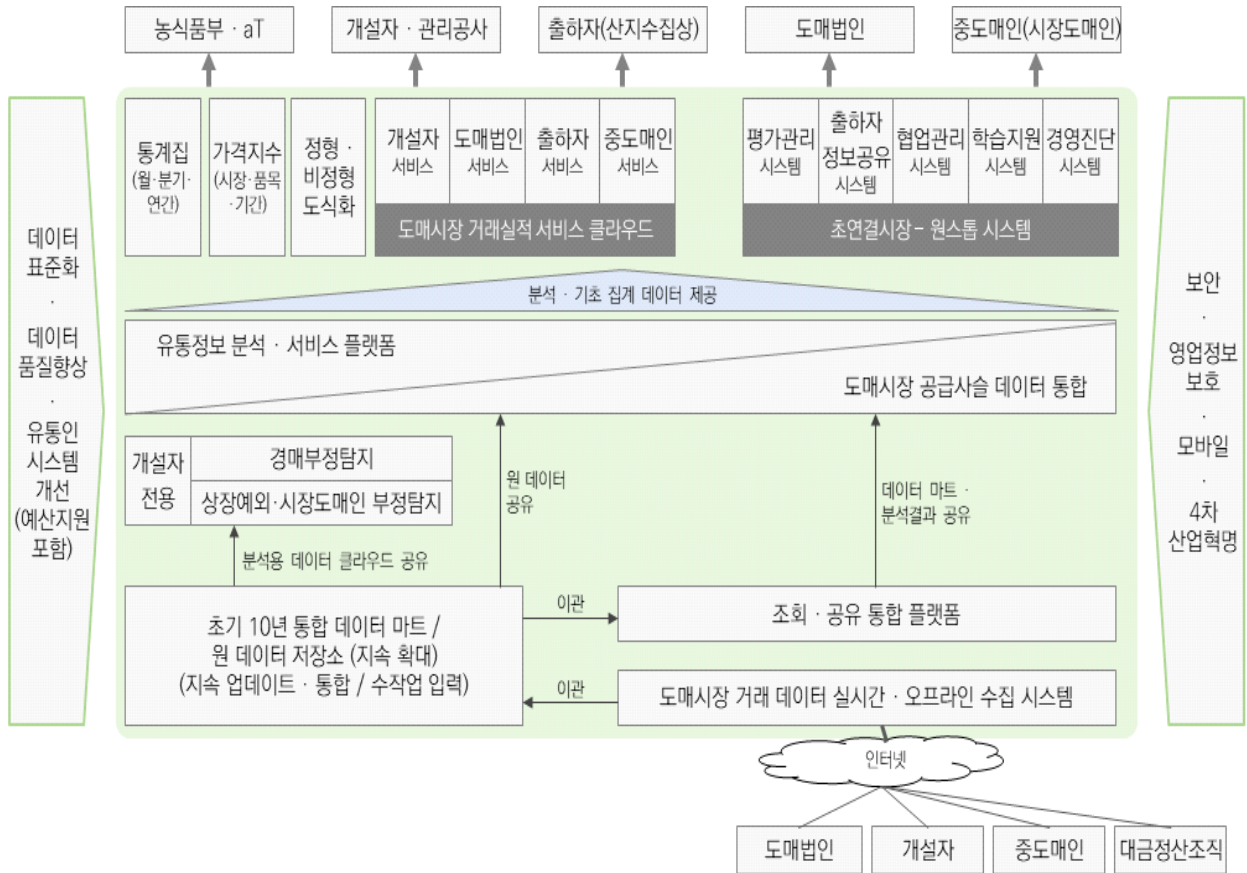
- 플랫폼 인프라 · 4차 산업혁명 · 경쟁력/효율성 ·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안정적인 통합정산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 종합 정보 플랫폼 인프라 구축
 - 도매시장 유통정보 수집 · 정제 · 보관 통합 플랫폼
 - 유통정보 분석 모델링 · 데이터 마트 · 서비스 체계 구축
 - 농식품부 · aT · 개설자 · 유통종사자간 초연결성
 - 도매시장 간 연결성 (전송거래, 시장간 비교분석 등) 추구
- 4차 산업 혁명 신기술 적용
 - 출하자 제값 받기·의사결정 지원 빅데이터 서비스 구축
 - 유통종사자 · 정부 간 및 물류기기 등과의 정보공유 · 동일 플랫폼 활용한 초연결 시장 구현

- '협력을 통한 혁신'을 위한 공급사슬 데이터 통합
- '데이터 공유' 기반 및 활용 체계 구현

- 도매시장 경쟁력 · 효율성 제고
 - 4차 산업혁명 적용을 통한 물류·영업 생산성 제고
 - 정보공유 플랫폼·정보접근성 제고 ⇒ 효율성 제고
 - 공급사슬 최적화 · 도매시장 간 최적화된 거래 추구
 - 공유 · 초연결 기술로 반복·일상 업무 자동화 · 전산화

- 정보 활용 부가가치 극대화
 - 사용자별 특성·요건에 최적화된 빅데이터 · 초연결 플랫폼
 - 출하자 제값 받기 · 중도매인 복수거래/채권관리 플랫폼
 - 도매시장 종사자 (정부, 출하자, 도매인) 을 위한 정보시스템
 - 도매법인 · 중도매인 원(原)데이터 품질 확보 · 표준화

〈그림 5-14〉 판매대금 통합종합시스템 To-Be 이미지



※ 출처: 본 연구용역팀 작성

나. 단계별 추진 계획

1) BPR/ISP

- 환경 분석, 인터뷰, 워크숍 등을 통해 IT비전 및 추진과제를 정의함.
- 관련 제도, 기준, 이자 및 수수료 요율, 한도, 세부 업무 프로세스 설계하며, 6명의 컨설턴트 참여, 약 3.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함.

2) 상세설계

- 응용프로그램 · 데이터 (코드체계) · UI/UX 설계로, 약 3개월 간 3.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함.

3) 시스템 구축

- H/W, S/W 도입, 응용프로그램, 모바일, 중도매인 영업 관리 등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 약 4개월의 시스템 구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약 2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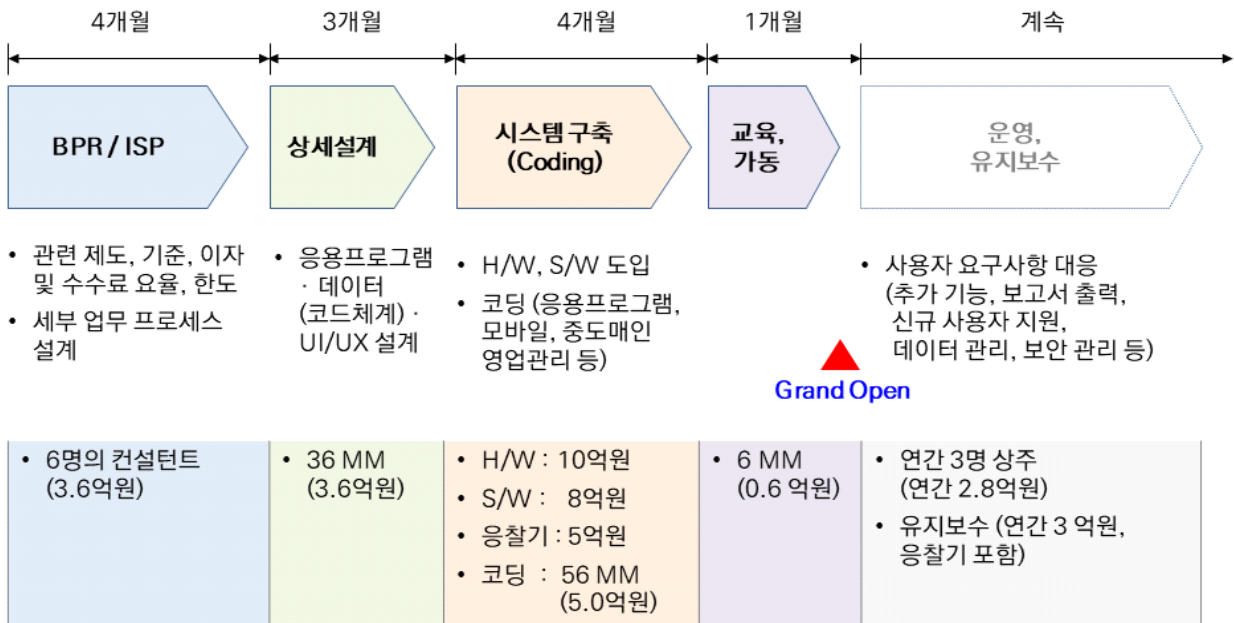
4) 시스템 교육·테스트

- 통합정산시스템 사용자를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 사용 교육과 시스템 가동을 통한 테스트 등을 진행함.

5)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 시스템 추가 기능, 보고서 출력, 신규 사용자 지원, 데이터 관리, 보안 관리 등과 같은 사용자 요구사항 대응과 유지보수 진행이 필요함.

〈그림 5-15〉 대판매대금정산 종합시스템 구축 예상 추진 일정



※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7), 농산물도매시장 통합정산조직 설립방안 연구용역

〈 참고 문헌 〉

- [1] 김병률, 전창곤, 박성진, 채상현,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 [2] 김효미, 김운두.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장구조와 효율성 간의 관계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6), 238-245, 2020
- [3] 서울시농수산물공사, 「2021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 농림축산식품부, 2021
- [4] 전창곤, 김병률, 박성진, 김동훈, 정승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공급망 관리 (SCM) 시스템 구축 방안 (1/2 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 [5] 서울시농수산물공사(2020). 가락시장 청과부류 대금정산조직 도입 연구. [cited 2021.11.24.]. <<https://opengov.seoul.go.kr/research/view/?nid=21636637>>

〈 부 록 〉

I. 국외 정산시스템 현황 상세 조사 자료

1. 일본의 정산체계

- 일본의 정산시스템은 조합대불방식, 정산회사방식, 개별정산방식, 전자결제방식, 선불결제방식으로 구분되며, 대부분 정산조합과 정산회사로 구조화되어 있음
- 정산회사와 정산조합방식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중도매인조합, 매매참가인조합, 소매업자조합에서 상인으로부터 보증금, 예치금을 받고 해당 금액만큼의 한도에 대한 지불을 보장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보증금 또는 예치금은 일평균 거래금액의 6배임. 중도매인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예치금을 조정함
- 소매업자(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조합에 가입되어야 거래가 가능함) → 매매참가인 → 중도매인 → 도매업자로의 대금지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데이터센터(IT 전문회사가 구축, 운영 - 2 ~ 5명의 조직)를 구축하여, 통일청구서를 발행하여, 결제센터 또는 정산회사(요코하마 6명, 쓰끼지 수산 7명, 삿포로 9명)는 소매업자, 매매참가인, 중도매인의 대금결제를 통합적으로 수납하고, 지불하며, 완납장려금 수취하여 배분하는 역할까지 담당함.
- 미리 지불하고 나중에 받는 경우에는 사고가 몇 차례 발생하여 없어지고 있으며, 선수취하여 후지불하며, 수납이 안 되는 경우, 조합의 보증금으로 우선 납입 후 조합에서 개별 상인에게 수납하고 있음
- 정산조직의 운영자금은 필요한 금액만큼 운영위원회에 요청하여 받거나, 완납장려금의 일부를 할애하여 충당하고 있으며, 이익을 Zero로 맞추고 있음
- 도매법인이 정산조직에 지불하는 도쿄도 조례로 규정된 완납장려금 (10/1,000 = 1%)의 30%(0.3%)는 정산조직 운영자금, 30%(0.3%)는 위험기금적립, 40%(0.4%)는 중도매인에게 장려금 지급이 원칙임
- 일본에서도 출하자 대상의 정산 기능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도매법인에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 일본에서는 출하자가 중도매인에게 직접 출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 일본에서도 정산사고가 발생하여 도매법인이 파산하거나 (약 300억원 부실), 정산조합임원이 5억원 배상 등 위험관리에 대한 고민이 많으며, 자금의 안정적 지불에 대한 다양한 대안 (예, 사전지불, IC카드 거래 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무한책임의 조합방식에서 유한책임으로 전환하고 있음.

2. 가락시장정산(주) 운영방안에 대한 자문

가. 소매업자 조합, 중도매인 조합 부재의 문제점

- 소매업자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이 중도매인을 통해 정산회사에 전가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소매업자·중도매업자 조합을 만들어놓고 조합에서 위험을 지게 해야 함.
- 중도매인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하는 별도 기금이나 조합이 필요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중도매인의 부실로 정산기능이 멈출 수 있음.

나.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받는 문제점

- 일본에서도 위험과 사례가 많기 때문에 먼저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짐

다. (관리공사)에서 50% 지분 참여의 문제

- 일본의 도매법인이 파산했던 가와사키시처럼 (300억 원 부실발생) 중도매인의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

라. 보증금이 적고, 보증금 이상의 한도 부여의 문제점

- 7일째까지 지급을 유예해 주기 때문에 7일분을 보증금으로 받아야 함
보증금의 1배를 넘어가는 부분이 정산회사의 결손금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큼.
- 오파시장의 경우 6일분의 보증금을 넣어도 물량이 3배로 갑자기 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중도매인은 추가로 현금을 입금시켜야 거래가 가능함
보증금 대비 3배, 5배의 한도를 주게 되면 위험관리 장치가 전혀 없음.

마. 수수료율이 낮고, 인원수가 부족하다는 문제점

- 정산수수료 0.04%는 너무 적으며, 운영인원은 중도매인 수를 고려할 때 12명 정도가 적당함

3. 기타 주요 사항 정리

가. 중도매인 채권관리 수단

- 보증금의 한도 내에서 거래가 이뤄지면 위험은 없음.
- 도매법인과 조합에서 중도매인의 거래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위험성이 있는 중도매인은 사전적 예방조치를 취함.
- 점포에 대한 권리금이 있어, 점포를 매각하여 권리금으로 중도매인의 정산대금을 정리한 사례도 있으며, 도쿄도에서 용인하고 있음.

나. 내부위험관리

- 창구, 관리자, 총괄책임자의 3단계 체크하고 있으며, 은행업무 성격이 강해 은행업무 경험자가 관리감독하고 있음.

다. 중도매인 위험관리

- (중도매인 부도 시에도 대금을 지급하는 완전 대불방식의) 중도매인 조합에서는 (정산회사 및 정산조합과는 별도로) 거래금액의 0.1% ~ 0.2%를 위험관리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음.
- 중도매인 조합에서 모니터링하고 예측해서 사전에 움직이고 있으며, 중도매인이 어려워지면, 다른 중도매인과 합병 등을 통해 부도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시킴.

라. 조합 운영비

- 완납장려금과는 별도로 매월 조합에서 정해진 금액을 징수하고 있음.

마. 도매시장 휴장일

- 1달에 8일 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6일을 쉬고 있음
- 수요일 휴무를 추가하고 있음. 토, 일 연속 쉬게 되면 소매업자가 3일분을 구매해야 함.

4. 샷포로청과정산주식회사

목적	청과물 대금의 수납, 징수			
인원수	총 9명 정직원 6명, 파트타임 3명 창구에 6명이 수납/지불하고, 2명이 체크하고, 1명이 전체 통제			
경영주체 정산대상	도매	중도매인	소매업자	비조합원
	2	27	472	7
	소매업자도 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매업자 조합에 가입해야만 도매시장에서 구매가 가능함			
자본금	3,100만 JPY 도매법인 2개사 (32.3%), 시장인 협회(32.3%), 소매조합 3개(32.3%), 은행(3.2%) 출자			
운영비	이득을 남기지 않음. 파는 사람이 부담하는 구조.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 중의 해당 업체의 비율만큼 부담시킴 연간 5,000만 JPY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예산을 책정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쳐 집행하고, 년간 3차례(5월, 8월, 10월)로 나누어 수령			
결제수단	수표 35%、현금 55%、은행이체 10% 거래비용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정산회사에 납입함			
상인조합	중도매인、소매인 모두 조합에 가입해야 거래가 가능함 (비조합원 7명은 조합설립 이전부터 거래한 사람들로 계도하여 계속 줄어들고 있음) 중도매인 조합 1개, 소매업자 조합 3개			
정산비율	도매업자、소매업자 100% 중도매업자 판매의 60%를 소매업자에 판매하고 40% 타 도매시장으로 전송하는 물량임 (따라서, 중도매업자 판매금액의 60%만 정산회사에서 처리됨)			
보증금	조합이 보증함 (해당 일시에 대금 납입 못하면 조합이 대납함) 보증금 한도 초과 시에는 해당 상품을 환송함 (즉, 정산회사가 보증금 한도 초과분 은 책임지지 않음) 미지급분을 조합에서 보증금에서 상계 후 부족한 경우 조합에서 본인에게 납부를 독 촉함 6일 평균 거래금액(비조합원은 7일분을 정산회사에서 받아서 보관하고 있음)을 보 증금으로 조합에 납부 (수산물 정산의 경우에는 각 업자가 정산회사에 보증금을 예 치함)하고 조합에 가입함 조합원은 1년에 한 번, 비조합원은 1년에 두 번씩 보증금을 다시 책정하고, 부족하면 추가 납입요청하고, 납으면 돌려줌			

<p>완납 장려금 (정산회사를 통해 지불한 금액의 일정비율만큼을 제공함)</p>	<p>정산회사에서 한 달 간 정산한 금액을 종합하여 장려금 지급업체 (도매법인, 중도매인) 에 요청, 정산회사에서 완납장려금 총액을 받아서 조합에 나누어주며, 조합에서 중도매인 및 소매업자에게 다시 나누어줌</p>
<p>협정서</p>	<p>정산회사 ↔ 도매법인 정산회사 ↔ 중도매업자(개별) 정산회사 ↔ 소매조합</p>
<p>보험가입</p>	<p>도난보험, 현금 운반 위험 보험 가입</p>
<p>전산 시스템</p>	<p>샷포로 시장 재정비 시점에 유통인이 각출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하고, 시장 협회 책임하의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전산정보센터라는 이름이라는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음 “샷포로 청과 도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도매법인, 중도매인, 소매인의 모든 상류·물류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통일청구서 : 각 소매업자에서 도매업자, 중도매업자 청구 데이터를 다 집약하여 기재한 청구서로 소매업자는 이것으로 정산회사에 매수대금을 일괄 지불함</p>
<p>자금사고 및 대비</p>	<p>정산회사 입장에서는 (조합에서 대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받은 사례가 없음 소매업자나 중도매업자가 해당 시간까지 입금을 하지 않으면 상인에게 먼저 전화를 하고 연락이 안되거나 입금이 안되면 조합에 연락을 해서 조합이 지불을 하고 그 이후의 문제는 정산회사는 개입하지 않고, 조합과 조합원이 알아서 정리하는 구조임 중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가 부도가 나서 조합이 처리한 사례는 있음 내부에서의 횡령은 전혀 없었음 (삼중의 체크 시스템 - 청구, 관리자, 총관리자)</p>

가. 가락시장정산(주)에 대한 Advice 및 질의응답

1) 질의: 가락시장정산(주)의 운영방식을 어떻게 보시는지?

- 위험하다고 판단됨. 일본에서는 절대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해놓고 먼저 지불하지 않음. 일본 내에서도 그런 위험과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인 개인으로는 정산하고 있지 않고, 조합을 만들어 놓고, 조합에서 리스크를 가져가고 있는데, 개인 개인으로 하게 되면 모든 리스크를 정산회사가 져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다고 판단됨
- 한국의 문제점은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받는다는데에 있음. 즉, 미리 지급한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정산회사가 모두 져야 한다는데에 문제가 있음. 또한 기간을 7일씩이나 주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 리스크가 축적되어 가는다는 것도 심각함. 이 날짜를 될 수 있는 한 줄이거나, 없애야 리스크를 줄 일 수 있음
- 또한, 한국의 경우는 소매업자 조합이나 정산기능이 없기 때문에 소매업자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이 중도매업자를 통해 정산회사에 전가되기 때문에 이중의 위험이 있음
- 삿포로에서는 먼저 지급하는 경우는 없었음

2) 질의: 한국은 출하자를 위한 정산회사이고, 일본은 구매자를 위한 정산회사인 느낌이 듭

- 일본의 경우는 원래부터 있던 도매법인, 중도매업자, 소매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던 시스템 하에서 도매업자는 생산자랑 연결되서, 중도매업자와 도매법인간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고, 중도매업자는 소매업자와 개별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부분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해보자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함께 출자해서 만든 정산회사이고,
- 한국의 경우는 처음부터 정산회사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시작하자는 스타일임. 일본은 원래있던 정산을 통합관리하는 차원으로 정산회사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음

3) 질의: 소매업자의 정산조합 운영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가능했는지?

- 소매업자 정산조합이라는 것을 새로이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소매업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정산회사를 하면서 기존의 소매조합이 참여하게 하면서, 공정성·관리상의 편의 설득, 정산회사에 들어오지 않으면 거래를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참여시킨 것임. 처음에는 반대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참여하게 됨

4) 질의: 대형할인업체, 백화점 등이 소매업자에 들어와 있는지?

- 소매업자는 큰 대기업들도 몇 개 들어와 있음. 매매참가인으로 구매하거나 중도매인에게 사가기도 함.

5) 질의: 출하자 대상의 정산시스템은 왜 운영 안하는지?

- 일본에서는 출하자와 중도매인이 직접 거래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출하자는 도매법인에 공급하고, 도매법인이 출하자에 정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정산회사는 도매시장내의 거래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책임지고 있지만, 일본은 도매시장법에 준해서 관련 시 공무원들이 출하자와 도매법인간의 관계를 보고 있고,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음. 즉, 다른 조직에서 다른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정산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음. 도매법인에서 상생의 목적으로 잘 지급하고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

6) 질의: 일본은 출하자의 파워가 강하지 않나요?

- 일본은 JA와 같은 생산자 조직이 도매시장 유통인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음. 일본의 현실은 생산자가 가격을 정해서 이 가격으로 팔아달라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물건을 내놔서 물건을 못 팔면, 다음부터는 거래가 힘들
- 농산물 유통에서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비중이 25% 정도

7) 질의: 정산회사의 전산시스템은 언제 구축된 것인지?

- 10년 전에 구축되었음
- 일본 도매시장 구조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이 거의 비슷함
- 삿포로의 전산시스템은 오픈 시스템으로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소매업자, 소비자 모두가 들어와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음
- 도매업자와 중도매업자의 물건 이동은 당일 오후 5시까지 전산정보센터로 들어오고 있음
- 전산정보센터는 정산회사와 별도로 시장협회의 책임 하에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음
- 들어온 전산정보가 다 합쳐졌을 때 정산회사로 전달함
-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통합청구서를 작성함
- 당일 작성된 청구서를 중도매업자, 소매업자 각각 지정된 박스에 넣어놓음. 각각의 중도매인, 소매업자가 각각 박스의 서류를 확인해서 3일 이내에 입금함

8) 질의: 소비세가 무엇이고 정산회사가 걷어서 납부하는 것인지?

- 일본은 물건이 이동할 때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포함해서 받고 있음

9) 질의: 정산회사의 9명의 개별적인 업무에 대한 설명?

- 총괄인력 1명. 파트인력은 창구에서 은행창구와 같은 역할. 오전에 일을 마치고 돌아감. 오후에는 모여진 경리, 회계, 대금결제, 미지불금에 대한 연락을 하고 있음. 그 외는 일반회사에서와 같은 행정업무, 일반관리 업무를 하고 있음
- 9명이 겨우 겨우 업무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력이 부족함

10) 질의: 근무제가 주 5일 근무제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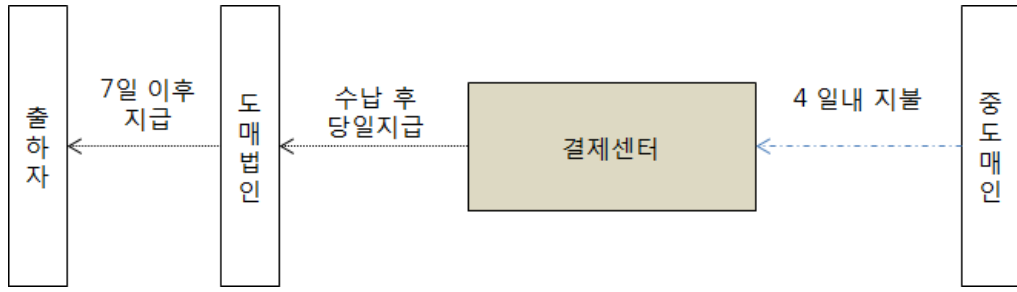
- 시장이 움직이는 토요일에도 근무해야 함. 대신 2, 4 수요일에 휴장하고 있음. 4주에 8번 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6번 정도 쉬는 것으로 유지하고 있음

11) 질의: 삿포로 도매시장의 정산시스템이 일본에서도 다른 지역 대비 잘되어 있고, 위험도 적고, 사고도 안 났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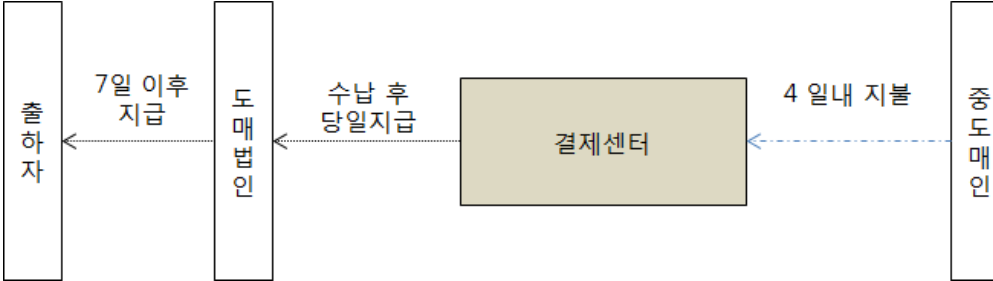
- 홋카이도는 역사가 짧고 지역특색이 많지 않음. 사이 좋게 지내는 지역임
- 도매업, 중도매업, 소매업의 대표들이 모여서 도매시장 운영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음. 그 분들이 인간적으로 매우 친함
- 대표로서 자주 만나고 협의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시장을 잘 운영을 할 것인지를 함께 모여 협의를 하고 있음. 그분들의 사회에 대한 의식, 사회에 공헌해야 하고, 함께 가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음. 그분들의 인간관계, 동료의식이 강하게 작용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 일본에서도 도매업자, 중도매업자, 소매업자를 한 시스템에 넣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별로 없고, 도매업자 시스템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도매업자도 전산정보 센터에 모든 정보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한 곳에 모이고 관리될 수 있게 되었음. 10년 전에 삿포로 도매시장 재정비 때 관련되는 개발 비용을 도매업자, 중도매업자, 소매업자 각자 분담해서 내놓음으로써 서로 오픈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음. 그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는 안 되고 있는데, 삿포로에서는 되고 있는 부분임.

5. 쓰끼지(築地) 및 요코하마(横浜) 중앙도매시장

<p>운영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센터, 데이터센터로 분리되어 있음 (결제센터가 먼저 생겨나고, 이후에 데이터 센터가 설립되어 통합의 어려움이 있음) • 7개의 수산법인과 700여의 중도매인, 600여 매참인이 구성한 정산조합이 결제센터를 통해 결제함
<p>운영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는 실비로 받음
<p>데이터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명의 인력으로 운영 • 출하자 제공 정보 및 7개시의 수산도매법인과 연계하여, 위탁, 사입 및 판매정보 관리 • 입금 및 여신정보, 청구정보 (PDF작성, Fax 전송) 관리 • 쓰끼지 시장내 물류회사 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물류정보 (입하정보, 장내 이송정보, 작업지시 정보) 관리 •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음

<p>결제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명이 운영함 • 결제처리 및 입금 관리 담당데이터 센터로부터 받은 청구내역을 토대로 중도매업자 및 매참인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중도매인이 입금한 대금을 청구일로부터 4일째에 도매법인에 결제함 • 도매법인이 90%, 중도매인이 10% 출자하여 설립됨 • 운영시간은 08:00 ~ 14:00 이고, 운영비용도 출자비율과 동일하게 도매법인 90%, 중도매인 10% 분담 	
<p>결제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내의 거래당사자(도매/중도매/소매상)간의 거래대금이 정산되고, 이후에 최종적으로 출하자에게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도매법인의 출하자에 대한 결제는 통상 7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선(先) 대금수취, 후(後) 결제하는 체제로 되어 있음 • 청과는 조합을 통한 대불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중도매인이 입금한 한도 내에서 도매법인에 대금을 결제하고 있으며, 중도매인 미지불 발생시 조합이 받은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대불함 • 수산은 도매법인이 중도매인의 보증금을 결정하고, 직접 보증금을 받고 있으며, 중도매인이 결제센터 입금하고, 결제센터에서 도매법인에 정산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조합은 미결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결제센터 이용수수료는 0.1%로, 이 비용이 영수증 발행에 따른 수입인지 비용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결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여신관리 기준(항목)으로 동경도 인증, 입금기일 준수실적, 완납실적, 조합원 보증, 보증금납부 등을 활용하고 있음 	
<p>데이터 센터 운용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체계 • 특정정보만 운용(출하+판매) • 중복 운영 (물류 및 결제) • 물리적작업 (전표작성업무 등) • 운영비용을 작업별로 분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센터 운용 • 정보의 일원화 (통합적 정보) • 운용의 일원화 • 정보 速達性和 작업 효율 추구 • 운영비용부담의 명확화 → 수익자 부담원칙
<p>위험관리 기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끼지 시장의 경우, 정산수수료와는 별도로, 각 조합별로 거래금액의 1/1,000을 조합별로 위험관리기금으로 각자 적립하고 있음. 도산이 되었을 때, 그 금액으로 대치를 하고 있음 • 이것은 쓰끼지 조합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Rule로 되어 있음 • 중도매인의 도산을 대비하여, 도매법인도 준비금을 확보하여, 도산 금액이 조합에서 해결 불가능하면 도매법인의 준비금에서 처리하고 있음 • 보증금/예치금 정도는 도매법인마다 틀리지만, 15일 이후에 지불하는 업체가 적기 때문에, 4일 ~ 15일의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적립금을 산정함. 	

6. 요꼬하마 중앙도매시장 정산시스템에 대한 설명

<p>결제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법에 규정되어 있음 • 상품을 위탁하면 익일 판매대금을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실제로는 결제 기일을 지키기 어려워 지급일을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서 결정
<p>정산 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은 거래 보증금이 없고, 3주일 (21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 (2개 도매법인, 81개 중도매인, 18개 매참인) • 청과는 중도매인이 조합이 도매법인에 대한 결제대금을 대불하고 있음 (2개 도매법인, 26개 중도매인, 593개 매참인)  <pre> graph LR WM[중도매인] -- "4 일내 지불" --> SC[결제센터] SC -- "수납 후 당일지급" --> WH[도매법인] WH -- "7일 이후 지급" --> B[출하자] </p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정산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끼리 운영하는 회사로 운영인력은 6명이고, 그 운영에 요꼬하마시에서는 관여하지 않음
<p>정산 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된 그림 _ 참조 • 사람이 받으면 시간 내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자적 거래, CVS내 기기, ATM 거래를 활용하고 있음. • 요꼬하마시가 속한 카나가와현에는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을 합하여 40개의 도매시장이 있음. 40개의 도매시장이 공통으로 쓸 수 있도록 개발한 것임. 은행의 기능과 같은 시스템임 • 도매법인은 매일매일 거래 내역을 시스템 연계하여 정산시스템관리회사 (神奈川시장시스템개발(주), 요꼬하마시 중앙도매시장 본장 사무동에 입주되어 있음)에 송부함 • 예전에는 정보를 각각 관리하면서 인터페이스만 했는데,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통합된 청구서 형태로 하나로 해서 넘겨주고 있으며, 동시에 인터넷 상에서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각 참여자가 5년간의 거래내역을 볼 수 있게 함

가. 쓰끼지·요코하마 정산시스템에 대한 질의·응답

1) 질의 : 정산회사의 직원의 횡령, 유용 사태가 있었는지? 한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험을 들려고 함. 차명계좌를 만들어서 허위 송금을 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

- 요코하마, 쓰끼지 모두 그런 사태는 없었음. 일본에서는 돈의 도난, 운반 과정상의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지만, 창구 직원의 횡령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경우는 없음. 3시에 마감하는 시점에 모든 정보를 알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음. 별다른 관리 필요성은 없었음
- 현금 운영은 경비회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이고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위험은 적으나, 운반위험, 도난위험에 대한 보험은 가입함
- 일본에서는 결제하기 위한 수표 / 자동이체 지정 및 은행구좌를 열 때는 심사가 들어감. 계좌를 그냥 만들어 주지 않으며, 은행에서 모든 상태를 파악한 후에 은행 계좌를 만들어 줌. 은행에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음.

2) 질의 : 요코하마 정산회사의 인력은 ?

- 총 6명으로 정산회사 창구에 5명 있으며, 은행업무를 아는 책임자 1명

3) 질의 : 중도매인이 부도가 나서, 보증금으로 처리 못할 때 점포를 팔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지?

- 부도사고가 났을때, 중도매인이 지불할 돈이 없으면, 점포를 매각해서 그 금액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음. 도쿄도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임. 이는 쓰끼지 시장내에서만 점포에 대한 권리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임. 다른 도매시장은 권리금이 거의 없음.
- 버블때는 권리금이 1억엔까지 갔고, 5 ~ 6년 전에는 3천만엔 정도였는데, 지금은 더 떨어져서, 천만엔 이하임.

4) 질의 : 가락시장은 시장사용료로 0.53%(5.3 / 1,000) 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공사에서 위험부담금을 어느 정도로 적립해야 하는지?

- 일본은 시장사용료가 (거래 금액이 아닌) 평당 얼마로 정해져 있음. 일본의 경우, 1/1,000을 위험보증금으로 정산조합에서 적립하고 있음. 요코하마는 거래 발생 시마다 적립하는 구조가 아니고, 항상 300만 엔을 적립하고 있음. 쓰끼지 시장의 경우엔, 1/1,000 ~ 2/1,000 정도를 위험보증금으로 적립하고 있음 (공사 직원 의견 : 위험보증금은 0.53%중의 0.03% 내에서 해결해야 함)
- 청과와 수산 쪽은 내용이 완전히 틀림. 수산은 1/1,000을 적립하고 있고, 청과 쪽은 조합이 책임지는 구조로 하고 있음.
- 청과의 경우, 도매법인이 조합에 당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조합에 청구하고, 4일째에 중도매인이 조합에 지불하고 있음. 4일째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음. 조합과 중도매인의 채권 관계가 발생함
- 도매법인은 7.5%의 상장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산지에서 물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장려금으로 1% 지급하고, 중도매인 조합에도 완납 장려금으로 1%를 지급하고 있음.
- 1%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조합이 결정함. 일본에서는 1%를 받으면, 거기에 50% 정도를 중도매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의 차이가 있음.

5) 질의 : 일본의 매참인이 점포가 있는가?

- 사무실은 있지만, 점포는 없음

6) 질의 : 정산회사를 설립해서 중도매인의 도산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가?

- 경영이 어려워지면 지급일이 자꾸 늦어지게 될 것이며, 시스템에서 수치화되어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매법인 결제 담당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도매인 조합에 사전에 얘기를 해서 대비함. 부도가 났을 때는 보증금으로 처리하던지 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었음
- 요코하마에서 시스템 구축 이전에 청과 중도매인들이 신용조합 만들어서 은행하고 연계해서, 은행업무 + 대불 / 정산업무를 같이 해줬으며, 결제자금이 부족할 때 소매인들에게 대출도 해줬는데, 중도매인 / 매매참가인에게 불량채권이 생겨서

신용조합 자체가 도산한 경우가 있었음. 은행업무와 대불업무를 동시에 못하게 하는 시에서 지도까지 나왔음. 이래서, 전산센터, 정산조합의 구조로 만들어진 것임.

7) 질의 : 정산회사의 운영 수익 구조는 ?

- 일본에서도 정산회사를 통해 돈을 벌겠다는 데는 없음. 쓰끼지 시장은 운영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서 분담을 하기 때문에 이익은 zero임. 오파 시장의 정산조직도 이익을 남기는 구조는 아님

8) 질의 : 중도매인의 거래한도 책정은?

- 일본에서는 조합에 가입하면, 4일 째 물품대금을 지불을 하기 때문에, 3일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구조임.
- 거래금액의 1/1,000을 조합이 부담하고, 도매법인이 또 위험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지만, 청과의 경우, 극히 일부이지만, 공제조합을 이용하여, 관련된 업자들이 돈을 내서,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도 있음.

7. 오타(大田)시장 청과물 정산방식

가. 정산 개요

- 시장거래의 90%이상이 대불형식을 통해 대금이 지불됨
- 매매참가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3일 이내에 대금을 도매법인에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도 많음
- 오타시장에는 중도매인조합 4개, 매매참가자조합 13개가 있으며, 도매법인이 조합과 대금결제 계약을 맺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매참가자는 조합에 가입하여야 거래할 수 있음
- 시장 내 정산시스템은 도매법인이 중도매인에게 물건을 팔고 중도매인(매참인)이 소속한 조합에 대금을 일괄 청구하면, 조합은 중도매인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중도매인(매참인)을 대신하여 도매법인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체계로 되어 있음
- 중도매인이 출하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불이 아닌 개별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별거래 및 대금결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음
- 조합의 보증한도는 정확하게 보증금 또는 예치금의 1배 만큼만을 보증하며, 그 이상을 넘어가면 거래를 중지시키거나, 거래를 원하는 경우, 외상매출금을 갚거나, 추가로 현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있음

나. 정산조합 및 神田사무센터

- 정산 처리방식과 시스템 관련 내용은 도쿄도 조례로 결정되어 있음. 도쿄도에서 만든 조례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례임. 산지에서 도매법인에서 경매를 붙여서 파는 경우, 즉시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음. 즉시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매가 끝나고 지불하는 특약 (다음날 또는 2 ~ 3일 후)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 조례에서 보증금을 걸게끔 정하고 있음. 보증을 걸 수 있는 제도를 조합에서 정해서 운영하고 있음.
- 정보처리센터는 단순하게 자료만 집계하고 있으며, 조합에서 모든 업무를 하고 있음.
- 도매법인에서 물건을 사면, 조합이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중도매인에게 받는 구조로 되어 있음. 따라서 조합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먼저 지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도매법인에 안정적으로 지급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임.

- 오파시장의 청과정산조합은 보증금의 운영방식에 따라 4개 조합으로 분리되어 있음

조합명	참여 중매인수	보증수단	보증금/예치금 규모	보증금/예치금 초과시
신칸다(新神田) 조합	70명	자기앞수표, 예금 등 예치금	6일분	즉시 거래 중지하나, 신칸다조합을 제외하고는 예치금 방식이 아니라서, 실시간 파악이 안됨
東青御 조합	100명	현금 보증금	7.5일분 (거래규모 작은데는 안받음)	
二十一 조합	20명	은행보증, 예금 잔고 등	6일분	
大田中 조합	10명	현금	6일분	

다. 데이터센터

- 오파시장은 도매법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들이 투자해 정보처리센터(2005년7월)를 설립
- 시장의 공급 물량증가에 반해, 수요의 감소로 시장내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설립
- 처음에는 결제기능까지 고려했으나 운영자금문제로 실행하지 못하고, 현재는 거래금액 등 대금결제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하여(수집), 중앙처리(가공)한 후, 각 조합에 통보하는 정보제공(분산)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음
- 매매참가인, 소매인 등 영세 상인들의 비용데이터를 조합에 제공하고 있음
- 시장의 모든 조합이 공동으로 정보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3명의 인력으로 정보센터를 운영

라. 오파정산시스템 및 조합에 대한 질의·응답

- 1) 질의 : 일본에서는 산지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도쿄도의 조례에 출하자를 위한 정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의문임
 - 산지에서 단체들이 구성되어서, 시장에 “이 가격으로 팔아주시오“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트렌드임.

- 일본에서는 산 사람이 지불하는 책임을 지는, 사는 사람이 보증을 하는 것이 rule 로 되어 있음
- 정산조직은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조직이지만, 현금의 집금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고, 정산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회사가 담당하지만, 정산회사가 없는 경우는 조합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게 되는 것임.
- 조합에 구좌를 두고, 조합에 입금시키고 있음. 조합에서 집금을 하는데, 대불에 필요한 보증금, 당좌예금, 예치금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돈을 더 내게 해서 보증금이 나 예치금의 1배를 넘는 대불은 안하고 있음
- 예치금을 정할 때는 그 업자가 도산했을 때 얼마나 지불이 가능한지도 고려해서 정하고 있으며, 매일 매일 판매 금액이 부족하면 현금으로 바로 받음. 즉, 차액을 바로 현금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2) 질의 : 갑자기 물량이 3배로 뛰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가?

- 오파시장에서는 6일간의 거래규모가 3배로 뛰는 경우가 있음. 1년간 업자의 거래량을 따져서 6일분을 반더라도 3배로 뛰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턱없이 부족할 것인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상매입금 / 미지불금을 매일 매일 체크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음.
- 예치금보다 확 뛰는 차액에 대한 부분은 현금으로 넣어야 됨. 그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현금으로 받음. 물건을 사고 결국 6일 후에는 현금으로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넣는 것에 대해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음. 매일 매일의 외상매입금, 거래금액을 조합에서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음.

3) 질의 : 4개의 조합 모두 예치금이나 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할 때는 무조건 현금을 추가 입금해야 결제를 할 수 있는 건지?

- 보증금은 3개월에 한 번씩 조정하기는 하지만, 신칸다 조합에서는 매일 매일 거래금액을 확인해서 보증금을 넘는 거래 금액은 중지를 시키고 있음. 다른 조합에서도 원칙은 그렇게 해야 하지만, 모니터링은 못하고 있음. 거래 내역과 보증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지 않는 조합의 경우에 6일 후 대금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현재 시작되고 있음.

- 4) 질의 : 완납장려금을 도매법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정산조합이 받은 완납장려금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 완납장려금의 1%는 조례에 결정되어 있음. 도쿄도 정산관련 법규는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음. 이중의 30%는 조합에서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음. 시장법에 30%, 30%, 40%가 정해져 있음.
- 5) 질의 : 중도매인들에게 완납장려금 이외로 거래 대금의 0.1% ~ 0.2%를 위험관리기금으로 받고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 정산조합에서 도매법인에 지불을 잘하면, 도매법인이 정산조합에 장려금을 지불하고, 일부를 중도매인에게 내려주고, 중도매인도 매참인 / 소매업자가 잘 지불하면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지급함. 일부 위험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충분한지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숙고하고 있는 상황임
 - 운영방식은 조합마다 틀림
- 6) 질의 : 오파시장은 4개의 조합별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필요할 텐데, 완납장려금으로 해결하는지, 따로 조합비를 걷고 있는지 ?
- 매월 조합에서 정해진 금액을 징수하고 있음. 조합에 따라 다른데 동일하게 받는 경우도 있고, 거래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받을 수도 있음.
- 7) 질의 : 오파시장의 청과 중도매인이 몇 명 정도 부도나서 나가는지?
- 매참인은 부도나는 경우가 있었지만, 중도매인이 부도나는 경우는 없었음. 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조합에서 모니터링하고 예측하고 사전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도매인이 어려워지면, 다른 중도매인과 합병 등을 통해 부도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시킴.
- 8) 질의 : 위험관리 - 내부 리스크 (횡령, 허위거래), 외부 리스크 - 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 신칸다 조합에서는 2중으로 복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금액이 안 맞거나 하면 체크하기 때문에, 그럴 위험성은 없음. 조합에 가입한 중도매인의 거래 내역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위험성은 적음.

9) 질의 : 한국에서는 매참인, 소매업자 조합이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도매인이 부도가 날 가능성이 항상 있는데, 조연해줄 바가 없는지?

- 양관점 등 큰 수퍼에 보내는 것은 정산회사를 통하지 않고 가는 것이므로, 판매하는 측에서 위험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일본도 동일한 상황임
- 오파 시장에서도 매참인 / 소매인 조합에 가입되어야 거래를 할 수 있음. 오파 청과 시장의 매참인 + 중도매인 조합은 13개가 있음. 조합에서 부여한 매참인 / 소매인 코드가 부착된 모자를 착용한 사람들에게만 판매하는 것이 기본임.

10) 질의 : 한국의 경우, 10/20/30일 또는 15일 / 30일 거래 내역을 관리하고 보증금을 거기에 맞추는지?

- 매일 매일 데이터가 나와서, 최근 6일간의 거래금액을 업데이트함. 매일 매일 산금액, 외상매입금, 예치금을 매일 매일 비교해서 체크해서 나눔.

11) 질의 : 왜 수요일에 쉬는지?

- 도쿄도에서 매년 초에 쉬는 날자를 정해서 지정해 줌. 20년 전에는 토/일에 쉬었는데, 20년 전에 수요일 / 일요일 쉬게 하고 있음. 이틀 연속 상품이 안 나가서, 금요일에 물건을 사면 3일치를 사야하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정산회사가 송금을 해주지는 않으나, 정산회사에서 대금을 수취하는 행위는 하고 있음.

12) 질의 : 일본에서 중도매인 채권관리를 위해 특별한 장치가 있는가?

- 시가 50%정도 투자하고 적자가 나는 경우가 있음. 결국은 시가 대불해주고 손해를 보지만, 시장 장은 어떻게든 받아내는 조치를 취함.
- 업체별로 거래량에 따라 3일 ~ 7일까지의 보증금을 받아내고 있음. 거래량이 한도 초과가 되었을 때 막아야지, 한도 초과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보증금만큼만 한도를 주어야 함.
- 위험관리는 보증금 한도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위험은 없는 것인데, 보증금 대비 3배, 5배의 한도를 주게 되면 위험관리 장치를 둘 수 없다. 전혀 장치가 없음.

13) 질의 : 성수기에는 3배 이상의 한도를 주려고 하고 있음

- 오파 시장에서 10년 전에 문제가 생겼는데, 중도매인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었음. 결국은 정산조합이 6천만 엔을 대불 했는데.. 그 때 임원들이 각출해서 해결한 적이 있음.

14) 질의 : 일본에서도 중도매인 점포에 대한 권리금이 있는지?

- 있음. 공식적인 것은 없음.

15) 질의 : 일본에서 정산회사가 설립된 이유

- 일본의 도매시장 설립은 산지 출하대금을 잘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었다.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직접 거래를 했을 때, 어느 한곳에서 막히면 결국 산지에 피해가 가니깐, 정산회사가 대불해주고 산지를 보호해주기 위한 목적임

16) 질의 : 정산회사의 설립시기 - 시장이 설립되면서 생긴 것인지? 시장 운영 중에 생긴 것인지?

- 조합이 먼저 결성이 되고, 나중에 정산 관련 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설립 됨. 지금은 정산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음.

마. 가락시장정산(주)에 대한 제언

- 결제를 청구서 하나로 이뤄지면 여러 군데 지불하는 것이 통합적으로 서비스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조합과 사무센터의 부가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것임.
- 사무센터는 조합으로부터 위탁 서비스료를 받고 있음. 사무센터는 모두 컴퓨터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1명이 있음.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필요한 것이 모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음.
- 27년전의 정산회사의 설립 노하우를 설명 드리면, 소매/중도매인/도매법인의 자금 흐름을 통합해서 정산이 이뤄질 수 있는 있는, 약간의 수수료를 내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동인을 갖고 추진한 것임.

8. 일본도매시장의 정산방식 유형 정리

- 대불방식(완전대불방식과 불완전대불방식), 정산회사방식, 개별정산방식, 전자결제방식, 선불결제방식으로 구분됨.

정산방식	의의	비고
조합대불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매인조합이 청구일로부터 3 ~ 4일 내에 도매법인에 결제하는 방식. • 3일째에 지불이 관례이나,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음. • 중도매인이 도산했을 때 정산회사가 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대불 : 중도매인이 도산해도 조합이 대불해주기 때문에 도매법인의 리스크는 없음 (도매법인은 중도매인 여신관리를 하지 않음) • 불완전대불 : 중도매인이 도산하면 조합이 대불해 주지 않음. 그럴 경우에는 도매법인이 직접 중도매인에게 소송을 제기함 (도매법인에서 여신관리 전담팀이 운영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이 무한책임을 지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의 부도사고로 조합의 대불금에 대해 조합의 임원이 변상하는 일이 발생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쿄도 조례로 완납장려금(1%)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3% 조합운영비 - 0.3% 조합적립금 (위험기금) - 0.4% 조합원 장려금 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 30%, 40%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정산조합과 중도매인간에 누가 주도권을 갖는지? 위험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가변적임
정산회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법인이 정산회사에 대금을 청구(지불일람표를 제시)하고, 정산회사는 중도매인에게 청구하고 중도매인의 입금 한도 내에서 대금을 결제함 • 중도매인의 입금액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므로 도매법인이 대금회수 리스크를 가지게 됨 (조합대불의 불완전대불과 유사함) • 과거 대불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없음 	
개별정산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개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중도매인의 대형구매처들과의 거래에 따른 위험이 도매법인에 전가되고, 중국적으로 출하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구조임 	
전자결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 착수시점에 은행 IC 카드를 넣고 은행 잔고가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구매금액과 통장잔고를 동시에 확인해서 거래 즉시 바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가장 안전함 • 토지기현 우쓰노미야 꽃시장에서 운용하고 있음(이때도 완납장려금을 지급함) 	
선불결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마모토현 우에끼시장은 오후 6시부터 거래를 하는데, 거래 이전에 회사창구에 예상되는 대금을 사전에 예치하고 거래 후에 차액을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가. 일본도매시장의 정산방식 트렌드

- 조합방식(무한책임)에서 회사방식(유한책임)으로 전환 중에 있음
- 정산회사의 경우에는 시에서 투자한 회사방식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시를 제외한 출자자로 구성된 주식회사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

나. 일본도매시장의 정산 사고 사례

- 정산회사가 대불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한 경우로, 가와사키시에서 50% 출자한 청과물정산회사에서 30억 엔(300억 원)의 적자가 발생, 시에서 회사와 역대 임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고 현재 구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등 문제점이 있음.
- 오파시장의 중도매인이 부도를 내고 조합이 이미 대금 5천만 엔을 지불한 상태로 조합의 임원에 배상책임을 묻는 등 문제가 있었음.
- 도쿄도 북아다찌시장의 동경화훼부(東京花卉)에서 부도소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일시에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고의로 부도를 일으켜 1억 엔의 손실을 발생함.

다. 가락시장정산(주)에 대한 자문

1) 서울시 관리공사에서 50% 지분 참여의 문제

- 시가 50% 지분을 넣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음. 가와사키시처럼 중도매인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 시가 개입되어 있으니깐, 잘 지키지 않는,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시에서 그 책임을 도매법인에 전가함에 따라, 도매법인이 파산한 사례가 있음.

2) 중도매인 조합이 없이, 정산회사에서 모든 위험을 책임지는 문제

- (조합이 없어서) 중도매인이 정산회사에 돈을 지불 못할 위험성이 있음.
- 중도매인이 출자한 위험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딘가 막혀서 흘러가지 않을 것임.

3) 정산수수료와 운영인원의 문제

- 정산수수료 0.04%는 너무 적음
- 운영인원 : 12명 정도가 적당함 (320명의 중도매인을 고려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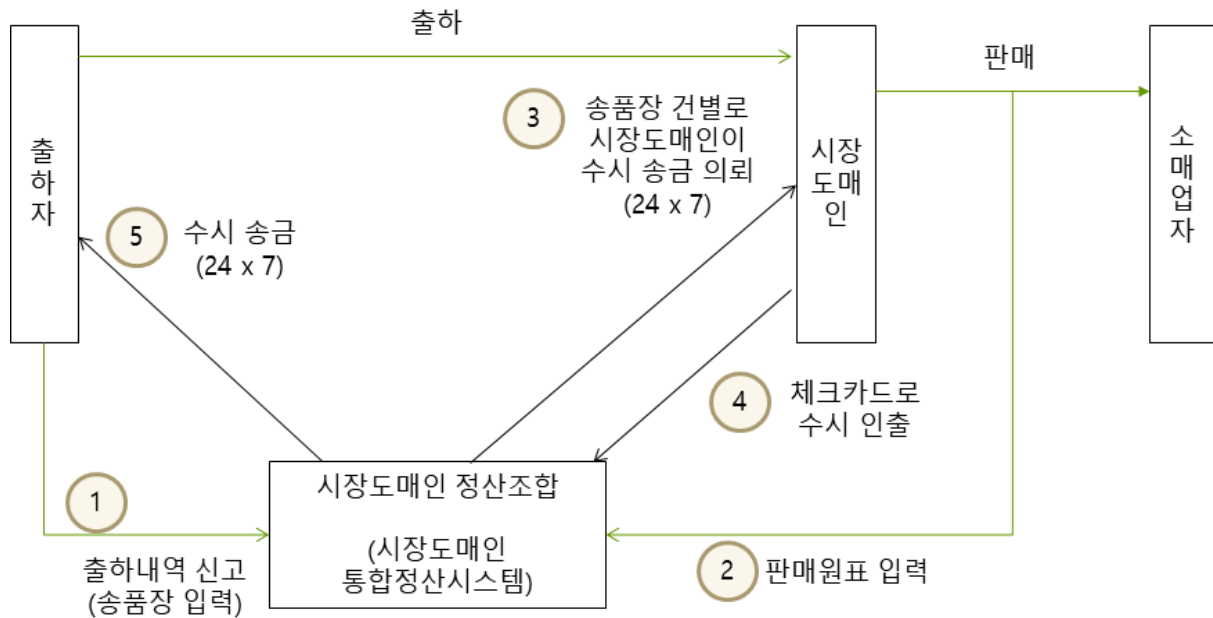
4) 보증금이 적고, 보증금 몇 배의 한도의 문제

- 3일 평균 거래금을 보증금 받고 있는데, 보증금이 적음. 7일째까지 지급을 유예해 주기 때문에 7일분을 받아야 함.
- 보증금의 3배를 거래한도로 취서는 안 되고, 보증금만큼만 거래하게 하고, 그 한도를 넘어가면 일시 거래중지 시켜야 함 (100개 중도매인이 3배까지 해먹고 다 도망가면 정산회사는 붕 뜨는 것임). 전산시스템으로 다 관리 될거라면, 보증금만큼만 거래하고 하고 그 이상이 되면, 거래를 못하게 해야지 왜 3배까지 풀어놓는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음. 보증금 대비 몇 배수의 한도를 주면 그게 모두 정산회사의 결손금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

II. 가락시장통합정산조직 설립(안)

1. 프로세스 설계

가. 통합정산조직 설립 후 정산 방식



※ 출처: 본 연구용역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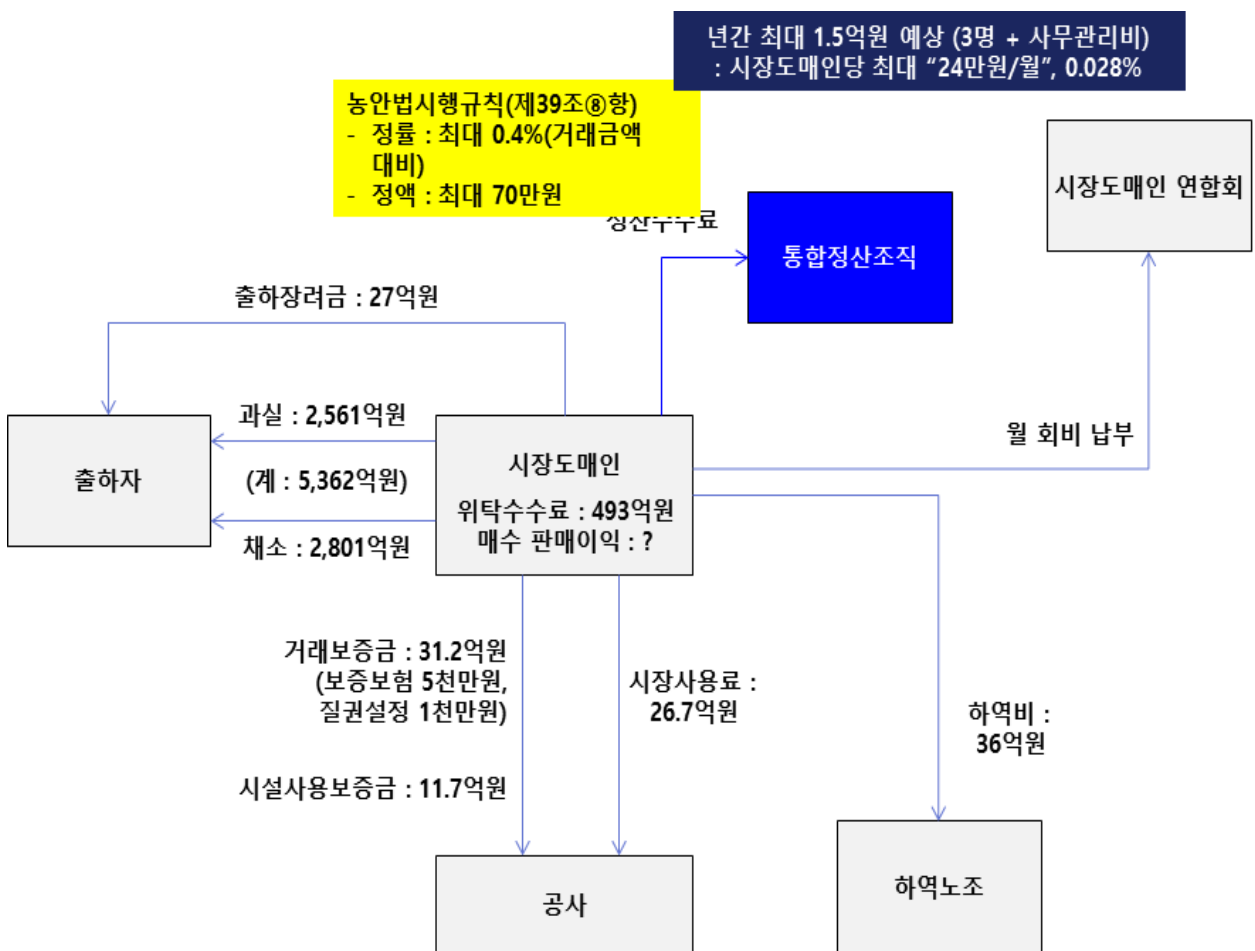
정산 방식	대금 결제 방식	
	정산조합 설립 전	정산조합 설립 후
일반 송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게 송품장 건별로 출하자 통장에 직접 송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도매인이 지급할 금액을 모아서 시장도매인 개별 기업은행 통장에서 체크카드로 통장에 있는 만큼 빼내감 (잔액 부족 시 마지막 송품장부터 차례대로 지급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금대행 : 체크카드로 인출된 금액 송금 지불대행 : 7일 초과한 미지급분 송금 (이자 발생 - 가락시장정산과 동일한 이자율 적용) 수시 송금 가능함
긴급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하자 · 수집상 · 수입상 요청 시 새벽 / 시장 쉬는 날에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 결제 (단, 은행 정산업무 시간 (22:00-02:00) 제외)

정산 방식	대금 결제 방식	
	정산조합 설립 전	정산조합 설립 후
선대금 · 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대금 송금 후 관련 증빙 갖추어 공사에 신고, 선대금으로 출하대금 정산 장기특약 - 장기특약 신고 후 일정 기일에 정산하고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대금/특약) 단기적으로는 관리대행 (출하대금이 정산조합을 경유하지 않고, 정산조합에서 지불 보증을 하지 않음) 정산업무 안정화 이후에는 송금대행으로 처리함 거래 신고소는 현행대로 유지

나. 통합정산조직 설립에 따른 예상 추가 현금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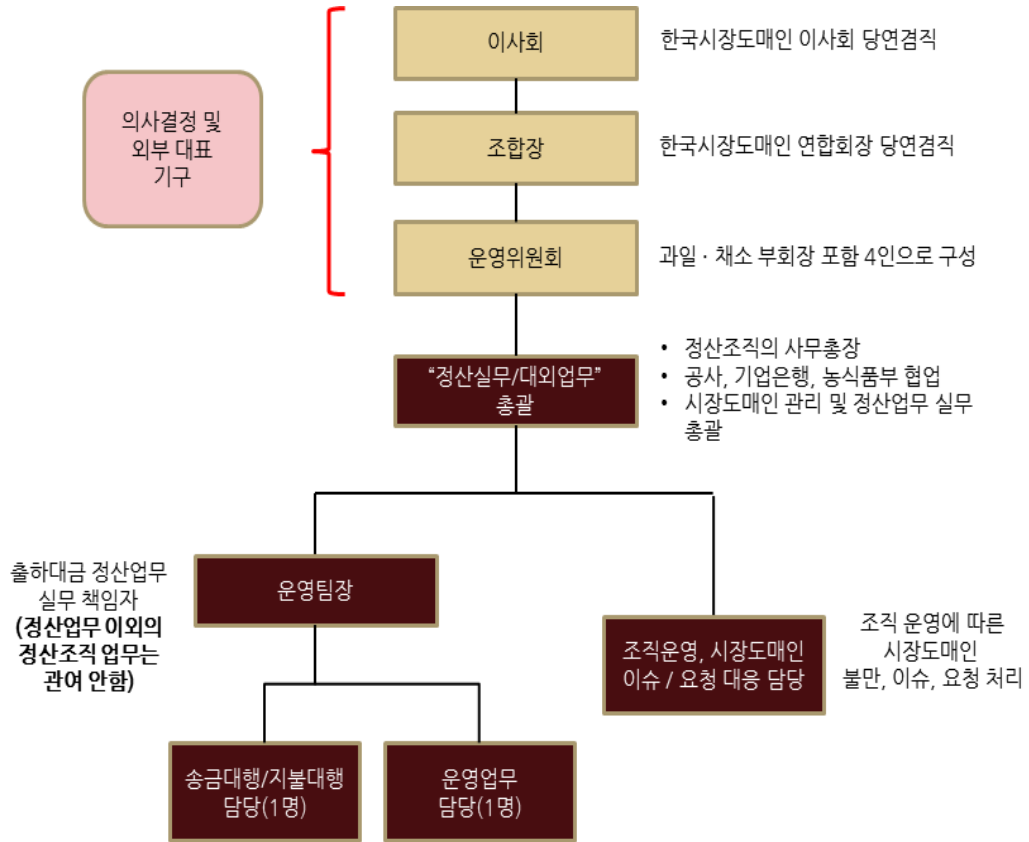
대분류	중분류	금액(억원)	비고
처음에 모으는 출자금 (모든 시장도매인 의무사항)	조합 출자금 (동일 지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당 2천만 원 4일차 이후 선지불 대행해야 할 최대금액으로 계산함
	보증금 (전년도 일일 평균치의 2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조정 기존 질권 설정된 32억 원 (인당 6천만 원) - 기업은행으로 이전 정산준비금 : 약 11억 원 (캐시카드와 연계하여 정산조합이 인출할 수 있어야 함)
	위험적립금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당 천만원 (금액을 정한 객관적인 계산식은 없음)
	실적분담금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억 원 이하 : 0원, 50억 원 ~ 100억 원 : 2천만 원, 100억 원 ~ 150억 원 : 4천만 원, 150억 원 ~ 200억 원 : 6천만 원 200억 원 초과 : 8천만 원
	합 계		30
한도증액 목적 (개별적 선택)	추가 담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담보는 1배의 한도 인정
	선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입금은 현금으로 넣은 것. 1배의 한도 인정 성수기, 특수, 대량 구매 등의 거래 불편함 해소
대손충당금 (위험적립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거래금액 비율로 거래금액 대비 일정률 월별 합계로 지급받음 (연간 1.5억 원 목표) 일정액 적립 (15억 원 달성 시 추가 징수 안함)

대분류	중분류	금액(억원)	비고
지급 지체 패털티	-	-	• 서울시도매시장 조례 58조 1항에 의거, 하루에 0.1% 징수
정산수수료 납부	-	-	• 연간 1.5억 원 (0.029%) : 월별 합계하여 지급요청



※ 출처: 본 연구용역팀 작성

다. 정산조직의 조직도



※ 출처: 본 연구용역팀 작성

라. 정산조직의 보증한도

구분		보증한도	비고
매수	매수한 내역 신고한 부분	-	-
위탁	판매한 내역 신고한 부분	• 보증금 * 2 + 선입금 + 추가담보 + 출하대금 지급전용 통장 잔액	-
가공공장 15일 특약 등	매수(위탁)신고한 부분	-	-
타 도매업자/시장매입	현금 매수(현금 매수없는 방향)	-	-

구분		보증한도	비고
정산수수료 납부	10일 이내	-	-
장기특약	10일 초과, 15일/30일/60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일 이내까지는 보증하지만, 10일 초과 특약은 보증 안하고, 대금정산업무만 수행 (‘출하자 <-> 정산조합 <-> 시장도매인 3자 계약 체결 후 정산업무 대행 	
시장도매인 대표 등이 판매자로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없음, 공사 및 정산조직에서 인정하지 않은 출하자에 대한 지급은 불가함 	원칙적으로 없어야 함

마. 실무진 상세업무 명세(안)

구분	상세업무	
정산실무/ 대외업무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산조합의 사무총장 공사, 기업은행, 농식품부 협업 시장도매인 요청사항 유관기관 보고 및 개선요청 정산조합 실무직원 채용 /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산업무 실무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산조합 자금의 입출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산조합 운영제도 입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장, 이사회, 상임이사진 대상의 보고/지시수행
운영팀장 (출하대금 정산 실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산업무 이외의 정산조합 업무는 관여 안함) 출하자 / 시장도매인 및 직원 정보 및 변경 관리 출하자 / 시장도매인 및 직원 문의 대응 출하대금 정산 및 시장도매인 지급 요청 전산시스템 사용자 요구 수렴 및 전산운영업체 요청 업무 규정, 제도 마련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하대금 정산 약관 /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정산조합 출자금, 보증금, 위험적립금 징수 및 관리 공사 및 농식품부 요청 업무 대응 정산업무 담당자 및 채권 / 정산조합비 회수 관리 출하대금 미지급, 지불대행금 미지급, 정산조합비 미지급 등에 따른 행정조치 (공사 협력)

구분	상세업무	
<p>시장도매인 이슈/요청 대응 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운영에 따른 시장도매인 불만, 이슈, 요청 처리 • (새로운 제도와 전산시스템, 다양한 제약조건에 따른 시장도매인, 직원, 사무장의 불편사항 수용 및 정산업무에의 반영, 정산시스템의 개선요구사항 수렴 및 운영팀장, 실무총괄에 보고) • 초기 정산금액 오류 발생, 신규 채용 직원의 업무 숙련도 미흡에 따른 업무 지원 • 공휴일 / 토요일 근무에 따른 정산업무 담당자 미근무에 따른 업무 지원 	
<p>송금대행/관리대행/지불대행 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하자별 정산금액 : 선도금, 미지급금, 일별 정산금액 체크 및 • 이슈사항 대응 • 출하자 정산금액 문의, 정산지급 내역 상세 문의 대응 • 시장도매인 정산내역 확인, 미지급내역 확인 및 조기 지급 요청 • 시장도매인별 출하대금 정산실적 정리 및 연합회 / 공사 / 농식품부 보고자료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금대행 / 관리대행 / 지불대행 실무 책임 • 미지급 출하대금 계산 및 지불대행 • 송금대행 / 관리대행 업무진행 및 시장도매인 사무장 요청 대응 • 정산자료 입력 / 출하대금 정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전산시스템 개선요구 대응 및 전산운영업체 협력
<p>운영업무 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조합 내부 총무 / 회계 / 자금 / 세무 업무 담당 • 대외 업무 협력 : 기업은행, 연합회, 공사, 외부 업무 협력업체와의 금전적, 제도적 관련된 업무 담당 • 정산조합비 징수, 정산조합 자금 / 통장 관리, 카드매출 발생에 따른 재무적 / 세무적 회계 업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도매인 미지급 결과 발생하는 지불대행에 따른 이자율, 연체, 채권 관리 • 조합 이사진, 연합회, 시장도매인, 공사, 농식품부 요청자료 작성 • 정산조합 대외 문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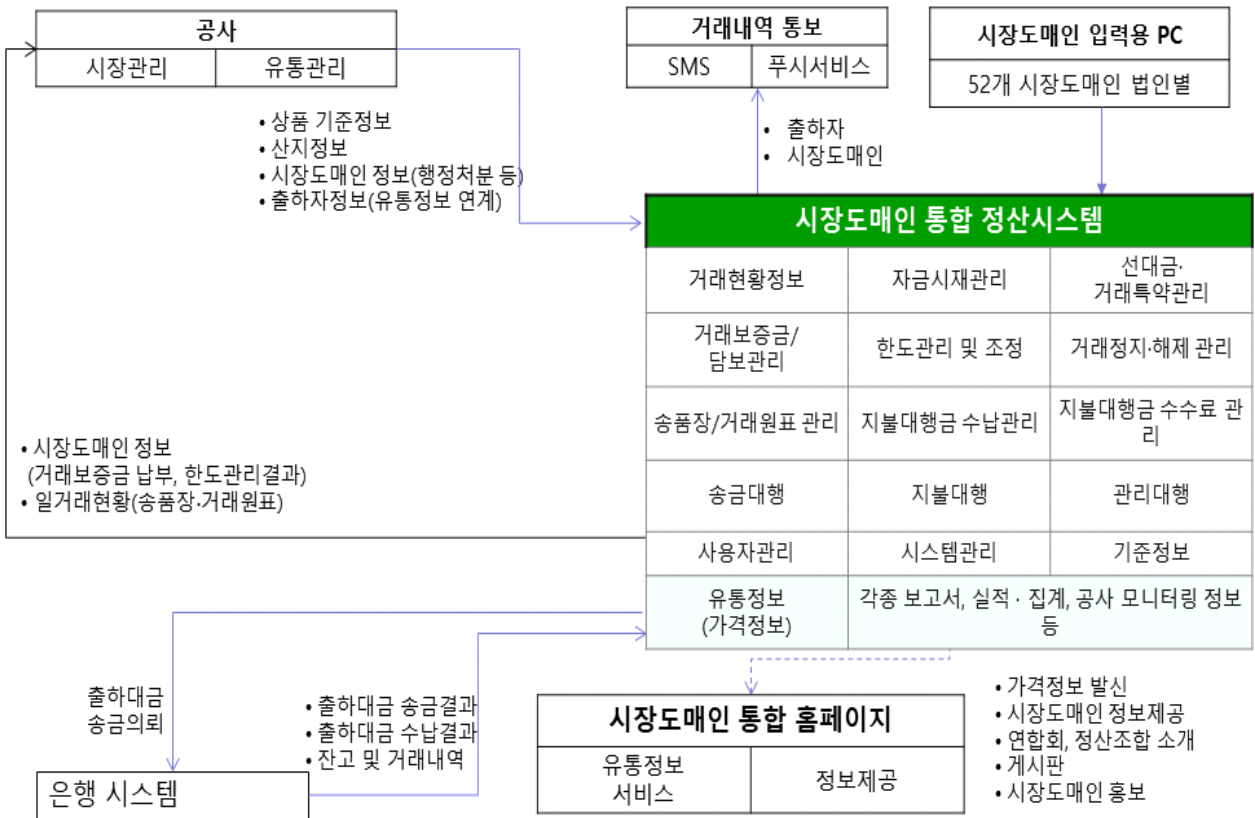
2. 통합정산시스템

가. 출하대금 정산 업무 개요

업무 FLOW						
소요기간		매수당일	판매당일	판매당일	입금당일	
등록	접수 마감	12:30	12:30	송금액확정 12:30 시장도매인 승인 13:00 체크카드 인출 13:00 출하자 수취 15:00	7일 초과 미지급분 송금 15:00	
	등록 마감 / 승인					
통지 대상/ 시간	대상		출하자	시장도매인 / 출하자	시장도매인 / 출하자	
	시간		12:30	15:00	15:00	
정정	접수 마감	승인이전까지는 사용자수정	송금이전까지는 사용자수정			
	등록	승인 이후 정정신청	송금 이후 정정불가 (송금 이후 정정 공사협의 필요)			
	확정	13:00	13:00			
	요청 양식	전산기재사항수정 신청서	전산기재사항수정 신청서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수는 판매원표 당일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원표 입력 당일지금이 원칙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불대행 수수료 발생 	
		기존의 거래 관행을 맞추고 시장도매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토요일은 12시 까지, 강서시장 휴일 (일요일, 명절 등) 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업무 처리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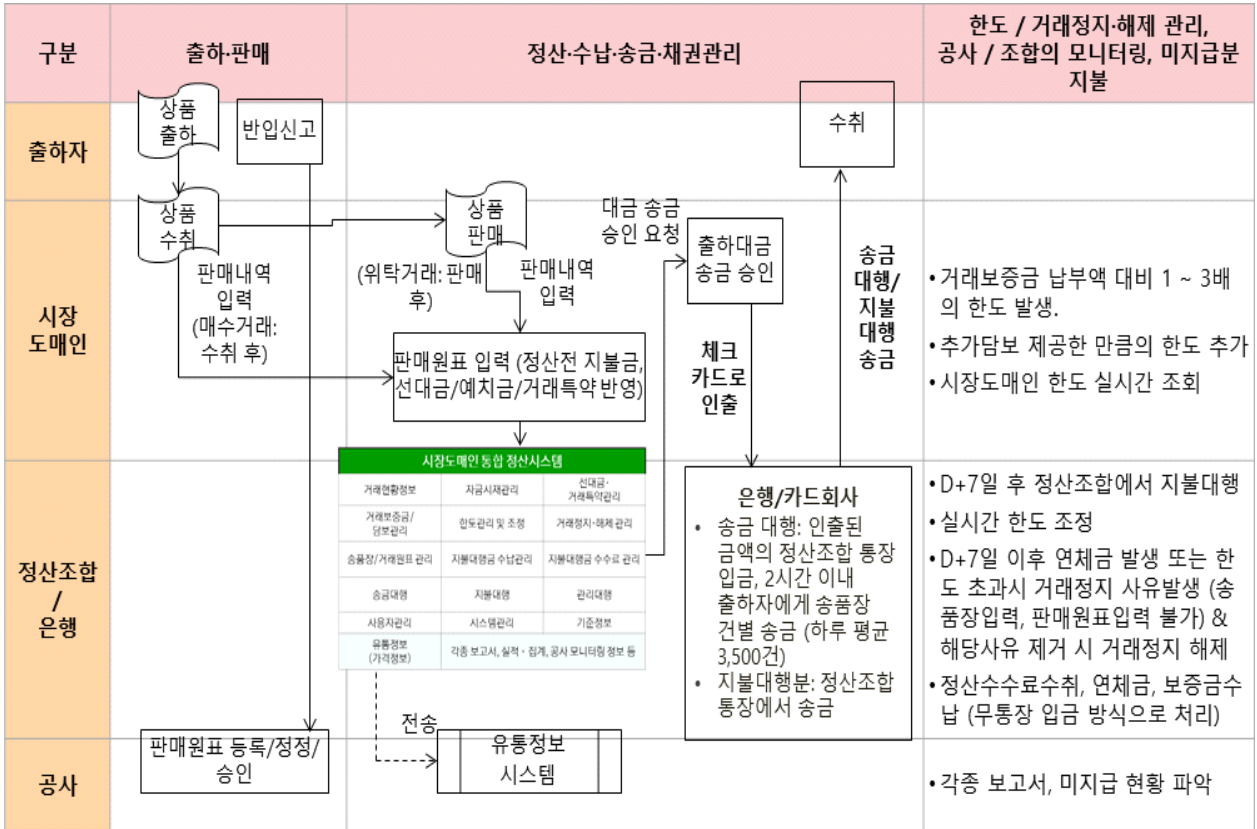
※ 출처: 본 연구용역팀 작성

나. 통합정산시스템 구조도



※ 출처: 본 연구용역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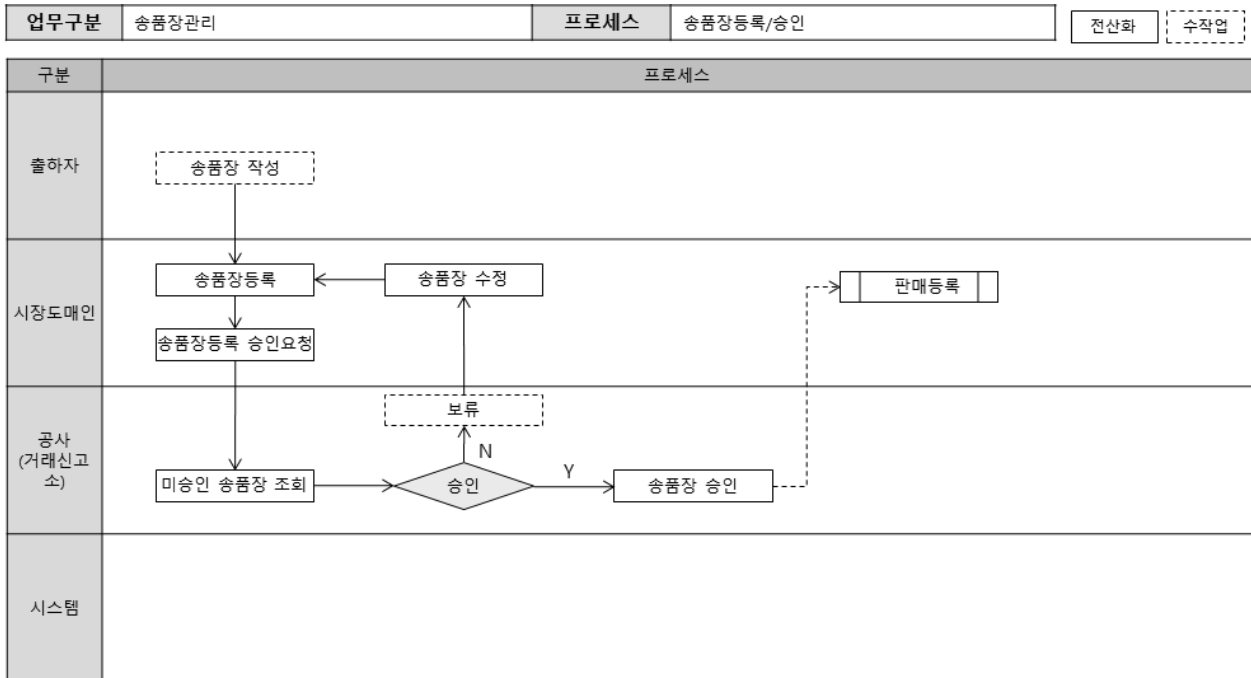
다. 통합정산시스템 기능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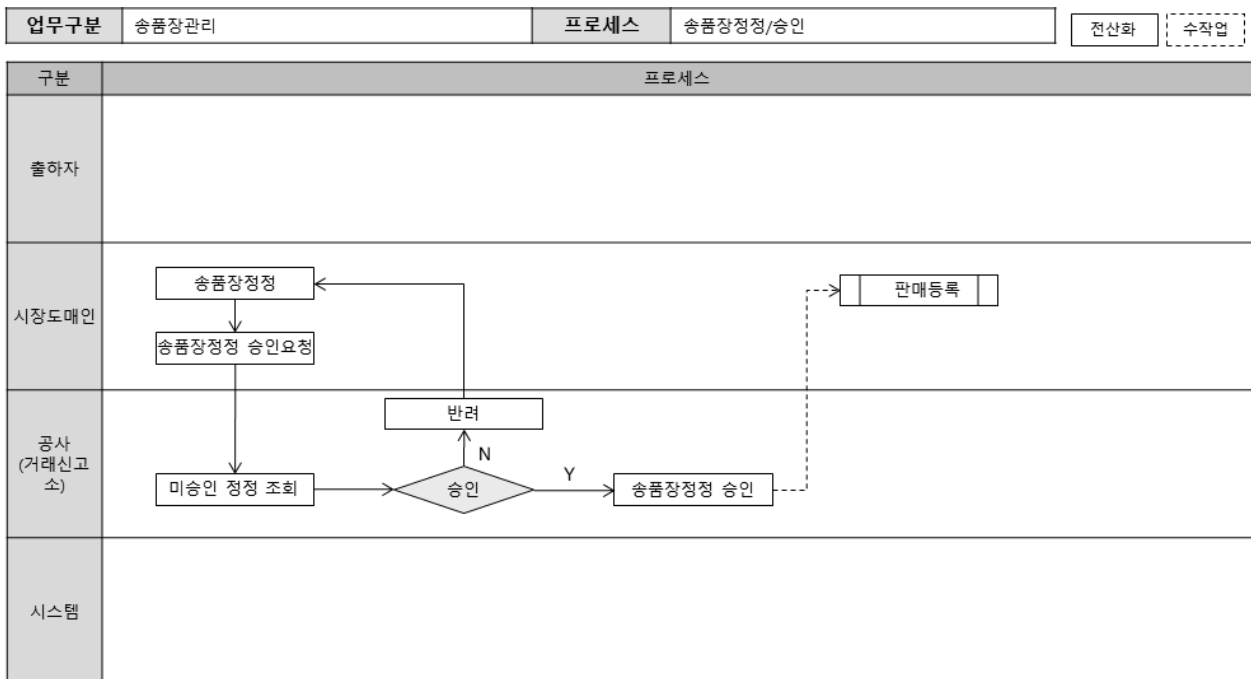
※ 출처: 본 연구용역팀 작성

라. 업무 프로세스 명세서

1) 송품장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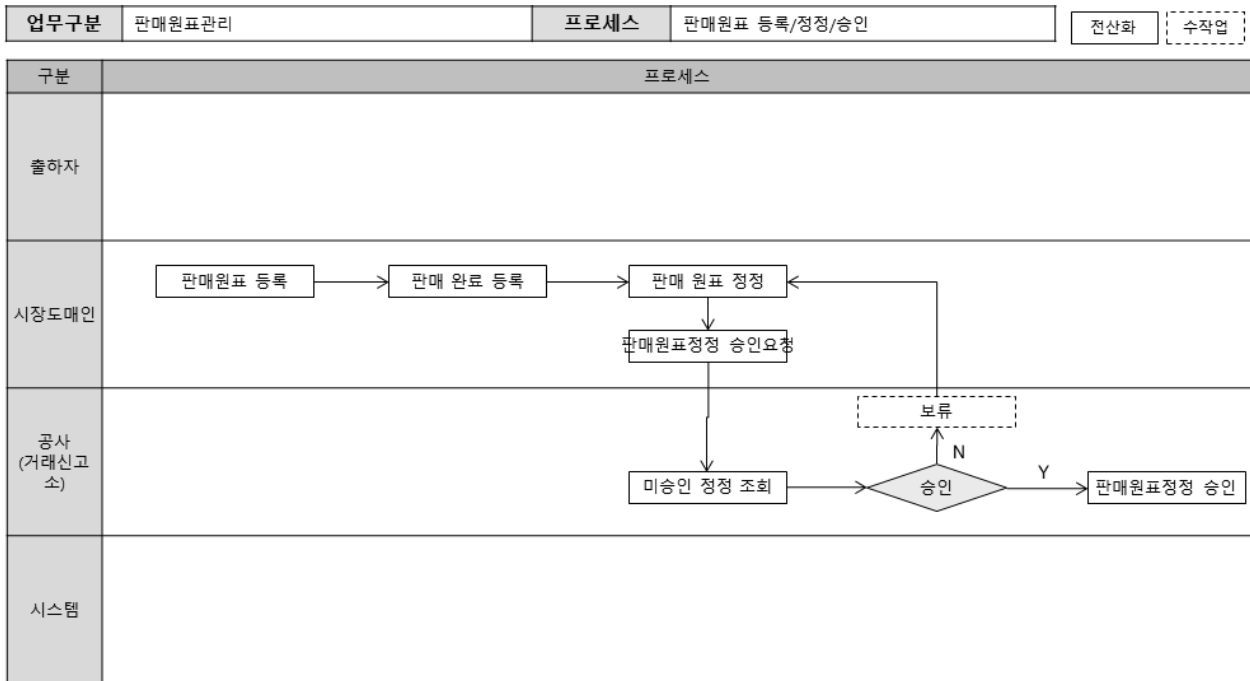


※ 출처:본 연구용역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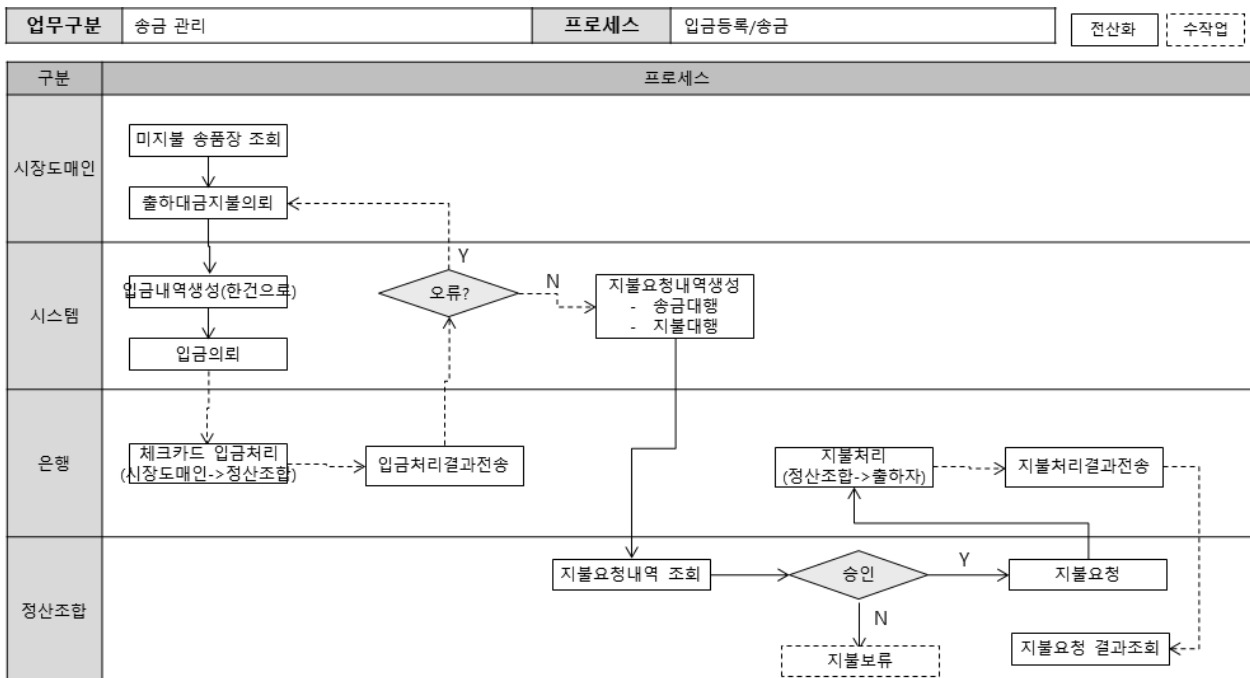
※ 출처:본 연구용역팀 작성

2) 판매원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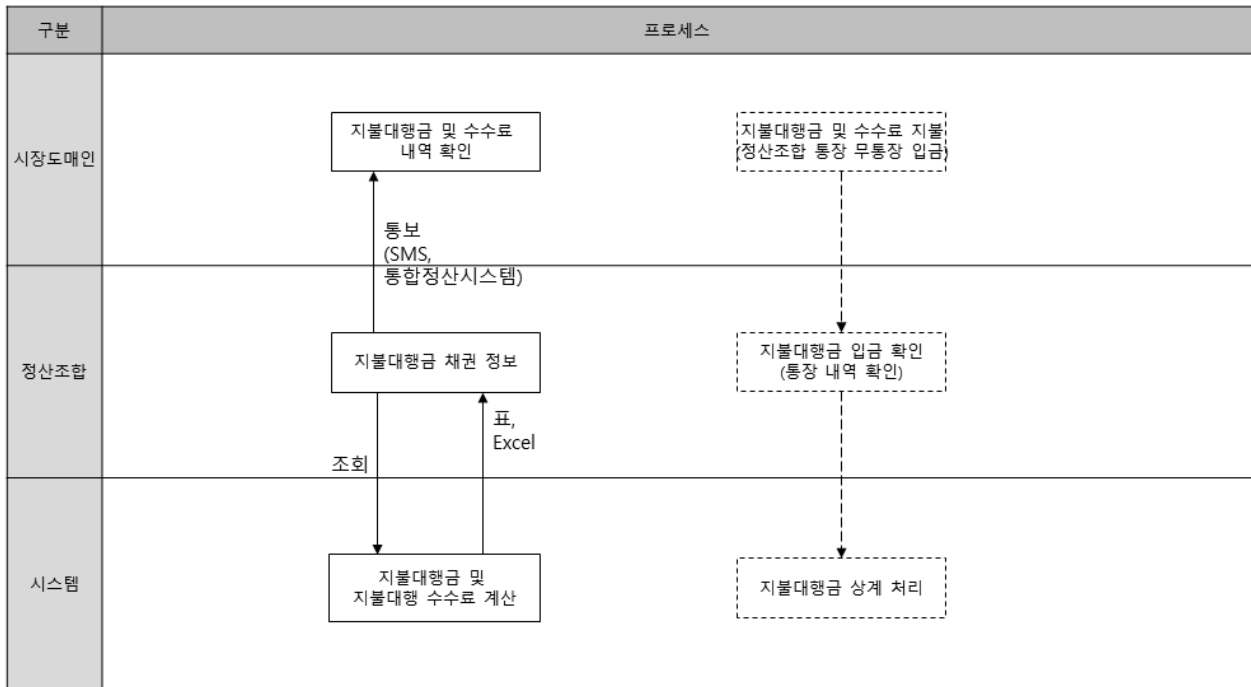
※ 출처:본 연구용역팀 작성

3) 송금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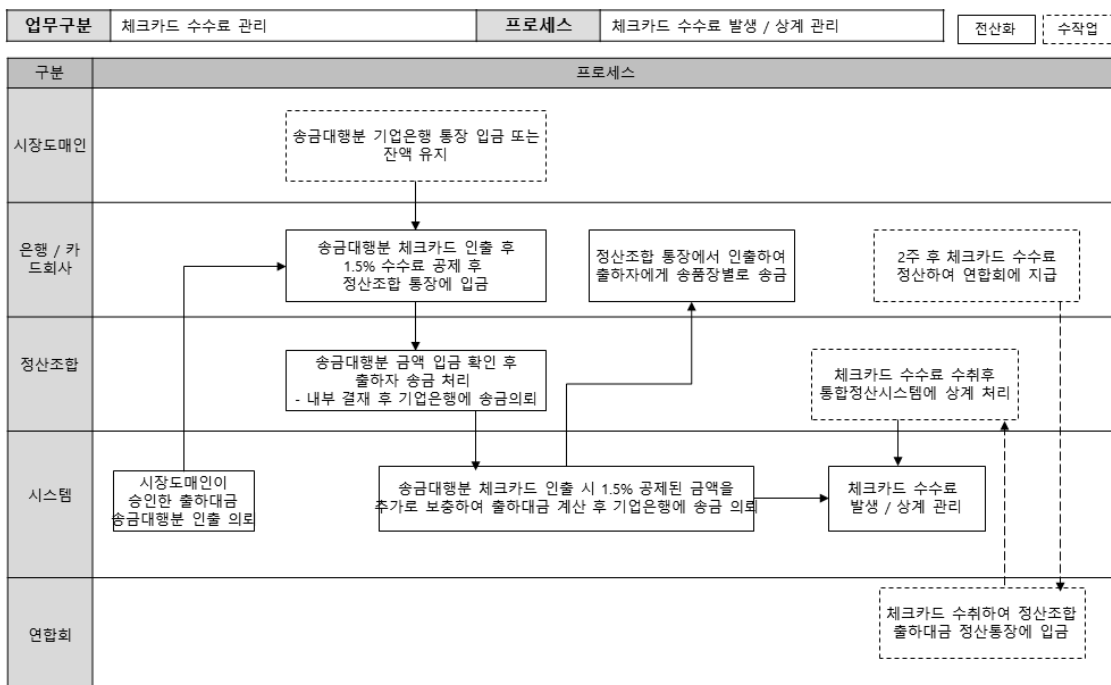
※ 출처:본 연구용역팀 작성

4) 지불대행금 수납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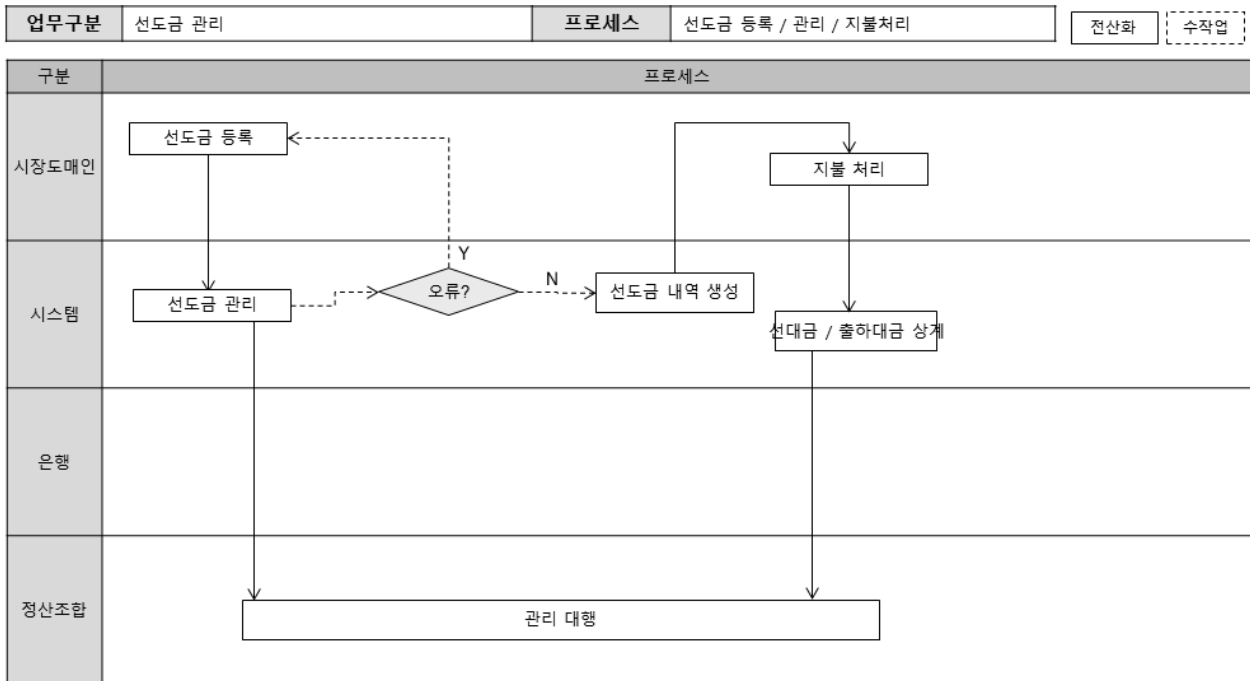
※ 출처: 본 연구용역팀 작성

5) 체크카드 수수료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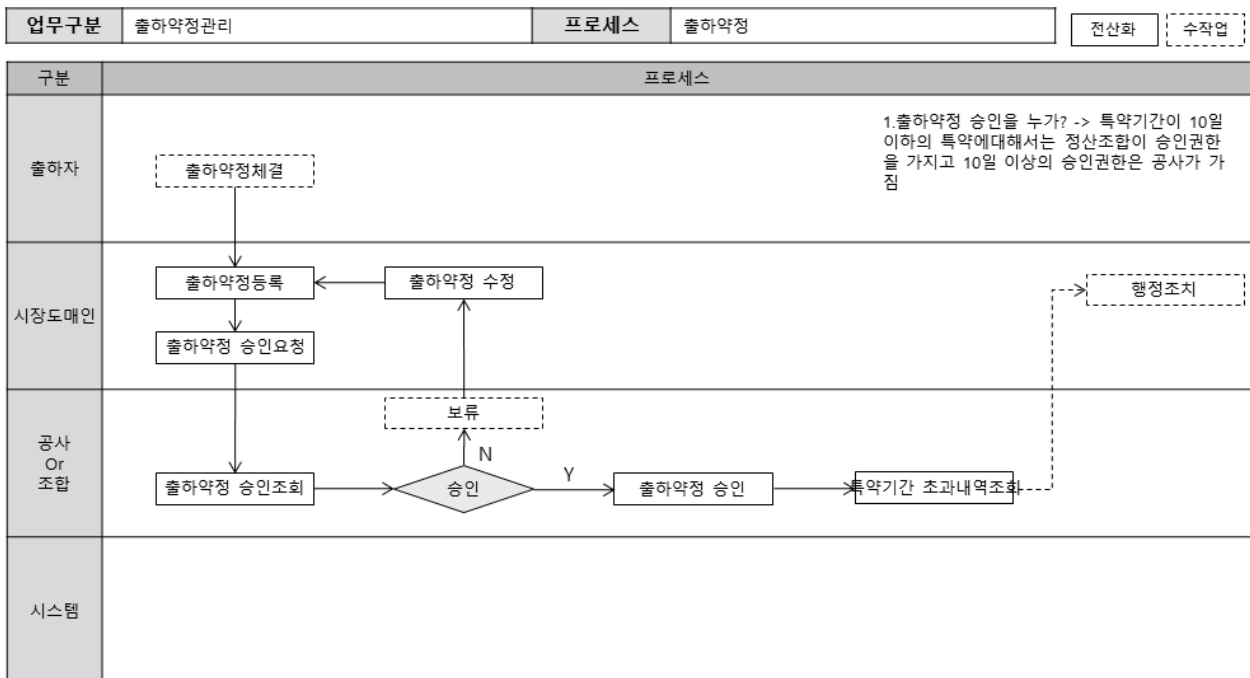
※ 출처: 본 연구용역팀 작성

6) 선도금 관리



※ 출처: 본 연구용역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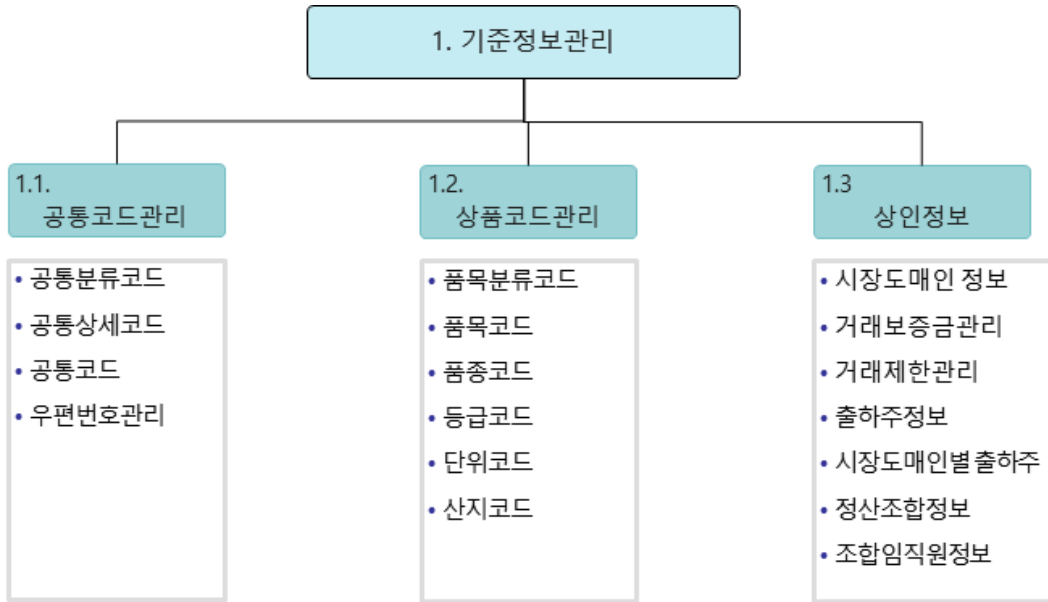
7) 출하약정관리



※ 출처: 본 연구용역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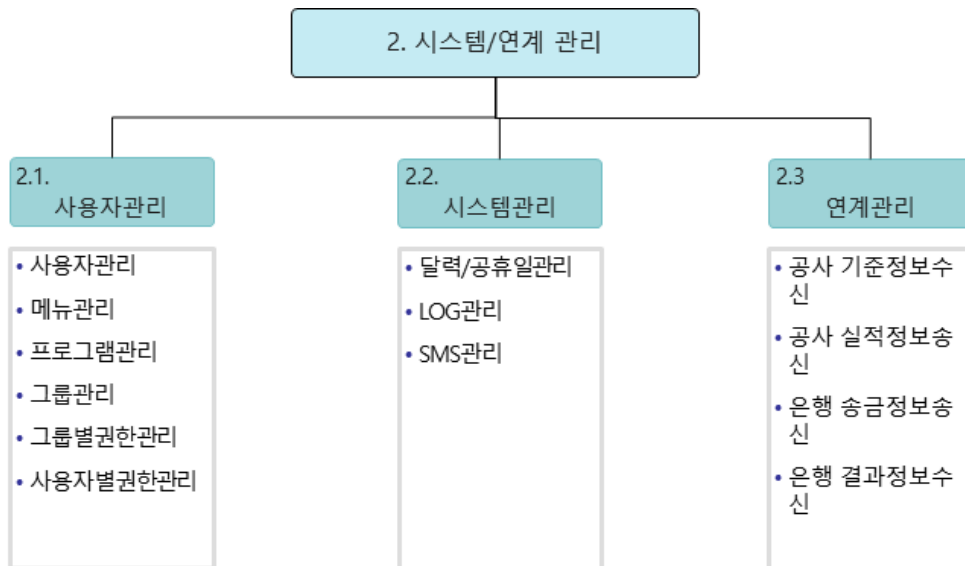
마. 기능 분할도

1) 기준정보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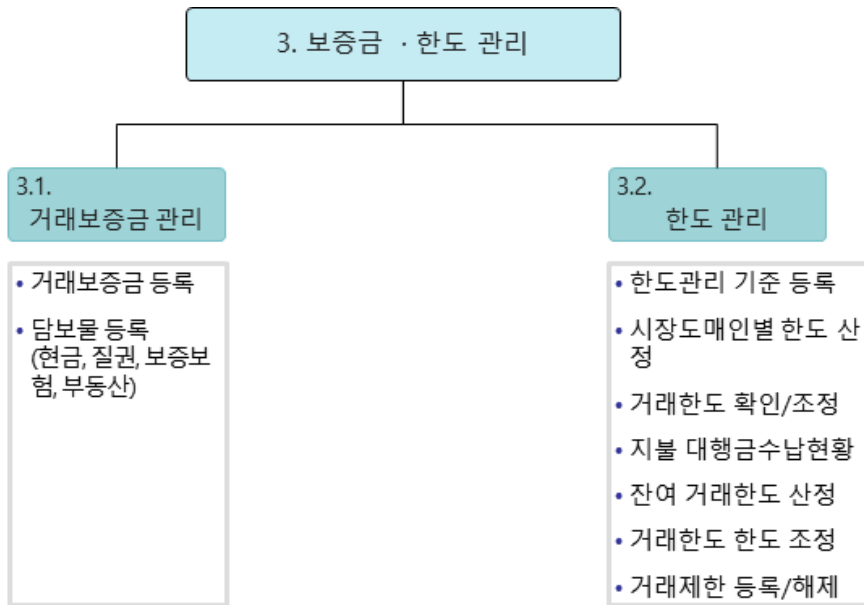
※ 출처:본 연구용역팀 작성

2) 시스템/연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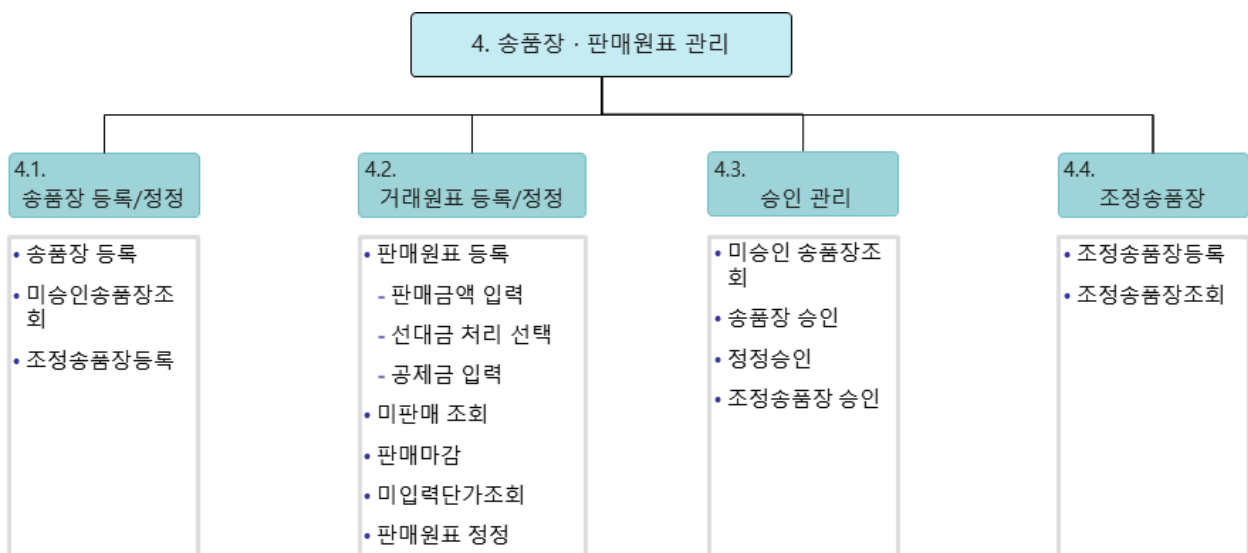
※ 출처:본 연구용역팀 작성

3) 보증금·한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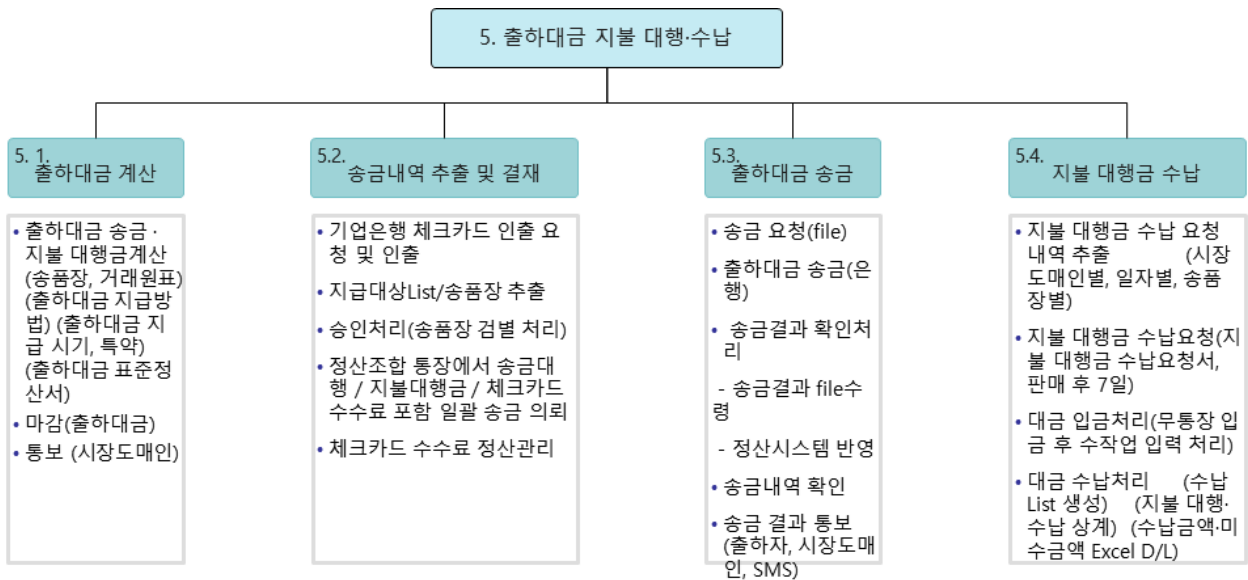
※ 출처: 본 연구용역팀 작성

4) 송품장·판매원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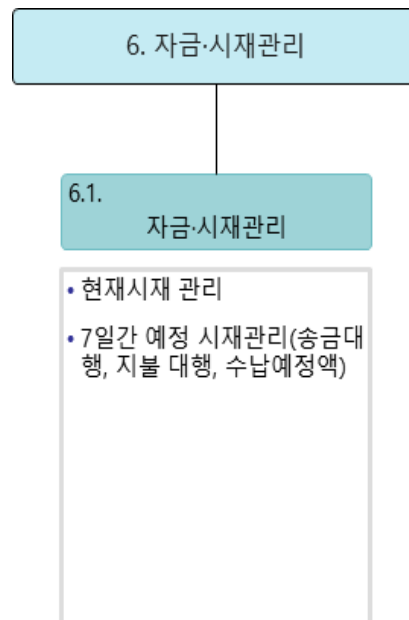
※ 출처: 본 연구용역팀 작성

5) 출하대금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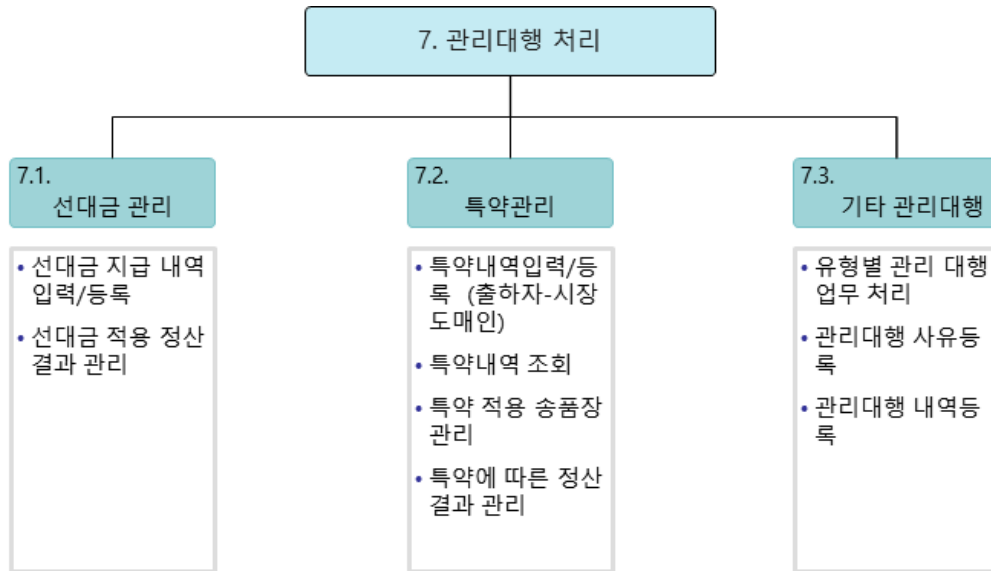
※ 출처:본 연구용역팀 작성

6) 자금·시재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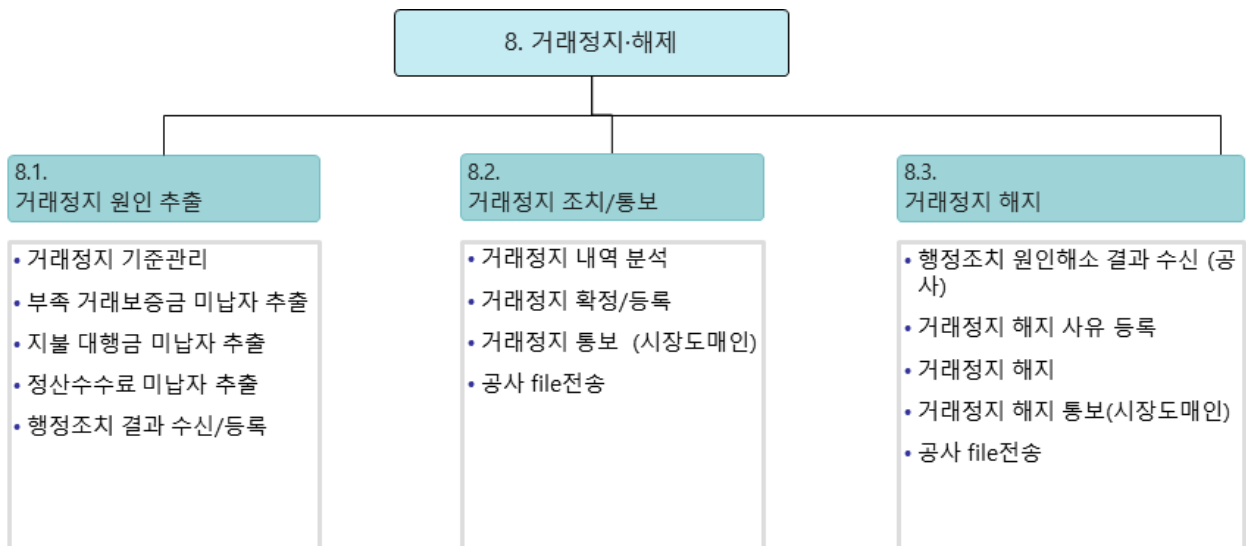
※ 출처:본 연구용역팀 작성

7) 관리대행 처리



※ 출처: 본 연구용역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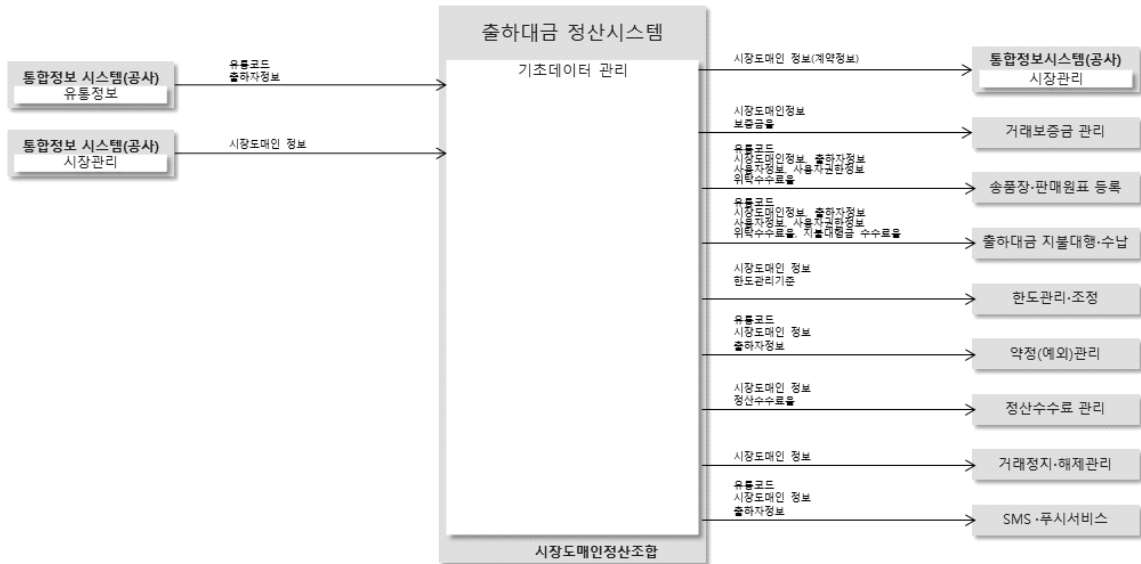
8) 거래정지·해제 관리



※ 출처: 본 연구용역팀 작성

바. 시스템 입출력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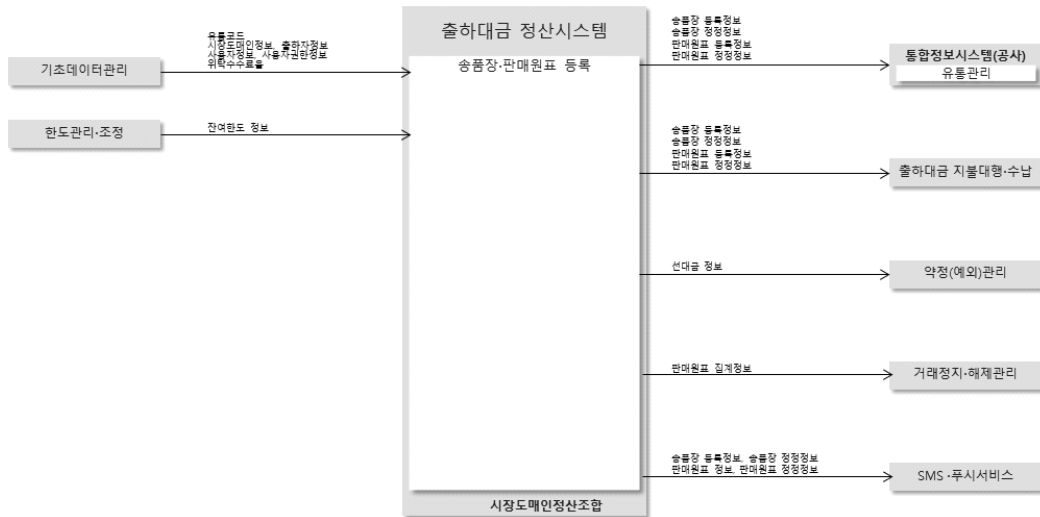
1) 기준정보



범례) 응용시스템 외부기관 :

※ 출처:본 연구용역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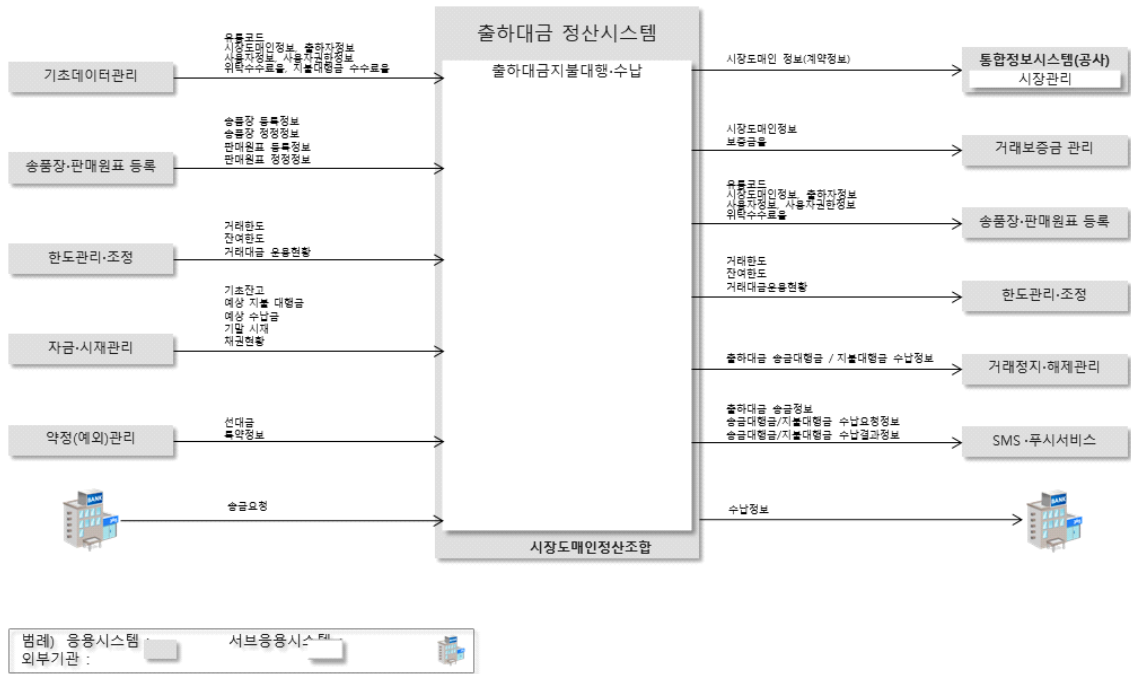
2) 송품장·판매원포 관리



범례) 응용시스템 외부기관 :

※ 출처:본 연구용역팀 작성

3) 출하대금 지불대행 수납



※ 출처: 본 연구용역팀 작성

4) 한도관리, 조정



※ 출처: 본 연구용역팀 작성

3.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가. 홈페이지 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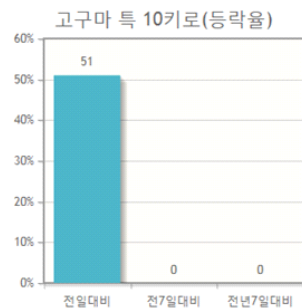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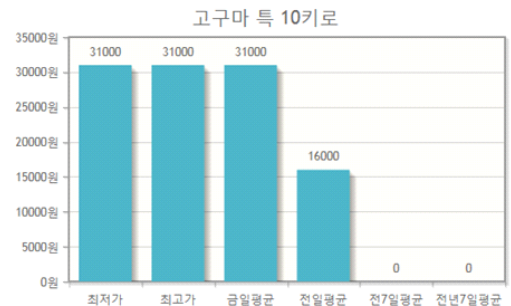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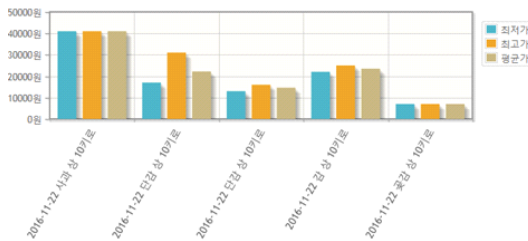
※ 출처:본 연구용역팀 작성

나. 유통정보 예시화면

검색일자 2016-11-22 - 2016-11-29

품목 사과 등급 전체 단위 10키로

날짜	품목	등급	단위	최저가	최고가	평균가
2016-11-22	사과	상	10키로	41,000	41,000	41,000
2016-11-22	단감	상	10키로	17,000	31,000	22,184
2016-11-22	단감	상	10키로	13,000	16,000	14,600
2016-11-22	감	상	10키로	22,000	25,000	23,500
2016-11-22	곶감	상	10키로	7,000	7,000	7,000



※ 출처:본 연구용역팀 작성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통합정산조직 설립 및 구매자 등록제 시행방안 연구

제안단체 : 서울특별시의회 생활정치연구회

홈페이지 : <http://www.smc.seoul.kr>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의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5)

연구기관 :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

책임연구 : 박 성 기

연 락 처 : 031-347-8788

발간등록번호 : 51-6110100-000232-01

※ 본 학술연구용역보고서의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을 할 수 있음)